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3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황종희 『명이대방록』

강 중 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3호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황종희 『명이대방록』

강 중 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을 수행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 (2004.9-2006.8) <토릭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펴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물을 이제 『철학사상』 별책 제5권으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

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현정보센터장 /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종현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3호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황종희 『명이대방록』

강 중 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 머리말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의 하나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수행한 <토론팝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이라는 연구의 과제물로서 작성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이 철학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려는 목표 하에 집필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저술과는 달리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의 고전을 분석 해체하여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웹상에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지도 부분이 제2부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은 제1부와 제3부만 읽어도 될 것이다.

황종희는 명청 교체기의 3대 사상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철학 면에서는 양명학의 ‘전군’(殿軍)이라 일컬어지는 유종주를 사사하여 기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경세치용의 학문에 힘써서 청대의 학풍을 일신하는 데 기여하였다. 중국철학사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철학사라 할 수 있는 『명유학안』(明儒學案, 62권)과 『송원학안』(宋元學案, 100권)을 저술하고 『명문안』(明文海, 217권)과 『명문해』(明文海, 482권) 등 역사서를 편찬함으로써 ‘절동사학’(浙東史學)의 선구자로 꼽힌다.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중국사에서 전제군주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저술로 평가되고, 청말 민국 초기에 왕조 체제를 넘어 공화제를 모색하는 혁명파들에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중국의 민약론’(‘민약론은 사회계약론의 당시 중국적 표현임)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명이대방록』에서는 토지와 화폐 및 군사 제도와 수도의 문제 등에 관하여 과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공업

과 상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공상개본론’(工商皆本論)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에 관한 논의에서 공론의 형성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혹자는 그가 구상한 학교가 근대의 의회에 상응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러한 평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또한 그러한 평가를 초래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명이대방록』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거기에 제시된 정치·사회 사상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철학 사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명이대방록』은 명나라의 멸망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을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한 명말 청초의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혹자가 ‘신시대 대망론’이라 불렀듯이,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시된 ‘국가 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황종희의 철학사상을 연구해서 1990년 석사 학위 논문을 꾸려낸 뒤로, 황종희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거의 눈길을 돌리지 못하였다.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하여 다시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여 정리할 기회를 갖고 보니 감회가 깊고 새롭게 느끼는 바도 적지 않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특히 연구책임자인 백종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이 작업을 한다는 평계로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힘을 주는 아내 이선미와 두 아들 한길·우량에게 미안하고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 많은 생을 마치고 지난 1월 14일 여든넷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05년 4월 8일  
복사골 惺惺齋에서 강중기 僅識

# 목 차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황종희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5
1.4 주요 저작	8
2. 『명이대방록』 해제	9
2.1 『명이대방록』 요약	9
2.2 『명이대방록』 해설	10
2.3 『명이대방록』 상세 목차	13
2.4 주요 용어	19
2.4.1 군주	19
2.4.2 신하	20
2.4.3 재상	20
2.4.4 학교	21
2.4.5 토지	22
2.4.6 화폐	23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25
1. 철학자 지식지도	25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26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	27
3.1 군주 .....	27
3.2 신하 .....	28
3.3 재상 .....	28
3.4 학교 .....	29
3.5 토지 .....	30
3.6 화폐 .....	3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	31

제 3 부 『명이대방록』 내용 분석 연구 .....	35
1. 군주 .....	35
1.1 군주의 본분 .....	37
1.2 후대의 군주 비판 .....	39
2. 신하 .....	40
2.1 신하의 본분과 도리 .....	41
2.2 군주 중심의 복무 태도 비판 .....	42
2.3 군신과 부자 및 신하와 노비의 차이 .....	44
3. 재상 .....	45
3.1 군주와 신하의 관계 .....	47
3.2 왕위의 세습과 재상의 역할 .....	49
3.3 재상의 권한 .....	49
3.4 후대의 내각 .....	50
4. 서리 .....	52
4.1 서리의 변천 .....	53
4.2 서리의 폐해 .....	53
4.3 서리의 폐해의 발생 배경 .....	55

4.4 서리의 폐해의 해결 방안 .....	56
5. 환관 .....	58
5.1 환관과 신하의 차이 .....	60
5.2 명대 환관의 폐해 .....	61
5.3 환관의 발호 원인 .....	62
5.4 환관의 축소 방안 .....	63
6. 관리의 선발과 임용 .....	66
6.1 관리 선발의 관대함 .....	67
6.2 관리 임용의 엄격함 .....	68
6.3 과거제의 대안의 문제점 .....	69
6.4 과거제의 시행 방안 .....	71
6.5 과거제의 보완책 .....	75
7. 학교 .....	78
7.1 학교의 임무 .....	79
7.2 학교와 서원 .....	81
7.3 학관의 임용 .....	83
7.4 교육의 보편화 .....	84
7.5 풍속의 교화 .....	86
7.6 서적의 관리 .....	87
8. 법률 .....	89
8.1 법률의 의의 .....	92
8.2 후대의 법률 .....	93
8.3 법제의 필요성 .....	95
9. 토지 제도 .....	96
9.1 토지 국유제 .....	98
9.2 부세의 확대 .....	99
9.3 부세의 부적절 .....	102

9.4 토지세의 부과 기준 .....	104
9.5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 .....	105
9.6 토지 등급제와 휴경의 권장 .....	107
 10. 화폐 제도 .....	 109
10.1 화폐의 필요성 .....	110
10.2 금은화폐의 폐단 .....	112
10.3 동전의 유통 .....	114
10.4 지폐의 유통 .....	115
 11. 경제 개선의 요건과 공상개본론 .....	 117
11.1 경제 개선의 요건 .....	119
11.2 공상개본론 .....	120
 12. 군사 제도 .....	 121
12.1 명대의 군사 제도 .....	124
12.2 병사의 차출 방안 .....	127
12.3 장군과 병사의 차이 .....	128
12.4 장군의 중요성 .....	129
12.5 문무의 통일과 장군의 임용 .....	130
12.6 반역의 방지 .....	132
 13. 수도 .....	 133
13.1 북경 수도의 문제점 .....	134
13.2 남경 수도의 적절성 .....	136
 14. 국경 수비 .....	 137
14.1 군현제와 봉건제의 폐단 .....	139
14.2 방진의 활용 .....	140
참고문헌 .....	143

## 일 러 두 기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군주, 1.1 군주의 본분 순으로 표시하였다.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q1.1)' 또는 '(e1.2)' 등은 철학 지식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q1.1)'은 제 1장의 첫 단락을 그리고 '(e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q'와 'e'를 통해서 첫 단락은 인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 1. 황종희의 생애 및 저작

### 1.1 생애 요약

황종희는 왕부지, 고염무와 함께 명말 청초의 3대 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동립당의 명사였던 아버지 황준소의 영향으로 일찍이 당시의 정치상황에 눈뜨고 엄당과 대립하던 동립당의 입장에 동조하였으며, 명조가 망하자 격렬한 반정활동을 벌이다가, 40세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학술연구에 전심하였다. 철학적으로는 스승 유종주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양명학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 경세치용을 중시하는 명말 청초의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황종희의 철학 사상은 명말 청초라는 격변기에 처하여 명조 멸망의 원인을 주자학과 양명학의 학문적 결함에서 찾고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건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철학사에서 최초의 철학사라 할 수 있는 『명유학안』과 『송원학안』을 지었는데, 그것들은 각 철학자 내지 학파의 핵심적 원전 자료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견해 내지 평가를 덧붙이는 학안체(學案體)라는 저술 양식의 효시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한편 황종희는 명조 멸망의 원인을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제군주제의 폐해에서 찾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고 국가 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명이대방록』을 저술하였다. 『명이 대방록』은 중국사에서 전제군주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표적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청말 민국 초기에 왕조 체제를 넘어서서 공화제를 모

색하는 혁명파들에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소위 ‘중국의 민약론’(민약론은 사회계약론의 당시 중국적 표현임)으로 불리고 그 자신은 ‘중국의 루소’ 혹은 ‘유교의 루소’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 1.2 생애 해설

황종희(黃宗羲)는 왕부지(王夫之), 고염무(顧炎武)와 함께 명말청초의 3대 학자[三大遺老]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로서, 경세치용의 학문으로 청대의 학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절동사학(浙東史學)을 창시하고 청대 고증학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된다.

황종희는 1610년[명 만력(萬曆) 38년] 8월 8일 절강성(浙江省) 여요현(餘姚縣) 황죽포(黃竹浦) 남뢰리(南雷里)에서 동림당(東林黨) 명사였던 아버지 황준소(黃尊素, 1585-1626)와 어머니 요씨(姚氏) 사이에서 5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4세 때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서 동림당과 엄당(내각과 환관 중심의 집권파) 사이의 당쟁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시국에 관심과 인식을 심화시켜 갔다. 그가 17세 되던 해(1626년) 그의 아버지는 삭탈관직되고 동림당 동지들과 함께 환관 위충현(魏忠賢) 일파의 탄압을 받아 옥사하였다.

황종희는 20세 되던 해(1629년)에 아버지의 유명(遺命)에 따라 양명학 우파 계통의 기철학자인 유종주(劉宗周)에게 나아가 배웠고, 또한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겸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사학에도 힘써 절동사학(浙東史學)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21세 때는 남경으로 가서 복사(復社)에 참가하고 이후 많은 집회와 결사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지만, 과거(科舉)에는 21세부터 33세까지 네 번 응시하여 모두 낙방하였다.

황종희가 35세 때인 1644년 명나라는 결국 망하였고, 이후 그는 치열한 반청활동을 전개하여 몇 차례의 죽음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40세(1649)에 이르러 그의 반청활동은 끝나지만, 때로 지명수배를 받기도 하

면서 도피·은신 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그 사이에도 저술을 내기도 하였다.

황종희는 천문학, 역산(曆算), 도장(道藏), 불교 및 음악 등에 두루 박식하였다. 그의 저술은 철학(經學), 정치, 역사, 지리, 천문, 역산(曆算), 전기(傳記) 및 시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철학 저술로는 『명유학안』(明儒學案), 『송원학안』(宋元學案), 『맹자사설』(孟子師說), 『역학상수론』(易學象數論) 등이 있다. 1647년에는 『수시력』(授時曆)에 주석을 달고, 역법과 관련한 다수의 저술을 하였으며(『춘秋日食曆』, 『授時曆考』, 『大統曆推法』, 『授時曆假如』, 『回回曆假如』, 『西曆假如』, 『氣運算法』, 『勾肱圖說』, 『開方命算』, 『測圜要義』 등), 1652년에는 『율려신의』(律呂新義)를 저술하자 시어(侍御) 왕중위가 와서 가져가기도 하였다.

황종희는 53세(1662) 때에 소년기 이래 파란만장한 삶의 총결산이라 할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을 쓰기 시작하였다. 사회정치적인 면에서 전통적 사회질서가 와해돼가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태동하기 위한 격렬한 몸부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한민족의 명조(明朝)가 이민족인 청조(清朝)에 의해 무너지는 명말청초라는 전환기에 처하여, 황종희는 명조의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명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의 철학사상을 건립하였다. 그는 명조 멸망의 원인을 정치상으로는 주로 명대에 극심했던 전제군주제의 폐해에서 찾고, 『명이대방록』을 저술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한 것이다.

학문은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겸해야 한다는 부친의 가르침에 따라 사학에도 힘쓴 황종희는 제자인 만사동(萬斯同)과 전조망(全祖望)을 거쳐 장학성(章學誠)에 이르는 맥을 형성하였는데, 후대에 이를 절동사학(浙東史學)이라 불렀다. 그는 청나라 조정의 부름은 거절하였으나, 『명사』(明史)의 편찬 사업에 협력을 요청받고는 아들 황백가(黃百家)와 제자 만사동을 보내어 협력하게 하였다.

철학사가로서 황종희는 중국철학사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철학사라 할 수 있는 『명유학안』(明儒學案, 62권)과 『송원학안』(宋元學案, 100권)을

저술하였다. 전자는 황종희가 생전에 완성하여 출판되었지만, 후자는 생전에 완성하지 못하여 아들 황백가(黃百家)에 이어 제자 전조망이 완성하였다. 『명유학안』은 명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200여명의 학자에 대해 사상의 요점과 특징, 그 행적과 학문적 연원관계 등을 서술함으로써 명대 200여년의 사상적 전개과정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명유학안』과 『송원학안』은 각 철학자 내지 학파의 핵심적인 원전 자료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 견해 내지 평가를 덧붙이는 학안체(學案體)라는 저술양식의 효시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사상적인 면에서 황종희는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스승 유종주의 영향 아래 양명학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다. 황종희는 주자학이 종래의 강한 도덕적 사회적 실천성을 상실하고 공소한 논의에 빠져버렸다고 비판한다. 양명학에 대해서도 주관의 역동적 능동성의 발휘라는 본래의 의의에서 벗어나 무책임한 방종과 자의에 맡기는 테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한다. 황종희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이와 같은 폐단으로 인하여 명조가 멸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사상을 건립한 것이다.

황종희는 주자학이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기초하여 대상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주관의 보편성을 확인하고자 함으로써 사람들이 주관과 객관 간의 끝없는 긴장 속에 매몰되어 주체를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종래의 사회적 실천성을 상실하고 공소한 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도덕적 주체를 확고하게 세움으로써 인식과 실천의 통일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유종주(劉宗周, 1578-1645)에까지 이어져온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주관의 역동적 능동성의 발휘라는 양명학 본래의 의의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구된다. 또 태주학파(泰州學派)에 이르러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양명학이 주관[心]을 극단적으로 절대화하여 점차 무책임하고 무규범적인 방종과 자의에 빠져버림으로써 오히려 참된 도덕 주체를 상실하고 혀무주의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양명학의 비판적 계승을 통해 확고하게 세운 도덕주체를 기일

원론(氣一元論)의 세계관으로 뒷받침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용있는 행위(윤리도덕적 실천)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 1.3 생애 연보

- [1610년] : 명(明) 나라 만력(萬曆) 38년, 절강성(浙江省) 여요현(餘姚縣) 황죽포(黃竹浦) 남뢰리(南雷里)에서 출생.
- [1616년] : 부친 황준소(黃尊素) 진사 합격.
- [1617년] : 부친이 영국부(寧國府) 추관(推官)으로 임명되자 임지로 따라감.
- [1616년] : 동생 종회(宗會) 출생. 1622년에 태어난 동생 종원(宗轅)과 함께 삼형제가 ‘동절삼황’ (東浙三黃)이라 불림.
- [1622년] : 영국(寧國)에서 돌아와 동자시(童子試)에 응함.
- [1623년] : 박사제자원(博士弟子員)이 됨. 가을에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가서 동림당과 엄당 사이의 당쟁을 직접 보고 들음. 부친 산동도감찰어사에 임명됨.
- [1625년] : 부친 삭탈관직됨. 광서안찰사 엽현조(葉憲祖)의 딸과 결혼.
- [1626년] : 부친 옥사.
- [1629년] : 부친의 명을 받들어 유종주(劉宗周)에게 가서 배움. 장남 황백약(黃百藥) 출생.
- [1630년] : 복사(復社) 가입. 과거 낙방.
- [1633년] : 유도정(劉道貞)에게서 『논어』와 『주역』을 배움.
- [1634년] : 『고충헌유집』(高忠憲遺集)이 출간되자 배에서 종일 읽음.
- [1636년] : 두 아우인 종염과 종회가 과거에 합격함.
- [1641년] : 『도장』(道藏)에서 역학(易學)과 산천 등에 관한 내용 발췌 함.
- [1642년] : 부친의 사당을 세움. 『사명산지』(四明山志) 저술.

- [1643년] : 차남 백학(百學, 후에 百家라 개명) 출생.
- [1644년] : 청군의 북경 함락 소식 듣고 의병의 모집을 논의함. 복왕(福王)이 감국(監國)으로 불려 남중(南中)에 가서 명조 재건운동 시작.
- [1645년] : 스승 유종주 명조에 대한 절의를 지켜 굽어죽음. 어머니와 함께 중촌(中村)으로 도피. 감국(監國) 노왕(魯王)과 함께 군대를 모아 세충영(世忠營)을 결성하여 반청활동을 전개함.
- [1647년] : 『수시력』(授時曆)에 주석을 달고, 역법 관련 다수의 저술을 지음.
- [1649년] : 반청활동 접고 고향으로 돌아옴. 삼력(三曆)을 주석하고, 『일본결사기』(日本乞師紀)와 『해외통곡기』(海外慟哭紀)를 지음.
- [1650년] : 반청활동 문제로 아우 종염(宗炎)이 체포되자 구출을 도모함. 시집 『노류집』(老柳集) 편찬.
- [1652년] : 『율려신의』(律呂新義)를 저술하자, 시어(侍御) 왕중위(王仲撝)가 와서 가져감.
- [1661년] : 『역학상수론』(易學象數論) 저술.
- [1662년] :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집필을 시작해서 이듬해 완성하여 출판. 『유서』(留書) 저술. 이 해의 시를 모아 『露車集』편찬.
- [1663년] : 『송시초』(宋詩鈔) 저술. 이 해의 시를 모아 『심단집』(心斷集) 편찬.
- [1664년] : 시집 『남뢰시력』(南雷詩曆) 편찬. 이 해의 시를 모아 『오정집』(吳艇集) 편찬.
- [1668년] : 『명문안』(明文案) 편찬 시작.
- [1672년] : 『요강일시』(姚江逸詩, 15권) 편찬하여 발간. 후에 『요강문략』(姚江文略) 『요강쇄사』(姚江瑣事) 편찬.
- [1673년] : 모친의 80세 생신잔치에 손기봉(孫奇逢)이 『이학종요』(理學宗要)와 시를 보내오고, 이청(李清)은 『학령록』(學齡

錄)을 보내고, 초단명(巢端明)도 축하의 글을 보내옴.

- [1674년] : 『사명산구제고』(四明山九題考)를 짓고 각각에 시를 붙임.
- [1675년] : 『명문안』(217권) 편찬 완성.(『사고전서』에 수록됨. 후에 『明文海』(482권)로 증보되어 『사고전서』에 수록됨)
- [1676년] : 고염무(顧炎武)가 『일지록』(日知錄)을 보내며 비평을 부탁함. 『명유학안』(明儒學案, 62권) 완성. 『송원학안』(宋元學案) 편집 시작.(미완. 후에 제자 전조망이 완성. 100권)
- [1679년] : 『명사』(明史) 편찬에 제자 만사동(萬斯同).정일언(貞一言)이 참여하자 『삼사』(三史)를 초록하여 주고 시를 지어 전송함.
- [1680년] : 『송사』(宋史)를 편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총목보유』(叢目補遺, 3권)를 짓고, 『명사안』(明史案, 244권)을 편집함. 모친의 「사략」(事略)을 사관에 보냄.(『明史』「烈女傳」에 수록됨) 『남뢰문안』(南雷文案)을 교정함.
- [1687년] : 독학(督學) 왕전암(王顥庵)이 자유자행장』(子劉子文集)을 간행하자 「각자유자전집계」(刻子劉子全書啓)를 씀.
- [1688년] : 『남뢰문안』(南雷文案) 등을 산정하여 『남뢰문정』(南雷文定)으로 편찬. 후에 『남뢰문약』(南雷文約)으로 개찬.
- [1690년] : 상서 서건학(徐乾學)의 추천으로 황제가 부르려 하였으나 연로하여 부를 수 없다고 하자 “人才之難如此” 라 탄식함.
- [1692년] : 『명유학안』 출판. 『금수경』(今水經)을 완성하고 서문을 씀.
- [1693년] : 『요지』(姚志) 저본 저술. 『명문해』(明文海, 482권) 완성. 『명문수독』(明文授讀, 62권) 지음.
- [1695년] : 청(清) 강희(康熙) 34년 향년 86세로 사망. 『장제혹문』(葬制或問)과 「이주말명」(梨洲末命)을 씀.

## 1.4 주요 저작

- 1.4.1. 『易學象數論』(*Yixuexiangshulun*), 1661년
- 1.4.2. 『明夷待訪錄』(*Ming-yi daifanglu, A Plan for the Prince*),  
1663년
- 1.4.3. 『明儒學案』(*Mingruxue-an*), 1676년

## 2. 『명이대방록』 해제

### 2.1 『명이대방록』 요약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중국사에서 전제군주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청말 민국 초기에 왕조체제를 넘어서서 공화제를 모색하는 혁명파들에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소위 ‘중국의 민약론’(민약론은 사회계약론의 당시 중국적 표현임)으로 불리고 황종희 자신은 ‘중국의 루소’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명이대방록』의 주된 내용은 봉건적 군주 독재 체제의 비판과 군주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론의 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사상과 농업이 근본 산업[本]이고 상공업은 지엽 말단적인 것[末]이라는 농업사회의 전통적인 농본사상(農本思想)에서 벗어나 상업과 공업(주로 수공업)도 근본 산업이라고 보는 ‘공상개본(工商皆本)’의 경제사상으로 나눠볼 수 있다. 황종희는 군주에 대한 발생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증진과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군주의 임무로 파악해내고, 이에 기초하여 군주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천하를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여 공적인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는 군주독재체제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군신관계를 천륜으로 맺어진 부자관계와 구별하여, 광대한 천하를 혼자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정치적 분업에 따른 것으로서 원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에 맺어진 기능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황종희는 재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제도의 제시로 나아갔는데, 이는 의회적 기능을 겸한 학교제도와 표리를 이루어 방진(方鎮)을 기초로 하는 지방분권적인 개량된 봉건제와 함께 중앙집권적 군주독재체제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제도개혁론이었다. 한편 황종희는 ‘공상개본’의 경제사상에 따라 상업의 주된 도구인 화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역대의 화폐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화폐(銅錢과 紙幣)를 원활하게 유통시킴으로써 재화의 끊임없는

유통을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중대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상품생산과 상업적 교환이 성행하여 자본주의적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간이 원래 이기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 2.2 『명이대방록』 해설

황종희의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은 중국사에서 전제군주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청말 민국 초기에 왕조체제를 넘어서서 공화제를 모색하는 혁명파들에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이른바 ‘중국의 민약론’(민약론은 사회계약론의 당시 중국적 표현임)으로 불리우고 황종희 자신은 ‘중국의 루소’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이 책은 황종희가 명조 멸망 이후 생사의 위협을 무릅쓴 반청 무장투쟁을 접고 학문과 강학에 종사하면서 저술한 ‘신시대 대망론’이다. 『명이대방록』의 ‘명이(明夷)’는 『주역(周易)』 64괘의 하나로서, 상괘는 곤(坤, ☰)이고 하괘는 이(離, ☳)이며, “밝은 태양이 땅 속에 들어 있는 상태” 또한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때를 기다리는 형세”를 상징한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명청 교체기에 명조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며,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현명한 군주를 고대하는 소망을 담아낸 저술이라고 할 것이다.

애초의 수고(手稿)에는 책 이름이 ‘대방록’ 이었고, 황종희 자신이 다른 저술에서 이 책을 언급할 때에도 ‘대방록’이라 불렸으며, 고염무(顧炎武)가 1676년 황종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 책을 ‘대방록’이라고 불렀다. 황종희의 제자인 전조망(全祖望)이 「이주선생신도비문」(梨洲先生神道碑文)을 지을 때, 그리고 정성(鄭性)-정대절(鄭大節) 부자가 이로각(二老閣)에서 이 책을 간행할 때, 앞에 ‘명이’를 덧붙여 ‘명이대방록’이라고 하였다. 그것이 책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바가 있었으므로, 이후로 ‘명이대방록’이 책 이름으로 통용되어 왔다.

『명이대방록』의 주된 내용은 봉건적 군주독재 체제의 비판과 군주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론의 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사상과 농업이 근본산업[本]이고 상공업은 말단적인 것[末]이라는 농업사회의 전통적인 농본사상(農本思想)에서 벗어나서 상업과 공업(주로 수공업)도 근본산업이라고 보는 ‘공상개본(工商皆本)’의 경제사상으로 나눠볼 수 있다.

황종희는 군주의 기원에 대한 발생론적 해명에서,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제쳐두고 공공의 질서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런 군주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수고로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일반인들은 그러한 군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군주가 천하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함으로써, 공적인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는 군주 독재 체제로 전락하였다고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천하를 사유재산으로 삼아 이익을 추구하므로, 예전에 군주의 지위를 서로 회피하던 것과 달리 군주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황종희에 의하면, 신하의 존재란 군주 한 사람이 넓은 천하를 혼자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정치적 분업에 따른 것으로서, 본래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지 군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황종희는 군신관계를 천륜으로 맺어진 부자관계와 구별하여, 원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에 맺어진 기능적인 관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함께 실현해야 할 이념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적절한 예우를 하지 않으면, 신하는 군주가 강제하더라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하가 군주와 함께 천하의 백성을 위한 일을 하면 군주의 사우(師友)가 되지만, 천하 백성을 위하지 않고 군주 개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이는 군주의 노비라고 하였다.

황종희는 재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적 기능을 겸한 학교 제도와 표리를 이루며, 방진(方鎮)을 기초

로 하는 지방분권적인 개량된 봉건제와 함께 중앙집권적 군주 독재 체제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제도 개혁론이었다. 제도를 중시하는 황종희의 사고방식은 법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치법(治法)이 있은 연후에 치인(治人)이 있다”라고 하여, 유학의 전통적인 덕치(德治) 사상과 달리 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황종희가 명대의 군주 독재 및 그와 연관된 환관의 횡포라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험한 이후에, 권력자의 독단과 사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법을 중시하게 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종희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기 위해 구상한 또 다른 방식은 내지 공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시비 판단이다. 그는 학교를 시비 판단의 장으로 삼았다. “천자가 옳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천자가 그르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도 아니다. 천자 또한 감히 시비를 결정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그 시비를 공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학교는 덕성과 지식이 있는 선비들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사회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시비 판단이 학교의 공론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황종희는 ‘공상개본’의 경제사상에 따라 상업의 주된 도구인 화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역대의 화폐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화폐, 즉 동전(銅錢)과 지폐(紙幣)를 원활하게 유통시킴으로써 재화를 끊임없이 유통시킬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증대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상품 생산과 상업적 교환이 성행하여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간이 원래 이기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理)를 기(氣)의 조리로 파악하여 현상세계를 떠난 형이상학적 본체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일원론(氣一元論)의 철학적 입장에 기초한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파생된, 어떤 선형적인 보편적 원리나 규범에 의하여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부터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사유방식에서 연유한다.

### 2.3 『명이대방록』 상세 목차

#### 0. 머리말[題辭]

#### 1. 군주론[原君]

- 1.1 인간의 개체적 존재성과 사적 이익의 추구
- 1.2 군주의 발생론적 기원
- 1.3 후대의 군주와 천하 사유 관념
- 1.4 고대의 군주 존숭과 후대의 군주 천시
- 1.5 군주의 직분 오해와 군주 지위 쟁탈전의 필연성
- 1.6 군주의 직분 이해와 군주 지위의 회피

#### 2. 신하론[原臣]

- 2.1 신하의 도리
- 2.2 신하의 발생 근거와 출사 목적
- 2.3 후대의 그릇된 신하 관념
- 2.4 신하의 위상과 군주의 예우
- 2.5 군신과 부자의 차이
- 2.6 노비와 사우의 차이

#### 3. 법제론[原法]

- 3.1 법의 존재 의의
- 3.2 후대의 법 비판
- 3.3 삼대 이전의 법 - ‘무법지법’ (無法之法)
- 3.4 삼대 이후의 법 - ‘비법지법’ (非法之法)

3.5 법의 타락의 해결방안

3.6 법제의 필요성

#### 4. 재상론[置相]

4.1 군주와 신하의 관계

4.2 고대 군주의 신하에 대한 예우

4.3 왕위 세습의 문제점과 재상의 역할

4.4 후대의 내각과 재상의 실질

4.5 관계의 함정과 개혁의 근거

4.6 재상권의 강화 방안

#### 5. 학교(學校)

5.1 학교의 기능 - 선비의 양성과 제반 의식의 시행

5.2 학교의 기능 - 공론의 형성

5.3 관리의 영역 확대와 학교의 타락

5.4 서원의 등장 및 서원과 조정의 대립

5.5 학생의 시위와 학교의 국정 감시 기능

5.6 군주의 임무

5.7 군현의 학관의 임용과 탄핵

5.8 학관의 하부 단위

5.9 교육의 보편화와 학생의 취업

5.10 사찰·도관·암자·사당의 물적 인적 처리

5.11 태학의 학장 임명과 학장의 임무

5.12 천자와 고위 관료의 자제 교육

5.13 군현의 학교와 학관의 기능

5.14 학교 행정 감독관과 학관의 관계

5.15 학생의 진급과 제명

5.16 역학과 의술 전공 학생의 관직 임용

5.17 향음주례의 시행

5.18 사당의 건립과 기록의 정리

- 5.19 서적의 구입과 보존
- 5.20 『주자가례』의 시행
- 5.21 명승고적과 사당의 관리
- 5.22 풍속의 교화

## 6. 관리 선발[取士] 상

- 6.1 과거제의 폐단과 대안들의 문제점
- 6.2 당·송의 과거제와 왕안석의 개선안
- 6.3 경전시험의 장점
- 6.4 시부 시험의 의의와 시문의 문제점

## 7. 관리 선발[取士] 하

- 7.1 관리의 선발과 임용에서 고대와 현재의 차이
- 7.2 고대의 엄격한 임용 과정
- 7.3 현재의 엄격한 선발과 관대한 임용
- 7.4 과거제의 시행 방안
- 7.5 박사제자원의 시험과 임용
- 7.6 천거의 방법과 천거인의 활용
- 7.7 태학에의 진학과 태학생의 성적 평가 및 사후 처리
- 7.8 임자의 문제점
- 7.9 행정 단위의 자체 임용
- 7.10 전문가의 임용
- 7.11 재야의 건의와 그에 대한 대우
- 7.12 저술에 대한 대우와 처벌

## 8. 수도 건설[建都]

- 8.1 북경 수도의 문제점
- 8.2 북경 수도로 인한 역대의 수난
- 8.3 고대 관중의 우월성과 현재의 부적절성

## 8.4 남경 수도의 적절성

### 9. 국경 수비[方鎮]

- 9.1 방진의 부활
- 9.2 당의 멸망 이유
- 9.3 봉건제와 군현제의 폐단
- 9.4 방진의 운용 방법

### 10. 토지 제도[田制] 1

- 10.1 토지와 관련한 군주의 임무
- 10.2 한대의 토지세
- 10.3 정전제의 폐지와 토지세의 변화
- 10.4 토지세의 징수 기준

### 11. 토지 제도[田制] 2

- 11.1 정전제의 폐지와 토지 소유의 제한
- 11.2 정전제의 시행 조건
- 11.3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에 관한 역대의 논의
- 11.4 위소의 둔전에서 유추한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
- 11.5 군전의 실상과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
- 11.6 관전에 근거한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
- 11.7 둔전의 병사가 줄어드는 이유

### 12. 토지 제도[田制] 3

- 12.1 중과세로 인한 백성의 고통
- 12.2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폐해
- 12.3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금 납부의 폐해
- 12.4 은 납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2.5 농토의 등급제와 휴경의 권장

## 13. 군사 제도[兵制] 1

- 13.1 명대 군사제도의 변천과 그 폐단
- 13.2 위소의 폐단
- 13.3 소모의 폐단
- 13.4 대장 둔병의 폐단
- 13.5 위소의 장점
- 13.6 위소의 쇠퇴 이유
- 13.7 병사의 차출과 부양의 기준
- 13.8 병농의 분리와 명대 군대의 폐해

## 14. 군사 제도[兵制] 2

- 14.1 문무의 차별
- 14.2 장군의 중요성
- 14.3 명대의 장군의 실상
- 14.4 군자와 소인의 구분 및 장군의 역할
- 14.5 무인 장군의 문제점
- 14.6 장군과 병사의 차이 및 병사의 의의

## 15. 군사 제도[兵制] 3

- 15.1 당송대의 문무 겸용과 명대의 문무 분리
- 15.2 반역의 방지 - ‘반역할 수 없는 사람’
- 15.3 문신 중심의 군대 조직
- 15.4 전투력이 뛰어난 무인 병사의 한계
- 15.5 학자의 문무 겸비의 필요성

## 16. 경제 제도[財計] 1

- 16.1 화폐의 필요성

16.2 역대의 화폐

16.3 은의 고갈과 그 폐단

16.4 금은 화폐 폐지의 이점

## 17. 경제 제도[財計] 2

17.1 화폐의 이로움

17.2 명대 동전 유통의 실패 이유

17.3 동전의 유통 방안

17.4 역대의 지폐 제도 시행 실태

17.5 지폐 제도의 시행 조건

## 18. 경제 제도[財計] 3

18.1 백성이 부유해지는 조건

18.2 습속의 개선

18.3 미신의 탈피

18.4 사치 생활의 금지

18.5 근본적 해결방안

18.6 공상개본론

## 19. 서리[胥吏]

19.1 두 부류의 서리와 그 문제점

19.2 차역의 부활 방안

19.3 서리의 폐해가 가능한 원인

19.4 서리 폐해의 형세상의 필연성

19.5 서리의 폐해

19.6 한대 조연의 문제점

## 20. 환관[奄宦] 상

20.1 명대에 심화된 환관의 폐해

20.2 환관과 신하의 차이

20.3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복무 태도

## 21. 환관[奄宦] 하

21.1 환관의 발호 원인 - 군주의 욕심 많음

21.2 『주례』의 문제점 - 군주의 여인의 과다

21.3 정치의 목적

21.4 환관의 축소 방안 - 군주의 절검

21.5 군주의 후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 2.4 주요 용어

### 2.4.1 군주

일반적으로 중국 중세사회의 정치체제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군주전제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 체제 하에서는 황제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그 절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유학자들은 군주를 도덕적 이념의 상징으로 격상시키고, 군주에 대한 교육[聖學]을 강화하며, 재이론 등의 갖가지 장치로 황제권을 제한하고 제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천지군친사(天地君親師)등의 관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군주의 존재 위상 내지 군주의 권력 자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명대에 이르러 재상제를 폐지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환관들이 그 절대권력을 유지하는 주구로 활용되었다. 명조가 멸망하고 청조가 들어서자 황종희는 명조의 멸망 원인을 해명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봉건적 전제 군주 체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였다. 황

종희는 우선 군주에 대한 발생론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이익의 증진과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공적인 문제의 해결을 군주의 임무로 파악해내고, 이에 기초하여 군주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천하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여 공적인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는 군주독재 체제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 2.4.2 신하

황종희의 정치사상에서 신하는 당연히 군주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한 마디로 신하는 “군주의 분신” [分身之君]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광대한 천하를 군주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업무[群工]를 나누어 함께 다스리는 존재, 즉 천하통치의 분업자이다. 황종희의 표현을 빌면 “함께 나무를 끄는 사람” [共曳木之人]이다. 신하가 군주의 분신이라는 말이 신하가 군주의 대리인 내지 군주에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초점은 신하란 군주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자로서 군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천하를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데 있다. 황종희의 사상을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계몽적 형태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전통적 민본주의·위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의 사상은 나름의 합리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자의성을 견제하려는 유학의 전통적 사유방식을 계승 발전시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본·위민과 분권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발상이 그것이다. 이는 신하 내지 군신관계에 관한 황종희의 인식에서 군주와 신하의 국가경영이 인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신하는 군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하에 관한 황종희의 주장은 사대부 신료를 통한 군주권력의 견제라는 유학의 전통적 발상을 극한에까지 밀고 나간 것, 달리 말하면 ‘유교적 민본주의의 극한’이라 할 수 있다.

#### 2.4.3 재상

황종희가 구상한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는 재상이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재상은 신하가 군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노비’가 아니라 군주의 스승이자 벗[師友]으로서 때로는 군주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는 존재다. 황종희에 따르면, 고대에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던 섭정이 재상의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며, 군주가 승상에 대해서는 답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禮)가 군주의 스승과 벗으로서 신하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재상은 곧 군주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진정한 의미의 신하의 본질에 부합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군주의 지위의 세습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해결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즉 세습을 통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는 자가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재상의 지위에서 그를 보좌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황종희는 재상의 권한 내지 재량권을 확대 강화시키는 일종의 책임총리제를 주장하였다. 이는 승상제를 폐지하고 황제권을 절대화하여 언로가 막힘으로써 명나라가 망했다는 반성의 산물이기도 하다.

#### 2.4.4 학교

황종희가 『명이대방록』에서 제시한 국가경영의 청사진 중에서 학교제도는 그 동안 특별한 주목을 끌어왔다. 학교는 황종희의 사회정치사상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분권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군주를 비롯한 각급 관리의 정사를 감시하고 공론을 형성해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황종희가 구상한 학교제도가 근대의 의회제도에 상응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황종희는 학교의 기능이 단지 선비의 양성에 있지 않으며, 옛날부터 공론을 형성하여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하고,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래로 학교에서 조정의 의식을 행하고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노인을 부양하고 고아를 구휼하는 행사도 개최하고, 군대의 승전 보고와 출정식도 행하였으며, 중요한 제사도 학교에서 지내고 큰 옥사(獄事)가 있으면 관리와 백성을 학교에 불러 모아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한 마디로 국가를 다스리는 각종 중요한 행사와 의식을 다 학교에서 행한 것이다. 그래서 황종희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가 다 학교에서 나온 연후에야 학교의 의미가 비로소 갖춰지게 된다” (「學校」)라고 선언한다. 공론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군주와 관리의 스승으로서 학교의 교관이 가르치고 정사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하여 국정을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학교는 황종희가 추구하는 분권의 이념이 잘 구현된 장치이다. 학교의 행정과 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교육을 행정에 예속되지 않도록 한 것 역시 분권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여론에 의거하여 학관이 퇴출될 수 있게 한 것은 근대의 국민소환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여론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 2.4.5 토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본사회’인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토지제도가 국가경영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명대 후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이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수공업과 상업도 산업의 근본이라고 보는 ‘공상개본론’ (工商皆本論)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황종희는 자신이 구상한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 여전히 토지제도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황종희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국유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황종희에 따르면, 국가의 상징으로서 군주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授田] 스스로를 부양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황종희는 교화[教]와 양육[養]을 군주의 두 가지 임무로 꼽

고 있는데, 이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주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황종희는 토지제도를 조세 제도와 관련지어 다루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세가 확대 중복되어 부과된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형편에 맞추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세를 인민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 제도와 부세 제도 방면에서 황종희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핵심은 정전제의 부활이다. 황종희는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에 관한 역대의 논의를 검토하고 나서, 정전제가 위소의 둔전과 관전의 존재에 근거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황종희는 부민의 사유권을 무시한 토지 분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둔전을 활용한 정전제의 실시를 모색하는 절충적인 노선을 취하였다.

#### 2.4.6 화폐

황종희는 화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역대의 화폐제도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금은화폐를 폐단을 지적하고 동저과 지폐의 유통을 주장하는 데로 나아간다. 황종희에 따르면, 옛날에는 곡식과 비단[布帛]이 가치척도로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금과 은은 단지 보석으로서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삼대 이후 당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화폐의 기본적인 효용, 즉 곡식이나 비단 등 현물을 화폐로 사용할 때 운반에 힘이 들고 유통과정에서 마모나 소실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물과 함께 화폐를 사용하였다. 당대에 이르러서는 동전으로 부세를 받고 교역하게 되었고, 송대에는 금은과 비단[絲帛]을 화폐로 삼아 지방관청과 민간에 일정량을 보유하게 하고 금은으로의 교환을 중앙에서 보장함으로써 유통시켰다. 원대에는 금은을 본위화폐로 하고 지폐를 보조화폐로 삼아 금은을 유통시켰는데, 명대에 이

르러서는 금은과 지폐를 함께 사용하게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금은이 집중·사장되거나 국외로 유출되어 유통력을 상실하면서 폐단만 가중시켰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황종희는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동전으로 화폐를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동전을 유통시키는 제도의 이점을 제시하고, 명대에 동전의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유통된 이유를 열거하고 나서, 동전을 유통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전을 유통시키기 위해 황종희가 제시한 방안은 강력한 국가관리제도 아래 구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전담관을 두어 무게와 양식을 통일하여 정교하게 주조하고,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부세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황종희는 동전의 유통은 더불어 지폐의 원활한 유통도 불러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 황종희
- 토픽 ID : ch\_zongxi
- 상위 토픽명 : 중국철학자
- 상위 토픽 ID : ch\_philosophs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 黃宗羲

영어 이름 : Huang Zong-xi

생애 요약 : 1부 1.1

####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 1부 1.1

생애 해설 : 1부 1.2

생애 연보 : 1부 1.3

인물 사진 :

<http://news.empas.com/show.tsp/20040617n04552/>

한국어 웹사이트 :

<http://100.naver.com/100.php?id=173912>

####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 한유, 왕안석, 주희

기여한 철학 분야 : 유가철학(ch\_confucianism)

기여한 철학 학파 : 양명학(ch\_yangmyeong\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 경세론(gyeongseron) ch\_gyeongse

주요 저작 : 『역학상수론』, 『명이대방록』, 『명유학안』

##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 명이대방록

• 토픽 ID : ch\_huangzongxi\_mingyi

• 상위 토픽명 : 중국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 ch\_phil\_texts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 明夷待訪錄

영어 제목 : Ming-yi daifanglu(A Plan for the Prince)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초판 출판 연도 : 1663년

###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해설 : 1부 2.2

상세 목차 : 1부 2.3

원어 디지털텍스트 :

<http://www.superlogos.com.tw/edit/page.htm>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연관 관계

저자 : 황종희

###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 3.1 군주

- 토픽명 : 군주
- 토픽 ID : t1
- 상위 토픽명 : 군주
- 상위 토픽 ID : t\_ch\_sovereign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君主

영어 용어 : sovereign

한자 표기 : 君主

용어 설명 : 1부 2.4.1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1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황종희(ch\_zongxi)

사용한 철학 문헌 : 명이대방록(ch\_huangzongxi\_mingyi)

사용한 내용 토픽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3.2 신하

- 토픽명 : 신하
- 토픽 ID : t2
- 상위 토픽명 : 관료
- 상위 토픽 ID : 관료 t\_ch\_bureaucrat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臣下

영어 용어 : minister

한자 표기 : 臣下

용어 설명 : 1부 2.4.2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2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황종희(ch\_zongxi)

사용한 철학 문헌 : 명이대방록(ch\_huangzongxi\_mingyi)

사용한 내용 토픽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3.3 재상

- 토픽명 : 재상
- 토픽 ID : t3
- 상위 토픽명 : 관료
- 상위 토픽 ID : 관료 t\_ch\_bureaucrat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相

영어 용어 : premier

한자 표기 : 相君

용어 설명 : 1부 2.4.3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3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황종희(ch\_zongxi)

사용한 철학 문헌 : 명이대방록(ch\_huangzongxi\_mingyi)

사용한 내용 토픽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3.4 학교

- 토픽명 : 학교
- 토픽 ID : t4
- 상위 토픽명 : 학교
- 상위 토픽 ID : 학교 t\_ch\_school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學校

영어 용어 : school

한자 표기 : 學校

용어 설명 : 1부 2.4.4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4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황종희(ch\_zongxi)

사용한 철학 문헌 : 명이대방록(ch\_huangzongxi\_mingyi)

사용한 내용 토픽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3.5 토지

- 토픽명 : 토지
- 토픽 ID : t5
- 상위 토픽명 : 토지
- 상위 토픽 ID : 토지 t\_ch\_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田

영어 용어 : land

한자 표기 : 田

용어 설명 : 1부 2.4.5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5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황종희(ch\_zongxi)

사용한 철학 문헌 : 명이대방록(ch\_huangzongxi\_mingyi)

사용한 내용 토픽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3.6 화폐

- 토픽명 : 화폐
- 토픽 ID : t6
- 상위 토픽명 : 화폐
- 상위 토픽 ID : 화폐 t\_ch\_money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錢幣

영어 용어 : money

한자 표기 : 錢幣

용어 설명 : 1부 2.4.6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6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황종희(ch\_zongxi)

사용한 철학 문헌 : 명이대방록(ch\_huangzongxi\_mingyi)

사용한 내용 토픽 : (ch\_huangzongxi\_mingyi\_km.xtm)

##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 1. 군주(e1.1~3)

1.1 군주의 본분(q1.1.1 / e1.1.2)

1.2 후대의 군주 비판(q1.2.1 / e1.2.2)

### 2. 신하(e2.1)

2.1 신하의 본분과 도리(q2.1.1~3 / e2.1.4)

2.2 군주 중심의 복무 태도 비판(q2.2.1~4 / e2.2.5)

2.3 군신과 부자 및 신하와 노비의 차이(q2.3.1~4 / e2.3.5)

### 3. 재상(e3.1~2)

3.1 군주와 신하의 관계(q3.1.1~3 / e3.1.4)

3.2 왕위의 세습과 재상의 역할(q3.2.1 / e3.2.2)

3.3 재상의 권한(q3.3.1 / e3.3.2)

3.4 후대의 내각(q3.4.1 / e3.4.2~3)

### 4. 서리(e4.1)

4.1 서리의 변천(q4.1.1 / e4.1.2)

4.2 서리의 폐해(q4.2.1 / e4.2.2)

4.3 서리의 폐해의 발생 배경(q4.3.1 / e4.3.2)

4.4 서리의 폐해의 해결 방안(q4.4.1 / e4.4.2~3)

### 5. 환관(e5.1~3)

5.1 환관과 신하의 차이(q5.1.1~2 / e5.1.3)

5.2 명대 환관의 폐해(q5.2.1~2 / e5.2.3)

5.3 환관의 발호 원인(q5.3.1~2 / e5.3.3)

5.4 환관의 축소 방안(q5.4.1~2 / e5.4.3~4)

### 6. 관리의 선발과 임용(e6.1)

6.1 관리 선발의 관대함(q6.1.1~3 / e6.1.4)

6.2 관리 임용의 엄격함(q6.2.1~2 / e6.2.3)

6.3 과거제의 대안의 문제점(q6.3.1 / e6.3.2)

6.4 과거제의 시행 방안(q6.4.1~4 / e6.4.5~6)

6.5 과거제의 보완책(q6.5.1~8 / e6.5.9)

### 7. 학교(e7.1~2)

7.1 학교의 임무(q7.1.1~5 / e 7.1.6)

7.2 학교와 서원(q7.2.1~2 / e 7.2.3)

7.3 학관의 임용(q7.3.1~3 / e 7.3.4)

7.4 교육의 보편화(q7.4.1~4 / e 7.4.5)

7.5 풍속의 교화(q7.5.1~3 / e 7.5.4)

7.6 서적의 관리(q7.6.1 / e7.6.2~3)

## 8. 법률(e8.1~5)

8.1 법률의 의의(q8.1.1~2 / e8.1.3)

8.2 후대의 법률(q8.2.1~3 / e8.2.4)

8.3 법제의 필요성(q8.3.1 / e8.3.2)

## 9. 토지 제도(e9.1~3)

9.1 토지 국유제(q9.1.1~2 / e9.1.3)

9.2 부세의 확대(q9.2.1~4 / e9.2.5~6)

9.3 부세의 부적절(q9.3.1~4 / e9.3.5)

9.4 토지세의 부과 기준(q9.4.1~3 / e9.4.4)

9.5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q9.5.1~4 / e9.5.5)

9.6 토지 등급제와 휴경의 권장(q9.6.1~2 / e9.6.3)

## 10. 화폐 제도(e10.1~2)

10.1 화폐의 필요성(q10.1.1~2 / e10.1.3)

10.2 금은화폐의 폐단(q10.2.1~3 / e10.2.4)

10.3 동전의 유통(q10.3.1~2 / e10.3.3)

10.4 지폐의 유통(q10.4.1~4 / e10.4.5)

## 11. 경제 개선의 요건과 공상개본론(e11.1~2)

11.1 경제 개선의 요건(q11.1.1 / e11.1.2)

11.2 공상개본론(q11.2.1 / e11.2.2)

## 12. 군사 제도(e12.1~4)

12.1 명대의 군사 제도(q12.1.1~2 / e12.1.3~4)

12.2 병사의 차출 방안(q12.2.1 / e12.2.2)

12.3 장군과 병사의 차이(q12.3.1~2 / e12.3.3)

12.4 장군의 중요성(q12.4.1~2 / e12.4.3)

12.5 문무의 통일과 장군의 임용(q12.5.1~2 / e12.5.3)

12.6 반역의 방지(q12.6.1~3 / e12.6.4)

### 13. 수도(e13.1)

13.1 북경 수도의 문제점(q13.1.1~2 / e13.1.3)

13.2 남경 수도의 적절성(q13.2.1 / e13.2.2)

### 14. 국경 수비(e14.1~2)

14.1 군현제와 봉건제의 폐단(q14.1.1~2 / e14.1.3)

14.2 방진의 활용(q14.2.1~3 / e14.2.4)

## 제3부 『명이대방록』 내용 분석 연구

### 1. 군주

(e1.1)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군주론」[原君]으로 시작한다. 군주의 존재 의의와 임무에서 시작하여 재상과 신하, 학교와 경제 등의 제도의 모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국 전통사회의 유교정치체제는 군주를 핵심으로 한다. 군주가 정치권력의 근본원천이자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본분인 도덕적 교화의 중심이다. 이론적으로는 군주전제주의 자체에 대한 반성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군주전제가 부정된 적은 없었다. 중국사에서 수많은 농민봉기와 반란이 발생하였지만, 군주제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군주제에 기초한 새로운 왕조의 건립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혹자는 황종희의 구상이 매우 모호하기는 하지만, 맹아 상태의 시민계급의 유치한 사상으로서 중국 근대 사상의 기점이고 봉건전제주의 사상의 암제 하에서 빛을 발한 이채라고 높이 평가한다. 인간의 이기적 속성(自私自利)과 법제화를 강조하는 사상은 후래의 자산계급이 쟁취하려 한 ‘천부인권’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양에서 이 방면의 최초의 저술인 『민약론』(民約論, 즉 『사회계약론』)보다 근 1세기가 앞선다. (『사회계약론』은 1762년에 출판되었고, 『명이대방록』은 1661년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황종희가 『명이대방록』에서 전개한 군주에 대한 논의, 나아가 거기서 제안하고 있는 정치체제 내지 국가경영의 청사진은 위와 같은 전통적 관점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e1.2) 지금까지 황종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군주전제에 대한 강렬한 비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장

사위에 의하면 황종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張師偉, 『民本的極限—黃宗羲政治思想新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황종희는 민주민권의 정치사상을 제창하고 봉건적 전제군주사상에 반대한 선구자이며(梁啟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北京: 東方出版社, 1986, 56면; 陳安仁, 『中國政治思想史大綱』, 上海: 商務印書館, 1932, 369면; 楊幼炯, 『中國政治思想史』, 臺北: 商務印書館, 1980, 282면; 侯外廬 主編, 『中國思想通史』, 권5, 155-161면), 나아가 입헌군주정을 주장하였다고 한다(楊榮國, 『中國十七世紀思想史』, 南京: 東南出版社, 1945, 23면). 황종희 정치사상이 여전히 유학에 속하지만 군주전제에는 반대하였다는 것이다.(嵇文甫, 「17世紀中國思想史概論」, 『嵇文甫文集』上,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5, 99면;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下,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09, 606-7면) 혹자는 황종희가 군주전제주의에 반대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遠景” 만 제시하였다(孫叔平, 『中國哲學史考』, 313-316)고 한다. 한편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은 군권에 반대하고 정치제도를 개조하는 이상적 방안을 제시하여 중국의 전통적 민본사상을 극한으로 밀고나갔지만, 황종희 등의 군권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민주주의 계몽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范正宇, 「清初非君思潮與近代民主運動」, 『社會科學輯刊』, 1993(4)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며, 더 나아가 황종희 등의 사상은 여전히 고대로 회귀하려는 사상운동이다(孫曉春, 「明末清初民本思想初論」, 『史學集刊』, 1994(4))라고 폄하하는 견해도 있다.

(e1.3)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평가는 황종희의 정치사상 자체에 비추어 그것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의거하여 내려져야 할 것이다. 황종희는 「군주론」[原君]에서 후대 군주들이 국가(천하)를 사유물로 보는 관념, 즉 일종의 가산국가(家產國家)의 전제군주상을 비판하고 ‘공천하’(公天下)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명청교체기에 명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개혁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제군주제에 대한 제약·수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종희는 ‘공천하’의 이상에 근거하여 후대의 전제군주를 비판하면서 재상권을 강화하여 전제 왕권을 제약하고, 학교를 신사의 청의(淸議) 기관으로 삼아 공론을 형성하여 국정을 감시감독하려 하였다. 그러나 군주제 내지 군주권의 폐지가 아니라 일정한 제약과 수정을 도모한 것이고, 시민적 민권이 아니라 신사(紳士) 권력의 신장을 지향한 것이었다. 『명이대방록』이라는 책이름 자체가 현명한 군주의 도래를 고대한다는 의미이고, 『명이대방록』의 「해제」(題辭)에서 “내가 죽지 않고 있다가 이 책을 가지고 현명한 군주(明主)를 만나면 이윤·여상의 일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왕면(王冕)의 말을 빌어 밝힌 저술 동기도 기본적으로 군주제를 전제로 한 발상이다. 따라서 『명이대방록』에 나타나는 황종희의 사상을 민주주의 계몽사상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전제군주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이대방록』의 의의는 바로 전통적 민본사상을 극한으로까지 밀고 나가 제도적 차원에서 실현방안을 모색한 데 있다. 장사위가 황종희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서의 제목을 ‘민본의 극한’이라 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張師偉, 『民本的極限』, 2004.)

## 1.1 군주의 본분

(q1.1.1) 태어나면서 사람은 각기 사격이고 각기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천하에 공적인 이익(公利)이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도모하지 않고 공적인 해악(公害)이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누군가 나와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이익을 받게 하며, 자기 자신의 해악을 해악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해악을 해소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수고는 반드시 천하 사람들 보다 천만 배이다. 무릇 천만 배의 수고를 하고 자신은 그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의 인지상정으로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 서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에 헤아려 보고서 군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허유(許由)와 무광(務光)이 그들이다.

들어갔다가 다시 떠나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堯)와 순(舜)이 그들이 다.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우(禹)가 그러하다. 어찌 옛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서 그리하였겠는가?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역시 인지상정이다.(「原君」)

(e1.1.2) 황종희의 사회사상의 출발점은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自私自利]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군주 내지 국가권력의 임무 내지 존재 의의는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공적인 이익[公益]을 도모하고 공적인 해악[公害]을 제거하는 것,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이 각기 사적 이익을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군주의 임무 내지 존재의의에 대한 해명이지만, 또한 군주의 발생론적 기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군주의 임무를 도덕적 교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찾는 것은 순자의 사고와 상통하며, 또한 자본주의 맹아가 운위되면서 사적 이익을 왕성하게 추구하였던 명대 말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군주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희생하고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전통적인 민본주의의 사고를 계승한 것이며 여전히 도덕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군주에게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도덕적 교화의 책무를 요구하는 데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실제로 황종희는 군주의 임무를 백성의 교화[教]와 양육[養]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왜 군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희생하고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하는가. 황종희는 요순과 같은 고대의 성왕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군주가 도덕의 전범 내지 도덕적 영웅이라는 유학의 전통적 사유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종희가 옛날에 천하 사람들이 그 군주를 사랑하고 만들면서 아버지에 비하고 하늘에 견주었다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 1.2 후대의 군주 비판

(q1.2.1) 후대의 군주들은 그렇지 않다. 천하의 이해관계의 권한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천하의 이익을 모두 자기에게 돌리고 천하의 해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사적인 이익[自私自利]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매우 사사로운 일을 천하의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오래 지나면서 안주하여 천하를 커다란 기업으로 여겨 자손에게 전하여 무궁토록 향수하게 하려 하였다. “내가 이룬 성취와 작은 형이 이룬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많은가?” (『史記』「高祖本紀」)라는 한고조의 말은 이익을 죄는 속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옛날에는 천하의 인민이 주인(主)이고 군주는 객(客)이어서, 군주가 일생토록 경영하는 바가 다 천하를 위한 것 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군주가 통치의 주체(主)가 되고 천하의 인민은 통치의 대상(客)이 되어 천하에 평안한 곳이 없는 것은 다 군주 때문이다. 그래서 천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천하 사람들의 간과 뇌를 해치고 천하 사람들의 자녀를 이산시키며 자기 한 사람의 재산을 늘리려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나는 본래 자손을 위해 창업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미 천하를 얻은 뒤에는, 천하 사람들의 골육을 착취하고 천하 사람들의 자녀를 이산시키며 자기 혼자의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여 “이는 내 기업의 이윤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천하의 큰 해악은 오직 군주다.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기 사적 이익 [自私自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原君」)

(e1.2.2) 황종희는 군주의 기원과 본분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바, 사람이 각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며[自私自利] 군주는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공적인 이익[公益]을 도모하고 공적인 해악[公害]을 제거하는 존재라는 명제에 근거하여 후대의 군주를 비판하고 있다. 후대의 군주들은 군주의 본래적 존재 의의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천하 사람들의 이익 추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황종희는 천하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는 사고방식과 군주가 통치의 주체[主]가 되고 천하의 인민은 통치의 대상[客]이 되어버린 현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파

악한다. 황종희는 후대의 군주들의 그러한 행태에 근거하여 군주가 천하의 큰 해악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천하 사람들이 자신의 군주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도적과 원수처럼 여기고(“君之視臣如土芥則臣視君如寇讐.” 『孟子』「離婁下」3) ‘독부’(獨夫)라 부르는 것(“撫我則后，虐我則讐。獨夫受洪惟作威，乃汝世讐。” 『尚書』「周書·泰書」下 3)이 참으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부’는 맹자가 말하는 ‘一夫’(『孟子』「梁惠王下」8)와 거의 같은 의미다.) 그리고 탕왕과 무왕이 결주와 같은 폭군을 주살한 것을 긍정하는 것은 본래적 존재의의에서 벗어난 군주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는 인식을 함축하며, 이는 공자의 정명론과 맹자의 혁명론을 계승하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백이숙제의 고사를 근거없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황종희가 군주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래적이고 바람직한 존재양태에서 벗어난 군주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군주가 객(客)이고 천하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황종희의 주장은 인민이 주권자로서 국가통치의 주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국가 경영이 인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민본 내지 위민(爲民)의 이념을 강력하게 제시한 것이다.

## 2. 신하

(e2.1) 황종희의 정치사상에서 신하는 당연히 군주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한 마디로 신하는 “군주의 분신” [分身之君, 「置相」]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광대한 천하를 군주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업무[群工]를 나누어 함께 다스리는 존재, 즉 천하통치의 분업자이다. 황종희의 표현을 빌면 “함께 나무를 끄는 사람” [共曳木之人, 「原臣」]이다. 신하가 군주의 분신이라는 말이 신하가 군주의 대리인 내지 군주에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초점은 신하란

군주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자로서 군주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천하를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데 있다. 황종희의 사상을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계몽적 형태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전통적 민본주의와 위민주의의 태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황종희의 사상은 나름의 합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자의성을 견제하려는 유학의 전통적 사유방식을 계승 발전시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본·위민과 분권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발상이 그것이다. 이는 신하 내지 군신관계에 관한 황종희의 인식에서 군주와 신하의 국가경영이 인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신하는 군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하에 관한 황종희의 주장은 사대부 신료를 통한 군주권력의 견제라는 유학의 전통적인 발상을 거의 극한에까지 밀고 나간 것, 달리 표현하자면 ‘유교적 민본주의의 극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1 신하의 본분과 도리

(q2.1.1) 대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마치 큰 나무를 끄는 것과 같다. 앞에서 소리치면 뒤에서 호응한다. 군주와 신하는 함께 나무를 끄는 사람이다. 만약 손으로 나무에 동여맨 줄을 잡지 않고 발로 땅을 딛지 않고서, 나무를 끄는 사람이 나무를 끄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장난친다면, 나무를 끄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나무를 끄는 일을 망칠 것이다.(「原臣」)

(q2.1.2) 어떤 사람이 형체가 없는 데서 보고 소리가 없는 데서 듣는 것으로 군주를 섬긴다면, 신하라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목숨을 바쳐 군주를 섬긴다면, 신하라 할 수 있는가? 아니다! 형체가 없는 데서 보고 소리가 없는 데서 듣는 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데 사용하는 것을 빌어온 것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극치다. 그런데도 신하라 하기에 부족하다면, 신하의 도리는 어떠해야 하는가?(「原臣」)

(q2.1.3) 천하는 광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어서 여러 직분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출사하는 것은 천하를 위함이지 군주를 위함이 아니며, 만민을 위함이지 한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천하만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도리에 맞지 않으면 군주가 태도나 말로써 나에게 강제하여도 감히 따르지 않는다. 하물며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 데서랴! 도리에 맞지 않으면 조정에 서는 것도 감히 승낙하지 않는데 하물며 목숨을 바치겠는가!(「原臣」)

(e2.1.4) 신하는 군주와 함께 나무를 끄는 것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신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군주가 천하만민을 위하여 국가를 경영한다는 인식과 맞물려 신하는 천하를 위해 복무한다는 규정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황종희는 군주에 대한 무한충성이 그러한 본분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형체가 없는 데서 보고 소리가 없는 데서 듣는다” [視於無形, 聽於無聲]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예기』 「곡례」에 나오는 말로서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이다. 황종희는 이 태도를 군주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목숨을 바쳐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은 무한충성은 천하를 위해 복무하는 신하의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황종희에 따르면, 신하가 복무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오직 천하만민의 입장에 서서 천하만민을 위해 복무하면서 동시에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자신을 예에 맞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한 신하는 군주가 자신을 스승과 벗[師友]의 예로서 대우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지 않는다.

## 2.2 군주 중심의 복무 태도 비판

(q2.2.1) 세상의 신하들은 이 이치에 어두워서 신하가 군주를 위해 세워졌다고 생각한다. 군주가 나에게 천하를 나눠준 연후에 다스리고 군주가 나에게 인민을 준 연후에 다스린다고 하여, 천하와 인민을 군주의 사적인 소유물로 여긴다. 이제 사방이 시끄럽고 혼란하며 민생이 초췌하여 우리 군주를 위태롭게 하기에 죽하니, 불가피하게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여긴다. 진실로 사직의 존망에 관계가 없다면, 사방의 혼란과 민생의 초췌는 충실했던 신하라 해도 또한 사소한 걱정거리라고 생각

한다.(「原臣」)

(q2.2.2) 대개 천하의 치란은 한 집안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만민이 걱정하는가 혹은 즐거운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결주가 망하는 것은 곧 다스려지는 까닭이 되고, 진과 봉고가 일어나는 것은 곧 혼란스러워지는 까닭이 된다. 진·송·제·량의 흥망은 천하의 치란과 무관하다. 신하가 인민이 도탄에 빠져있는 것을 경시하면, 비록 군주를 보좌하여 흥하게 하고 군주를 따라서 망한다고 하더라도, 신하의 도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다.(「原臣」)

(q2.2.3) 아, 후대의 교만한 군주들은 방자하여 천하만민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들이 초야에서 구하는 것은 단지 분주하게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이에 초야에 있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한 분주하게 [군주를 위해] 봉사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아, 한 때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자 마침내 군주가 자신을 알아준 데 감격하여 다시는 예가 갖춰졌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당하다고 여긴다.(「原臣」)

(q2.2.4) 만력 초기에 신종이 장거정을 대할 때 예가 다소 후하였는데, 이는 고대에 스승으로 대하던 것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안 된다. 당시 논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장거정이 그런 예를 받아들인 것은 신하의 예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저 장거정의 죄는 바로 자신을 스승으로 대하게 하지 못하고 노비로 부리게 한 데 있는데, 반대로 책망하니 어찌된 일인가? 이는 사람들의 이목이 시속의 신하 관념에 젖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신하와 군주가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은 같다는 것을 알겠는가?(「原臣」)

(e2.2.5) 황종희는 신하가 군주와 함께 만민을 위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여기므로, 군주를 위하여 복무하는 태도는 당연히 준열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황종희에 의하면, 그것은 군주가 천하와 만민을 자신의 사유물로 보고 신하는 그 군주가 자신에게 나눠준 권한에 의거하여 신하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지더라도 사직의 존망에 관계가 없다면, 즉 자신의 군주가 위태롭지만 않다면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군주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해결할 방도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러나 황종희에 따르면, 천하의 치란은 군주나 왕실의 흥망과는 무관하고 오직 천하 만민의 안락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신하의 도리는 천하만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과 군주가 자신을 적절하게, 즉 사우로서 예우하는 경우에만 함께 천하를 다스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연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만약 재야에서 발탁된 사람이 그것을 군주의 은혜로 여기면서 군주를 위해 복무하고 천하만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의 노비일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신하가 아니다. 신하는 군주가 나눠준 혹은 부여한 권한에 의거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하만민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존재근거를 갖게 된다는 발상은 비록 군주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주를 권력의 원천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

### 2.3 군신과 부자 및 신하와 노비의 차이

(q2.3.1) 흑자는 “신하를 [臣子라 하여] 자식과 병칭하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기(氣)를 가지니, 자식은 부모의 몸을 나눠 받아 자기 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효자는 부모와 비록 몸은 다르지만 날로 그 기를 가깝게 하여 오래 되면 통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불효자는 몸을 나눠 받은 이후 날로 멀어지고 소원해져서 오래 되면 기가 비슷하지 않게 된다. 군신의 이름은 천하에 따라 나온 것이다.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직책이 없으면, 나는 군주에게 길가는 사람이다. 나아가 군주에게 출사하되, 천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군주의 노비일 뿐이고, 천하를 위해 일하면 군주의 사우(師友)이다. 그러므로 신하라 하지 만 그 명칭은 누차 변하였다. 무릇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래 변할 수 없는 것이다.(「原臣」)

(q2.3.2) 군주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의 입장에서 보아, 군주에게 태도나 말로 드러내지 않는 욕구가 있을 때 내가 그에 따라 보고 듣는다면, 이는 내시나 궁녀의 마음이다. 군주가 자기를 위해 죽고 자기를 위해 망할 때 그를 따라 죽고 망한다면, 이는 사적으로 총애받는 자의 일이다. 이것이

신하 노릇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는 방법이다.(「原臣」)

(e2.3.3) 황종희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엄격하게 구별한다. 부모와 자식은 자식이 부모의 몸을 나눠받아서 같은 기를 가지고 태어나 선천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에 비해 군주와 신하는 일종의 동업자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후천적으로 맺어진 관계다. 천하가 군주의 사유물이라는 관점을 부정하는 황종희는 신하로서 군주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맡지 않는 일반인은 군주에게 그야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소위 ‘길 가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한다. 황종희는 신하의 도리에 관한 논의에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를 방식으로 군주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군주가 태도나 말로써 표현하지 않는 욕구까지 미루어 짐작하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기』에서 말한 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視於無形，聽於無聲” 「曲禮」上] 군신관계와 부자관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황종희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라 하겠다. 한편 황종희는 출사하여 관리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천하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만 군주의 스승과 벗[師友]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신하라 할 수 있지만, 군주를 위해 일하면 단지 군주의 노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다. 황종희는 「환관」(閨宦)에서 군주에게 노비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환관이고, 신하는 조정에서 군주의 사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비와 사우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 3. 재상

(e3.1) 황종희가 구상한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는 재상이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재상은 신하가 군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노비’가 아니라 군주의 스승이자 벗[師友]으로서 때로는 군주의 업무

를 대신하기도 하는 존재다. 황종회에 따르면, 고대에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던 섭정이 재상의 지위를 여실하게 보여주며, 군주가 승상에 대해서는 담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禮)가 군주의 스승과 벗으로서 신하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재상은 곧 군주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진정한 의미의 신하의 본질에 부합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군주의 지위의 세습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해결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즉 세습을 통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는 자가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 재상의 지위에서 그를 보좌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황종회는 재상의 권한 내지 재량권을 확대 강화시키는 일종의 책임총리제를 주장하였다. 군주에게 올라가는 모든 서류는 재상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군주가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상이 결재하고 하급 부서에 보내어 시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황종회는 그리 하면 결재 서류가 위아래로 번거롭게 왔다갔다하면서 시일을 소모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e3.2) 주지하다시피 명대 정치제도의 특징은 승상제를 폐지하고 황제권을 절대화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내각(內閣)과 사례감(司禮監)을 두 축으로 이용한 것이다. 명 태조 주원장(洪武제, 재위 1368~1398년)은 흥무 13년(1380) 승상 호유용(胡惟庸)을 날조한 옥사(獄事)에 염려 넣어 반란 혐의로 처형한 후 중서성(中書省)을 없앰으로써 승상제를 영구히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조훈(祖訓)을 남겼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하여 당시까지 중서성에 예속되어 있던 육부를 독립적인 기구로 승격시키고 정무를 분담하게 하여 황제에게 직속시켰으며, 군무(軍務) 기구인 대도독부를 오군도독부로 나누어 역시 황제에게 직속시켰다. 어사대도 개편하여 감찰여사를 중심으로 황제의 눈과 귀의 역할(耳目官)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제개혁의 목적은 권력이 한 부서에 집중되어 업무의 처리가 정체되는 것을 막고 권한을 분산시켜 간신이 국권을 잡아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좀먹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원나라가 망한 원인

이 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상하의 언로가 막힌 데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 태조가 승상제의 폐지와 언로의 개방으로 대신의 권력독점과 언로의 폐색(閉塞)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신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오히려 인민의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曹永祿, 『中國近世政治史研究－明代科道官의 言官의 機能－』, 서울 : 지식산업사, 1989) 황종희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와 신하 및 재상에 관한 본질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승상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3.1 군주와 신하의 관계

(q3.1.1) 원래 군주를 세운 것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천하를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었으므로, 신하를 두어 다스렸다. 신하란 군주의 분신이다. 맹자는 말했다. “천자가 하나의 지위요, 공(公)이 하나의 지위요, 후(侯)가 하나의 지위요, 백(伯)이 하나의 지위요, 자(子)와 남(南)도 똑같이 하나의 지위이니, 모두 다섯 등급이다. 군주가 하나의 지위요, 경이 하나의 지위요, 대부가 하나의 지위요, 상사가 하나의 지위요, 중사가 하나의 지위요, 하사가 하나의 지위이니, 모두 여섯 등급이다.” 대개 외적으로 말하면 천자로부터 공의 거리는 공·후·백·자·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고, 내적으로 말하면 군주로부터 경에 이르는 거리가 경·대부·사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유독 천자만이 그러한 위계서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옛적에 이윤이나 주공이 섭정할 때, 재상의 자격으로 천자의 일을 한 것은 대부가 경을 대신하고 사가 경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置相」)

(q3.1.2) 후대에 이르러 군주는 교만하고 신하는 아첨하여 천자의 지위가 비로소 경·대부·사 사이와 같지 않게 되었다. 이에 어리석은 선비들이 마침내 섭정을 요원한 일로 생각하여 군주가 죽고 자식이 즉위하면 곡읍하고 복상하는 슬픔은 잊어버리고 예약과 정벌의 정치를 논하니, 군신 간의 의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자 사이의 은혜가 이미 먼저 끊어져버린다. 불행하게도 나라에 군주의 지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면, 모후에게 맡기고 재상된 자는 바아흐로 혐의를 피하여 처신하면서 차라리

결렬되고 폐괴하도록 해서 천고에 웃음거리가 되니, 천자의 지위를 너무 높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置相」)

(q3.1.3) 옛날에 군주가 신하를 대할 때 신하가 절하면 군주가 반드시 답배하였다. 진한 이후에는 [이러한 예가] 폐지되어 논하는 일이 없었지만, 승상이 나아가면 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수레를 타고 있을 때에는 내려왔다. 재상제가 없어지자 천자가 다시는 함께 예를 행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에 마침내 백관을 설치한 이유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여, 나를 섬길 수 있으면 내가 현명하다고 여기고 나를 섬길 수 없으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었다. 관직을 설치한 의미가 이미 잘못되었는데, 하물며 군주를 세운 의미이랴? (「置相」)

(e3.1.4) 황종회에 의하면 신하란 군주와 함께 광대한 천하를 다스리는 동업자 내지 분업자이므로, 신하들 사이의 위계는 천자와 신하 사이의 위계와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다. 고대의 섭정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섭정이란 천자의 유고 시에 재상이 천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황종회에 따르면, 그것은 대부(大夫)가 경(卿)을 대신하고 사(士)가 대부를 대신하는 것과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후대에 이르러 군주와 신하 사이의 위계를 신하들 사이의 위계와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군주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 상례를 다 치르지도 않은 채 섭정을 두지 않고 새로 즉위한 군주가 정사를 논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군신관계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동시에 죽은 군주와 새로 즉위한 군주의 부자관계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재상제가 폐지된 이후로 군주가 재상에게 답배를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수레에서 내리는 예가 사라졌다. 결국 군주는 신하들의 위계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게 되었고, 신하들의 존재, 곧 백관의 설치가 군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신하를 자신의 스승과 벗(師友)으로서 예우하는 것도 사라졌다. 황종회에 의하면 군주와 신하의 관계 내지 신하의 존재의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로 이러한 병폐의 근원이다.

### 3.2 왕위의 세습과 재상의 역할

(q3.2.1) 옛날에는 자식에게 전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에게 전하였으며, 천자의 지위가 자리에 있든 떠나든 간에 재상과 똑같다고 보았다. 그 후에는 천자는 자식에게 전하고 재상은 자식에게 전하지 않았다. 천자의 아들이 다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재상의 자리를 현명한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보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천자 또한 현명한 사람에게 전하는 의리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재상제가 없어지자, 천자의 아들이 한 번 현명하지 못하면 다시는 혼자에게 전한다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니, 또한 자식에게 전하는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지 않겠는가?(「置相」)

(e3.2.2) 황종희는 재상의 의의 내지 역할을 군주의 세습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군주의 지위를 세습하는 경우에는 군주의 아들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선왕의 아들로서 천자의 지위를 계승한 사람이 패악하거나 무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에 천자의 지위를 자식에게 전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선양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다. 황종희는 현명한 사람이 재상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3.3 재상의 권한

(q3.3.1) 재상 한 사람과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참지정사가 매일 편전에서 정치를 논의하는데, 천자는 남면하고 재상·육경·간관은 동면·서면하여 차례로 자리한다. 집사는 모두 사인(士人)을 쓴다. 천자에게 올리는 문서는 육과급사중이 주관하는데, 급사중이 재상에게 보고하고 재상이 천자에게 보고하여 가부를 함께 논한다. 천자는 붉은 글씨로 결재한다. 천자가 모두 할 수 없으면 재상이 그것을 결재하고 육부로 내려 보내 시행케 하며, 다시 천자에게 올리지 않고 내각에 보내어 결재의 원안을 만들게 하였다. 만일 내

각에서 또다시 천자에게 보내는 등 이러저리 얹힌 다음에 해당 관청으로 내려 보내면, 이는 마치 옛날처럼 내왕이 계속되게 하는 것과 같아서 통치권이 환관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置相」)

(e3.3.2) 황종희는 재상의 권한 내지 재량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자에게 올리는 서류는 모두 재상을 경유하는데, 재상이 천자에게 보고하여 가부를 정하고 천자가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상이 대신 결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거론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총리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상권 강화는 황종희가 주장하는 바, 군주의 지위를 세습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는 재상의 역할에 부합한다. 명대 초기에는 전대에 이어 계속 급사중(給事中)을 두었는데, 영락(永樂) 6년(1408) 급사중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여섯 과를 두어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의 처리를 보조하게 한 것이 육과급사중이다.

### 3.4 후대의 내각

(q3.4.1) 혹자는 후대의 내각에 들어가 일을 하는 사람은 비록 재상이라 는 명칭은 없지만 재상의 실권은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다. 내각에 들어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직무가 천자의 비답을 작성하는 데 있었으나, 일개 부서의 서기와 같다. 그 일은 가볍고 비답을 작성하는 것 또한 반드시 안에서 지시한 연후에 만드는 것인데, 실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재상의 실권이 있는 것은 오늘날의 환관이라 생각한다. 대개 통치권은 의지하는 바가 없을 수 없다. 저 환관들이 재상의 정치권력이 땅에 떨어져 수습할 수 없음을 보고, 그에 따라 법령을 만들고 자신들의 직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재상으로부터 나왔던 생사여탈의 권한 등이 차례로 그들에게 돌아갔다. 명대에 내각에 있던 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환관이 남긴 찌꺼기를 빌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관의 감정에 편승하였다. 일반인들이 그것을 전하고, 역사책은 그것이 그들의 재상으로서의 업무수행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환관으로 하여금 재상의 실권을 갖게 한 것은 승상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置相」)

(e3.4.2) 내각제는 태조가 승상제를 폐지하고 사보관(四輔官)을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이다. 내각의 대학사가 기무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태조와 성조는 창업기의 군주로서 특별히 대언을 기다리지 않고 장주를 친히 살펴 결제하였다. 그러나 왕조가 수성기에 접어들자 각신이 대부분 구신(瞿臣)으로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테다 군주가 병약하거나 어릴 경우에는 자연히 정사를 그들에게 의지하는 바가 커졌다. 특히 “왕의 말을 대신하는” 대학사의 표의권이 정착함으로서 내각의 대학사가 기존의 정치고문 내지 비서에서 벗어나 재상의 권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태조가 일찍이 환관의 문자습득을 금지할 정도로 환관의 정치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성조 영락제가 반란의 진압과정에서 그들을 이용한 것을 계기로 내서당(內書堂)을 설치하여 환관들로 하여금 서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정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의제를 중심으로 한 제반 문서의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이후 조정의 권력관계는 환관의 최상위 관직인 사례태감과 내각 대학사 사이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다.

(e3.4.3) 황종희는 명대의 내각이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재상의 실권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히 명대 후기의 실상에 근거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재상의 실권은 오히려 환관에게 있었고 내각은 단지 서기(書記)의 역할을 수행한 데 불과하였다고 한다. 내각이 천자의 비답을 작성하는 역할을 행하였을 뿐 위에서 올라온 서류에 대해 결재하거나 일정한 사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황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인의 장막을 형성한 환관들이 오히려 그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였다. 권력이 환관의 수중에 떨어지자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합하거나 그들이 남겨놓은 지엽적인 영역에 안주하게 되었다. 황종희는 이것이 승상제의 폐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아 승상제의 부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4. 서리

(e4.1) 서리(胥吏)는 전근대 중국에서 관청(衙門)의 하층에서 근무하던 관리로서, 이서(吏胥) 서리(書吏) 이인(吏人) 또는 이(吏)라고도 하였다. 서리의 기원은 한(漢)나라의 영리(令吏)이지만, 서리제도는 특히 송대 이후 사대부 체제의 출현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였다. 황종희에 의하면, 옛날에는 서리가 관공서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였는데, 왕안석이 모역법(募役法)을 실시하여 차역(差役)을 고역(僱役)으로 고친 이후로 잡역도 서리가 담당하게 되었다. 황종희는 학문적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고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한 사인(士人)에 대비시켜 기술적인 실무자로서 서리의 폐해를 거론하고 있다. 황종희는 우선 서리의 업무가 확대되어 사인이 기용될 영역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학문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한 유교적 지식인이 국가사회의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유교적 학문과 덕성을 갖춘 사인이 아닌 실무자로서 서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 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또 서리의 세습에 의거하여 비리가 지속되고 구조화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역(僱役)을 폐지하고 차역(差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역은 일정 기간 복무한 후에 교대하므로 후환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고역으로 세습하는 서리는 관청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향민에게 압박을 가한다. 또한 서리는 농민과 부류가 달라서 농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으로서 농사짓다가 일정 기간 부역하므로 농민의 사정에 밝은 차역의 경우와 대비된다. 그리고 서리는 오랜 근무로 뿌리를 깊이 내려 폐해가 고질화되고 심화된다. 황종희는 서리의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인의 기용과 차역의 부활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 담당관리에게 일정한 인사권을 부여하여 서리를 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하려는 황종희의 분권적 사고가 반영된 발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분권의 이념은 황종희의 국가경영의 청사진

에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 4.1 서리의 변천

(q4.1.1) 옛날의 서리는 한 가지였는데, 지금의 서리는 두 가지다. 옛날 부사(府史)-서도(胥徒)는 문서 관리를 담당하고 회계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었다. 잡역에 종사하는 일은 향민이 충당하였다. 왕안석이 차역(差役)을 고역(僱役)으로 고친 이후로 잡역부 또한 변화되어 서리가 되었다.(「胥吏」)

(e4.1.2) 황종희는 여기서 서리의 변천을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옛날에는 서리가 관공서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였는데, 왕안석이 모역법(募役法)을 실시하여 차역(差役)을 고역(僱役)으로 고친 이후로 잡역 또한 서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부사(府史)는 문서를 관장하는 관리이고, 서도(胥徒)는 관공서에서 잡역을 맡은 이들의 통칭이었다. 차역은 향민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관공서의 잡역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역은 모역법 혹은 면역법(免役法)을 가리킨다. 즉 부역할 사람이 일정액의 면역전(免役錢)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傭人) 부역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병사의 충당에 관한 제도의 경우로 말하면, 차역은 병역의 의무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장정에게 복무를 요구하는 개병제에 해당하고, 고역은 일정한 보수를 주고 군인을 고용하는 모병제 내지 용병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황종희는 고역과 서리의 세습 등으로 인한 서리의 문제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차역을 부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 4.2 서리의 폐해

(q4.2.1) 대개 서리가 천하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오늘날의 서리는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그것을 맡아, 이른바 황망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익이 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무슨 못할 짓이 있겠는가? 법망을 꾸며 사사롭게

마구 행동한다. 무릇 오늘날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모두 서리에게서 나왔으니, 이로써 천하에 서리의 법은 있고 조정의 법은 없다. 둘째, 천하의 서리가 이미 무뢰한들의 거처가 되었으며, 좌이(佐貳)도 서리 출신이 되었다. 사인들은 그들을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지목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 사인은 많은데 벼슬하는 길이 좁아 마침내 재능있는 사람들이 재야에서 늙어 죽어가고 있어서, 공자·맹자의 때에 위리(委吏)·승전(乘田)·포관(抱關)·격탁(擊柝)이 모두 사인이었던 것과 같지 않다. 셋째, 각 아문의 좌이는 장관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부에서 전형하는 것인데, 그 이름과 성을 또한 두루 알지 못한다. 하물며 그 사람의 현명함 여부를 어찌 알겠는가? 그러므로 전형하는 부서인 이부가 변해서 추첨하는 첨부(籤部)가 되었으니, 천고의 웃음거리이다. 넷째, 중앙의 권부에 있는 서리는 정수(頂首)에 모두 수천 금을 들여 장식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형이 아우에게 전한다. 그 중 한 사람이 법에 걸리면 뒤에 그 사람을 잇는 것은 아들이나 아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손아랫사람에게 전한다. 이로써 오늘날 천하에는 봉건적인 나라는 없고 봉건적인 서리가 있게 되었다. 진실로 서리를 모두 사인으로 기용한다면 모든 것이 그 반대가 되어 폐해를 없앨 수 있다.(「胥吏」)

(e4.2.2) 황종희는 여기서 서리의 폐해로 크게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둘째, 서리의 직무가 확대됨으로써 관공서에 사인(土人)이 등용될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상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관리 내지 공인으로서 도덕적 이념적 자질을 갖추지 않은 실무자로서 서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며, 그 대안은 당연히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인을 등용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한 유교적 지식인이 국가사회의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유학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셋째, 장관의 추천이 아니라 이부(吏部)의 전형을 통해 좌이를 임용함으로써 부서와 업무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종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 담당관리에게 일정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 권

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어하려는 황종희의 분권적 사고가 반영된 발상으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상통하며, 이 때문에 황종희의 정치사상을 (비록 지나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계몽사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중앙의 권부에 있는 서리가 세습됨으로써 아버지가 비리로 물러나도 그 아들이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황종희에 따르면 이 문제는 차역(差役)을 부활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 4.3 서리의 폐해의 발생 배경

(q4.3.1) 대개 서리가 감히 해를 끼치는 데에는 그 까닭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관청의 힘을 믿고 있어서 향민들이 감히 그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차역의 경우는 곧 내가 금년에 저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면 저 사람이 내년에 나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는 관청 사람이고 하나는 농촌 사람이어서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서로 개의치 않는 것이다. 차역의 경우는 동일한 부류의 사람으로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꺼리는 것이 없다. 셋째, 관청에 오래 근무하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빼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차역의 경우는 재주가 서툴러 감히 법을 놓단하지 못한다. 그리므로 방리장이 함께 관청에서 일을 맡고 있으나 향민들이 방리장에 대해 심히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 차역과 고역의 다른 점 때문이다.(「胥吏」)

(e4.3.2) 황종희는 여기서 서리의 폐해가 가능한 원인 내지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 서리가 관청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향민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역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한 뒤 교대하므로, 후환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둘, 서리는 농민과 부류가 달라서 농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역에서는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일정 기간 부역하는 것이므로 농민의 사정에 밝다고 한다. 셋, 당시

의 서리는 오랜 근무로 뿌리를 깊이 내려 폐해가 고질화되고 심화된다는 것이다. 방리장의 경우는 차역으로서 교대되므로 그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명나라 태조 때 농촌에서는 110호를 1리(里)로 하고 도시에는坊(坊)을 두었으며, 그 장인 방장(坊長)과 이장(里長)에게 각기 차역을 부과하였다. 서리의 폐해가 가능한 원인을 이와 같이 파악하므로, 황종희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부역에 종사하는 차역을 부활시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 4.4 서리의 폐해의 해결 방안

(q4.4.1) 잡역하는 서리의 폐해를 없애려면 차역을 부활시켜야 한다. 문서관리와 회계업무를 맡은 서리의 폐해를 없애려면 사인(土人)을 기용해야 한다. 차역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송나라 때는 차역에 아전·산종(散從)·승부(承符)·궁수(弓手)·수력(手力)·기장(耆長)·호장(戶長)·장정(壯丁) 등의 항목이 있었다. 아전은 관청의 물건을 맡아 주관하며 지금의 고자(庫子)·해호(解戶)의 부류이다. 호장은 부세를 독촉하는 자로 지금의 방리장(坊里長)이다. 기장·중수·장정은 도적을 체포하는 이들로, 지금의 궁병·포도의 부류이다. 승부·수력·산종은 잡역을 맡아 하는 것으로, 지금의 조예(阜隸)·쾌수(快手)·승차(承差)의 부류이다. 무릇 지금의 고자·해호·방리장은 모두 차역이며, 궁병·포도·조예·쾌수·승차는 곧 고역이다. 내 생각에 방리장은 당번을 지낸 후 다음해에도 여전히 한 사람을 내어 잡역을 맡게 해야 한다. 사인(土人)을 기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부(六部)·원(院)·시(寺)의 관리는 진사로서 정무를 이해하는 자에게 맡기고, 다음은 임자(任子)에 미치고, 다음은 국학(國學)의 벼슬에 합당한 자에게 미친다. 충분히 익숙해지면 주현의 관리로 나가거나 혹은 부원의 속관을 거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탈락시킨다. 군현의 관리는 각각 육조(六曹)를 두고 제자원으로서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충당한다. 충분히 익숙해지면 국학으로 승진시키거나 혹은 곧바로 육부·원·시의 관리로 보임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종신토록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군(郡)의 경력(經歷)·조마(照磨)·지사(知事)와 현(縣)의 승(丞)·부(簿)·전사(典史)는 모두 없애고, 행성(行省)의 법은 군현과 같게 한다.(「胥吏」)

(e4.4.2) 여기서 황종희가 제시하는 있는 서리 문제의 해결 방안은 차역의 부활과 사인(士人)의 기용이다. 차역의 부활은 서리, 특히 중앙의 권부에 있는 서리가 일종의 전문직으로서 세습되어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아버지가 비리로 물려나도 그 아들이 자리를 물려받음으로써 비리가 지속되고 심화되며 향민 내지 농민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폐단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황종희는 서리의 폐해가 고역(雇役)이라는 제도적 틀로 인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그 형세를 보고서 형세가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비록 금지해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형세가 악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멈추게 하기 위해 금지할 필요가 없다. 차역이란 본디 형세가 악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胥吏」) 이 또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하지 않고 기본적인 제도적 틀의 구비를 중시하는 황종희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법제론」 (原法)에서 “다스리는 법이 있는 연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有治法而後有治人]고 하였다. 한편 서리는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도덕적 이념적 자질을 갖추지 않은 실무자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황종희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인을 기용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한 유교적 지식인이 국가사회의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유학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e4.4.3) 고자(庫子)는 창고를 담당하는 관리이고, 해호(解戶)는 양곡을 담당하는 차역이다. 조예(阜隸)는 아문에 속한 차역이고, 쾌수(快手)는 관서에서 범죄인의 체포(緝捕)와 형의 집행을 관장하는 차역이며, 승차(承差)는 총독(總督)·순무(巡撫)·감정(鹽政) 아래에서 일하는 하급관리이다. 육부(六部)는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여섯 부서이고, 원(院)은 한림원(翰林院)·학사원(學士院)·도찰원(都察院)·태의원(太醫院) 등이며, 시(寺)는 진한 이후의 구경(九卿)·구시(九寺)로서 시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임자(任子)는 부형의 공적 덕으로 관직에

천거된 사람이다. 경력(經歷)은 추밀원과 도원수에서 출납문서를 관장하는 관리이고, 조마(照磨)는 문서를 대조하고 인쇄하는 일을 담당하며, 지사(知事)는 안찰사와 초토사 등에 부속된 속관이다. 승(丞)은 한대에 현령을 보좌하는 관리이고, 부(簿)는 재물과 의장을 담당하는 관리이며, 전사(典史)는 공문의 수발을 담당하는 지현의 하급관리이다.

## 5. 환관

(e5.1) 환관(宦官)은 시인(寺人)·엄관(閻官 혹은 奄人)·태감(太監)·내감(內監)·내관(內官)·내신(內臣)·내수(內堅)·중관(中官)·환시(宦寺)·환자(宦者)·황문(黃門) 등의 이름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별칭으로 내시(內侍)라 하였다. 환관은 고대의 서아시아 여러 나라와 그리스·로마·인도·이슬람국가들에서도 있었으나, 특히 중국의 환관이 가장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아마도 많은 여자를 거느려 일부다처제의 조직을 가졌던 궁궐에서 질서와 순결 및 비밀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성의 환관이 필요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춘추시대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신하 수조(豎勺)는 스스로 거세해서 환관이 되어 환공의 후궁들을 관리할 것을 자원해서 환공의 신임을 받았고, 진(晉)나라의 문공(文公) 때에는 환관 발제가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훗날 진(秦) 나라의 중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상양이 중용된 것은 환관 경감(景監)이 밀어준 덕분이었다. 진나라 2세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송상 이사(李斯)와 암투를 벌여 그를 죽이고 황제를 살해한 조고(趙高)와 같이 막강한 세력을 지닌 환관도 출현하였다. 환관의 폐해가 가장 심하였던 시대는 후한(後漢)과 당(唐) 및 명(明) 나라 때이다. 후한 때에는 많은 황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어 어머니인 태후(太后)가 섭정(攝政)이 되었는데, 여자가 직접 남성의 대신과 면접하는 일을 피해서 정령(政令)의 전달을 환관이 맡았기 때문에 그 세력은 크

게 뻔쳤다.

(e5.2) 명 태조 주원장이 환관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문자의 습득을 금지하기까지 하였지만, 명나라는 바로 환관들의 전횡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하여진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영락제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측근 세력을 포진시키면서 내서당(內書堂)을 설치하여 환관들로 하여금 서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정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관의 정치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표의제를 중심으로 한 제반 문서의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어, 때로 환관의 최상위 관직인 사례태감이 내각 대학사보다 우위에 서는 양상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영락제 이후 왕진(王振)·왕직(汪直)·유근(劉瑾)·위충현(魏忠賢) 등 전횡적인 환관이 발호하였는데, 왕진은 금은을 채운 창고가 60동이 넘었다고 하며, 위충현은 황제에 뒤지지 않는 호사를 부렸고, ‘황제만세’를 본떠 스스로를 ‘9천세’라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중기 이후 지속되는 환관의 전횡은 결국 명나라가 쇠약해지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e5.3) 명청교체기 내지 명말청초의 사상사로서 황종희의 고심어린 질문 가운데 하나는 명나라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물론 유교적 문화질서가 이민족인 만주족 지배 하의 청나라에서도 견뎌내며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도 맞물려 있었고,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하는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환관에 관한 황종희의 문제제기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다. 명 왕조의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환관의 발호라는 것은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공인된 사실이었다. 한·당·송 대에도 환관의 폐해가 있었지만 조정이 환관을 반드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군주의 혼미함에 편승하여 환관이 정치에 간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대에는 제도와 국면 자체가 이미 환관의 정치참여를 조장하여, 심지어는 환관이 내각의 학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조정과 국사를 좌지우지하기도 하였다. 황종희는 환관이 그와 같이 발호할 수 있었

던 원인으로 우선 군주의 욕심을 들고 있다. 화려한 궁궐과 많은 여자의 관리를 위해 많은 환관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군주가 천하를 오락의 도구로 보는 관점, 나아가 군주가 천하를 개인의 사유물로 보는 관점이 놓여 있다고 한다. 환관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 편승해서 발호하여 그것을 부채질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황종희에 의하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당연히 군주의 욕심을 줄이는 것, 즉 화려한 궁궐과 후궁을 감축하는 것이며, 그리하면 자연히 시중을 들 환관의 수도 줄일 수 있다고 것이다. 또한 신하와 구분되는 환관의 직분과 존재의의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정치에 간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5.1 환관과 신하의 차이

(q5.1.1) 또한 군주에게 환관이 있는 것은 노비의 역할을 위해서고, 조정에 신하가 있는 것은 사우(師友)의 역할을 위해서다. 노비에게서 구할 것은 심부름이고, 사우에게서 구할 것은 도덕이다. 그러므로 노비는 (자신의 주인이)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엿보아 알아차릴 줄 알아야 현명하다. 사우이면서 (자신의 군주가)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데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첨이다. 사우는 과실을 바로잡아야 현명한 것이다. 노비이면서 과실을 과실이라고 한다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閻宦」)

(q5.1.2) 대체 환관은 내신(內臣)으로 여기고 사대부는 외신(外臣)으로 여긴다. 환관은 노비의 도리로 군주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 군주가 망령되어 기뻐하고 망령되어 노여워하는 것을 외신이 거스르면, 환관은 “신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찌 불경(不敬)할 수 있으리오”라고 말한다. 군주 또한 노비의 도리를 신하의 도리라 생각하고, 그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환관에게 행하면 받아주고 사대부에게 행하면 받아주지 않으면,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데, 어찌 공경과 불경이 있겠는가! 생각건대 내신은 나를 사랑하고 외신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한다. 이에 천하의 신하된 자들이 군주가 (신하의) 현명함 여부를 보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사우의 도리를 버리고 노비와 같은 태도 일변도로 나간다. 이런 습관이 오래되면 어리석은 선비는 큰 뜻에 통하지 못하고, 또한 [군주

의 뜻에] 따라 견강부회하며 군주는 하늘이라고 말한다.(「閻宦」)

(e5.1.3) 황종희에 따르면, 신하와 환관의 차이는 한 마디로 사우(師友)와 노비의 차이이다. 그 역할로 말하면 스승과 벗[師友]은 도덕적 차원에서 군주에 대한 교도와 비판을 수행하는 데 비해, 노비는 심부름을 할 때 때문이다. 따라서 환관은 군주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받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만, 신하가 군주의 뜻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것은 현명함이 아니라 아첨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군주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여 바로 잡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지만, 노비가 군주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관과 신하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군주는 자신의 뜻을 충실히 떠받드는 환관을 내신(內臣)이라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하로 여기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뜻을 무조건 떠받들지는 않는 사대부는 외신(外臣)이라 부르면서 그들은 군주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 황종희에 의하면, 천하의 신하된 자들이 군주의 뜻에 영합하고 군주의 뜻을 받들기에 급급하여 군주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도 신하와 환관의 차이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 5.2 명대 환관의 폐해

(q5.2.1) 환관의 화는 한·당·송 이래로 그치지 않았지만, 명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한·당·송 대에는 조정의 정치에 간여한 환관은 있었지만, 환관을 봉행한 조정의 정치는 없었다. 오늘날 재상과 육부는 조정의 정치가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나 본장(本章)의 비답(批答)은 먼저 입으로 전하고 나중에 표의(票擬)가 있었다. 천하의 재정은 먼저 궁궐 내의 재정을 채우고 그 다음에 태창(太倉)을 채웠다. 천하의 형벌은 먼저 동창(東廠)이 처리하고 그 뒤 사법기관이 맡았다. 그밖의 것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곧 재상과 육부가 환관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원일 뿐이었다.(「閻宦」)

(q5.2.2) 한·당·송의 환관은 군주의 혼미함을 이용한 다음에야 뜻을 이

를 수 있었다. 명나라에서는 법과 형국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의종과 같은 명철한 군주가 처음 그것을 의심하였다. 결국 그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에 임박해서도 조정의 신하와 한 번 만나지 못하였다. 이처럼 그 화가 심한 경우는 없었다.(「閻宦」)

(e5.2.3) 명대 정치체제의 특징은 군권(君權)의 절대화와 신권(臣權)의 분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상제의 폐지로 인하여 군주와 신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환관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릴 여지가 확대되었거나, 영락제가 내서당(內書堂)을 설치한 이후에는 아예 제도적으로 환관이 정치에 간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황종희에 의하면, 한·당·송 대에도 환관의 폐해가 없지 않았지만 명대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내각 대학사의 표의제와 맞물려 조정이 환관을 떠받드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이전에는 환관이 군주의 혼미함을 이용하여 정치에 간여할 수 있었지만, 명대에는 제도와 형국 자체가 환관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보장하였다. 황종희에 따르면 명대에는 환관이 바로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5.3 환관의 발호 원인

(q5.3.1) 환관이 독약이나 맹수와 같다는 것은 수천 년 아래로 사람들 이 모두 알고 있는 바다. 마침내 [그들에 의해] 간이 찢기고 목이 잘리게 된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어찌 법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겠는가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군주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 군주가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것은 원래 부득이해서이다. 그래서 허유와 무광 같은 사람은 실제로 천하를 질곡같이 생각하여 필을 흔들며 그것을 거절하였다. 어찌 후세의 군주는 천하를 오락의 도구로 생각하고 다스리는가? 궁실을 크고 높게 하고 자신이 총애하는 여자들로 채우고 그런 여자들이 많아지자 환관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키게 하였다. 이것이 서로 원인이 되는 상황이다.(「閻宦」)

(q5.3.2) 군주가 천하를 자기 집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되

어 있는 것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궁궐을 경비하는 군대의 강성함을 자기가 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왕조 말기의 일이다. 오늘날에는 의복·음식·마필·무기·예약·재물·조작하는 것을 금성(禁城) 몇 리 이내에서 취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밖으로 설치한 각 아문과 제공하는 재정도 마침내 그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시끄럽게 다룬다. 군주의 천하를 금성 몇 리 이내로 한정한 것은 모두 환관이 한 것이다.(「閻宦」)

(e5.3.3) 황종희에 따르면, 수천년 동안 환관의 폐해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환관이 발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주의 욕심 때문이다. 군주가 화려한 궁궐을 짓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자면 그 관리를 위해 많은 환관이 필요하게 된다. 군주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천하를 단지 오락의 도구로 보기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주가 천하를 자신의 사유물로 보기 때문이다. 환관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 편승해서 발호하여 그것을 부채질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황종희가 환관의 발호 원인을 군주 개인의 욕심 많음에서 찾는 것은 극히 관념적인 듯하다. 그러나 근저에 천하를 사유물로 보는 관점 및 신하와 노비의 본분과 도리에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있다.

#### 5.4 환관의 축소 방안

(q5.4.1) 후세의 군주에게 무엇을 책망하겠는가? 정현이 주석한 『주례』에 “여어(女御)는 81명이 9일 동안 밤을 맡고, 세부(世婦)는 27명이 3일 동안 밤을 맡고, 구빈(九嬪)은 9명이 하룻밤을 맡고, 삼부인(三夫人)은 하룻밤을 책임지고, 후(后)는 하룻밤을 맡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과거의 어진 군주와 후세의 군주가 다르지 않다. 이런 『주례』는 음란을 가르치는 책이다. 맹자가 말했다. “시침 수백 사람의 일은 내가 뜻을 얻더라도 행하지 않겠다.” 이 때 제(齊)-양(梁)-진(秦)-초(楚)나라의 군주는 모두 사치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였는데, 동주·서주 시대에는 또한 이런 일이 없었다. 만일 주공의 유제(遺制)라면 맹자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진실로 그렇다고 했을 것이다, 뜻을 얻어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공

의 잘못이라고 여겼다. 만일 정현의 말대로라면 왕의 비는 120명이고, 비의 아래 또한 시종이 있으니, 환관으로 그들을 지키는 자는 필연적으로 수천 명에 달할 것이다.(「閨宦」)

(q5.4.2) 내 생각에 군주는 삼궁(三宮：皇帝·太后·皇后) 이외에는 일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심부름하는 환관은 불과 수십 명이면 족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군주의 자손이 번창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다. 천하에 어찌 그러한 경우가 있겠는가? 내가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자손에게서라! 훗날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그 자손에서 나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세상의 돈 많은 늙은이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요순은 자식이 있어도 오히려 천하를 전하지 않았다. 송나라 휘종(徽宗, 1101~1125)은 일찍이 자식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단지 금나라 사람들에게 잡혀 죽었을 따름이다.(「閨宦」)

(e5.4.3) 문제의 해결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황종희는 환관의 발호 원인으로 신하와 노비의 차이 및 군주의 욕심을 들고 있다. 전자는 신하가 군주의 스승과 벗[師友]으로서 도덕적 차원에서 군주에 대한 교도와 비판을 수행하는 존재인 데 반해 환관은 군주의 뜻을 떠받들어 심부름을 하는 군주의 노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한다. 신하와 환관의 차이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는 환관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로 나아갈 수도 있을 터인데,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에 그런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군주의 욕심 많음에 대한 해결방안은 당연히 군주의 절검이다. 우선 궁궐을 줄이면 심부름하는 환관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군주의 여자(후궁)를 줄이면 역시 시중드는 환관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역대로 군주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많은 자손을 두기 위한 것인데, 정치를 잘못하여 반란이 일어나면 다 죽게 되므로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 황종희에 의하면 오직 선정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e5.4.4) 군주에게 많은 여자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황종희는 『주례』(周禮)를 비판하고 있다. 『주례』에 따른다면 왕의 여자는 120명에 달하게 되며, 그래서 맹자도 비판하였다고 한다. 『주례』에 따르면 황제는 후

(后)·부인(夫人)·여어(女御)·여관(女官) 등 여러 부류의 여자를 거느린다. 후(后)는 황제의 정처(正妻)이고, 부인(夫人)은 군주의 첩이며, 여어(女御)는 궁중에서 왕을 모시는 여관(女官)이고 세부(世婦)는 비빈(妃嬪)에 해당하는 여관이며 구빈(九嬪)은 주대에 천자를 모시던 아홉 명의 여관이다. 주지하다시피 『주례』는 주대(周代)의 관제를 기록한 책으로서 주관(周官)이라고도 하며, 『의례』(儀禮)·『예기』(禮記)와 합쳐 삼례(三禮)라 불린다. 『주례』는 관청의 직제를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으로 나누고 각 관 아래에 아래 다시 속관을 분속시켰다. 중국 역대의 관제는 이것을 규범으로 삼은 것이 많다. 『주례』가 국가운영의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의례』는 주대의 종교적 정치적 의례를 비롯하여 관혼상제 등 사회적 의례까지를 수록하였으나, 예의 의미로부터 철학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어 송대 이후 성리학자들에 의해 중시되어 왔다. 『의례』에는 특히 사대부 관료의 도덕적 이념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어서, 국가의 직관체제와 직무를 상세히 규정한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주례』와 비교된다. 『예기』는 책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기는 경의 뜻을 해설하고 보충하는 성격을 지닌다) 『의례』 등의 예경(禮經)을 보충 설명하는 책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한때까지는 『예기』가 주로 『의례』를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보조자료로 인식되고 활용되었다고 한다.(鄭玄·賈公彥注疏, 吳江原譯註, 『儀禮 - 고대 사회의 이상과 질서[1]』, 서울 : 청계출판사, 2000, 77-78면) 이 점에서 황종희가 비록 황제의 여자들에 관한 내용에 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례』에 대해 비판적인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통적인 유교적 민본 위민의 이념을 제도적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황종희가 제도적 측면 못지 않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유교적 이념을 배양한 사인으로 하여금 국가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서리의 역할을 제한하고 사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든지 군사제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무인의 역할을 제한하고 병사를 지휘하는 장군에는 사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관리의 선발과 임용

(e6.1) 관리의 선발과 임용에서 황종희가 제시하는 원칙은 선발의 관대함과 임용의 엄격함이다. 선발의 관대함은 널리 뛰어난 인재를 구하려는 것이고, 임용의 엄격함은 요행으로 요직에 임용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관리의 선발에서는 역대로 과거제가 주된 방법이었으나, 과거제의 폐단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황종희도 역대의 과거제 시행 실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후대의 과거제가 용렬한 무리가 천하에 가득 차게 하였다고 그 폐단을 냉혹하게 지적하면서,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해도 과거제보다 나을 것이라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과거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제를 시행하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황종희는 기본적으로 주희(朱熹)가 「학교공거사의」(學校貢舉私議)에서 제시한 견해에 따라 과거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과거제 역시 관대한 선발과 엄격한 임용이라는 원칙 아래, 1차에서는 경전을 시험 치르고, 2차에서는 성리학과 제자서를 시험하며, 3차에서는 역사서에 관한 시험을 치르고, 4차에서는 시무책에 답하게 하자고 한다. 또한 당시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과거를 통하지 않으면 관직에 진출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과거제 이외의 다양한 관리 선발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역대에 과거제의 보완책 내지 대안들로 제시된 발공·보거·준공·적분·환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발의 관대함과 임용의 엄격함이라는 원칙 하에서 천거·태학·임자·군읍좌·벽소·절학·상서 등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사제자원의 시험과 임용에서 시작하여 천거의 방법과 천거인의 활용, 태학에의 진학과 태학생의 성적 평가 및 그 사후 처리, 임자(고위 관료 자제의 우대)와 그 처리, 육조에서 우수한 제자원을 기용하여 능력이 뛰어난 자를 임명하는 일종의 인턴제인 군읍좌(혹은 군현좌), 중앙와 지방의 관청의 장이 임시직으로 기용하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위에 보고하고 임용하는 벽소, 전문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조정에 상신하는 절학, 그리고 재야의 건의 및 저술에 대한 대우와 처벌이 그것이다.

## 6.1 관리 선발의 관대함

(q6.1.1) 옛날 관리의 선발은 관대하였으나, 임용은 엄격하였다. 오늘 날 관리의 선발은 엄격하지만 임용은 관대하다. 옛날에는 향리에서 선발 하였기 때문에 어질고 능력 있는 선비를 몰라보는 걱정을 하지 않았다. 시대가 훌러 당송시대에는 그 과목이 하나가 아니어서 선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으면 뜻을 바꾸어 저기에 종사하였다. 이것이 관리 선발의 관대함이다.(「取土」)

(q6.1.2)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선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다만 과거시험 한 가지뿐이어서 옛날의 굴원·사마천·사마상여·동중서·양옹과 같은 호탕하고 결출한 선비도 이 방법이 아니면 관직에 나갈 수 없으니, (선발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아침에 진실로 급제하면 위로는 시종의 반열에 들고, 낮아도 균현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떨어져서 향공이 되어도 종신토록 해시를 거치지 않고 관직을 주었으니, 임용하는 것이 얼마나 관대한가! 선발에 엄격하면, 호탕하고 결출한 사람이 산간벽지에서 늙어죽는 자가 많다. 임용에 관대하면, 이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적절한 인재를 얻지 못함이 많다는 것이다.(「取土」)

(q6.1.3) 세속 사람들은 한갓 200년 아래 공명·기절이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두 명 나온 것만을 보고, 마침내 과거제가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제 속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았으니, 공명·기절의 선비가 유독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곧 이것은 공명·기절의 선비가 과거시험에 합격한 것이지, 과거시험에 공명·기절의 선비를 뽑은 것은 아니다. 가령 선비들이 제비를 뽑게 하여 그 장단을 가려 선발해도 이를 수백년 동안 시행하면 공명·기절의 선비도 저절로 그 제비 뽑는 속에 나오는 것이다. 어찌 제비뽑기를 관리선발의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공명·기절의 인물은 한당대에 멀리 미치지 못하며, 한갓 용렬하고 망령된 무리들로 하여금 천하에 가득 차게 하였다. 어찌 하늘이 인재를 낳지 않겠는가? 곧 그를 선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取土」)

(e6.1.4) 황종희는 관리의 선발과 임용에서 선발의 관대함과 임용의 엄격함을 두 원칙으로 제시하고, 당시에는 반대로 선발에서는 엄격하고 임용에서는 관대하다고 비판하였다. 선발의 관대함은 널리 뛰어난 인재

를 구하려는 발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황종희에 의하면, 옛날에는 작은 단위의 향리에서 관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가 발탁되지 않고 재야에 묻혀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오직 과거제 한 가지 뿐이어서, 결출한 인재도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발탁될 수 없어서 산간벽지에서 늙어죽게 된다. 황종희는 과거제를 통해 더러 훌륭한 인재가 선발되기도 하지만, 제비뽑기를 해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한 마디로 훌륭한 인재가 과거에 합격한 것일 뿐이지, 과거제가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바로 선발의 엄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송대에 군주 좌우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시종관(侍從官)이라 하였으나, 후에는 중앙관직의 육부상서·시랑으로부터 학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종이라 통칭하였다.

## 6.2 관리 임용의 엄격함

(q6.2.1) 『예기』 「왕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사(덕과 재능이 남다른 선비)를 논정하여 그를 사도로 추천하는데, 이를 선사(선발된 선비)라 한다. 사도는 선사하면서 뛰어난 선비를 논정하여 국학에 추천하는데, 이것을 준사(준수한 선비)라 한다.” “대악정이 조사(선사준사) 가운데 우수한 자를 논정하여 사마에 추천하는데, 이를 진사라고 한다. 사마가 진사 가운데 현명한 자를 논정하여 왕에게 고하고 논의를 결정한다. 논의가 결정된 후 관직을 주고 관직에 임명한 후 작위를 주고 작위가 결정된 후 녹을 준다.” 한 사람이 관직에 오르기 전에 네 번 관문을 경유하며, 관직에 오른 후에는 세 번 관문을 경유하니, 모두 일곱 번 관문을 경유해야 만 비로소 녹을 주었다.(「取土」)

(q6.2.2) 당나라의 선비들은 과거제에 급제한 자라도 곧바로 평복을 벗고 관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들어가 또다시 시험을 보았다. 한퇴지는 세 번씩이나 시험을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벼슬을 없이 지냈다. 송대에는 급제해서 관리로 임명되어도 부위·영록의 지위가 낮은 관직에 머물렀고, 과거시험에서 1등을 한 자가 겨우 승·판에 올랐는데, 이

는 임용이 엄격했다는 것이다. 선발하는 데 관대하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임용하는 데 엄격하면 요행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자가 적다.(「取土」)

(e6.2.3) 황종희가 제시한 관리의 선발에서 엄격함이라는 원칙은 한마디로 요행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는 『예기』 「왕제」에서 뛰어난 선비가 추천되어 관직에 임용되기까지 모두 일곱 단계를 거칠 정도로 엄격하였다는 점을 들어 관리 임용의 엄격함이라는 원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 당대(唐代)에 과거에 합격하고서도 이부(吏部)에 들어가 다시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에서 역시 임용의 엄격함이라는 원칙을 확인한다. 당대에는 과거가 일종의 자격시험에 불과하여, 이부에서 과거에 합격한 이들을 다시 신(身)·언(言)·서(書)·판(判)을 기준으로 시험하여 임용하였다. 송대에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도 매우 낮은 관리로 임명되었는데, 이 역시 임용의 엄격함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송대의 관직에서 영(令)은 지방 행정구역인 현의 장이고, 그 아래 서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주부(主簿)이며, 그 아래 형옥(刑獄)을 담당하는 사람이 위(尉)이다. 현보다 상급인 주(州)에서 서무를 총괄하는 관직이 록(錄, 즉 錄事參軍)이다. 승(丞)은 승사(丞史)로서 진한대 중앙관 및 지방관의 보좌관이다. 판(判)은 통판(通判)이라고도 하는데, 당대에는 절도사의 막료, 송대에는 주(州)·부(府)의 보좌관, 그리고 명대에는 주(州)에 설치되어 직위가 점차 가벼워졌다.

### 6.3 과거제의 대안의 문제점

(q6.3.1) 관리 선발의 폐단은 오늘날의 과거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그래서 명대에 의종은 일찍이 이를 걱정하여 발공·보거·준공·특수·적분·환수를 설치하여 과거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를 선발하려고 하였다. 발공의 시험은 여전히 경전해석의 방법을 썼으며,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제학에게 시험의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향시보다 쉬웠다. 보거의 제도는 명성에 의거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

거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추세에 뇌물과 청탁이 섞이지 않을 수 없다. 위임장을 갖고 오면 일부는 간단한 유가 경전의 대의와 해석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향시보다 더욱 쉽다. 준공은 향시의 부방이고, 특수는 회시의 부방을 임용하는 것이다. 부방은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이다. 탈락자를 이처럼 중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합격한 사람들을 대접할 것인가? 적분은 자랑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근원을 막게 할 수 없다. 환수는 종실을 우대하는 것으로, 교육을 미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 여섯 가지는 모두 경의(經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과거의 합격자보다 나은 사람을 얻으려는 것인데, 도리어 상세한 과목을 갖춘 과거의 합격자보다 못하다. 따라서 쓸데없이 분란만 일으키고 시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관리 선발을 관대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과거·천거·태학·임자·군읍·좌·벽소·절학·상서가 그것인데, 관리를 임용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다.(「取土」)

(e6.3.2) 관리의 선발에서 과거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황종희는 한편으로는 역대에 그 대안 내지 보완책으로 제시된 방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공(拔貢)은 관리 선발의 한 방법으로, 명대에는 선공(選貢)이라 하였다. 12년마다 각 성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정시(廷試)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자를 관리로 임명하는 방법이다. 황종희는 경전의 해석을 시험하는 이 발공이 시험을 중앙에서 관장하지 않고 제학에게 맡김으로써 난이도의 형평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거(保舉)는 대신들의 추천으로 조정에서 임용하는 제도인데, 추천되는 사람들의 명성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더욱이 추천하는 대신들에게 뇌물과 청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준공(准貢)은 향시에서 탈락한 사람을 보결로 합격시키는 예비 합격 후보자이고(이렇게 보결로 합격한 사람이 부방(副榜)이다), 특수(特授)는 회시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관례를 초월하여 특별히 관직을 제수하는 것인데, 황종희는 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을 그와 같이 임용한다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분(積分)은 명대에 국자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임용하는 제도다. 학생의 시험 결과를 매번 1분·반분으로 평점하였는데, 1년에 8분이 넘으면 임용되었

다. 적분의 경우는 돈으로 관직을 사는 사람, 곧 자랑(賛郎)의 문제가 있으며, 환수(換授)는 종실을 우대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배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결국 황종희는 과거만으로는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의 보완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들어 비판하고, 천거(薦舉)·태학(太學)·임자(任子)·군읍좌(郡邑佐) 혹은 郡縣佐·벽소(辟召)·절학(絕學)·상서(上書) 등 다양한 관리 선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6.4 과거제의 시행 방안

(q6.4.1) 당나라는 진사시에서 시와 부, 명경시에서 묵의를 시험하였다. 이른바 묵의라는 것은 각각의 경마다 뜻을 묻는 것으로 열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다섯 문제는 소를 완전하게 베끼는 일이고, 다섯 문제는 주를 완전하게 베끼는 일이었다. 송나라 초기 관리 선발 시험은 시·부·논이 각 한 수, 책은 다섯 문제, 청은 『논어』에서 열 문제, 첨대는 『춘추』 혹은 『예기』에서 묵의 열 문제였다. 『구경』 『오경』 『삼전』 『학구』 등도 과목의 설치는 다르지만 그 묵의는 같았다. 왕안석(王安石)은 법을 개혁하여 시·부·첨경·묵의를 없애고 중서성에서 (경서에 관한) 「대의식」(大義式)을 편찬하여 반포하고, 반드시 경서에 통달하고 문장이 뛰어나야 합격시켰기 때문에 명경·묵의·조해장구와는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왕안석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당의 류면(柳冕)이 “육경의 뜻에 밝고 선왕의 도에 부합하는 자는 상등으로 하고, 주석에 정통한 자는 하등으로 한다”고 한 논의가 있었다. 권덕여(權德輿, 757-818)가 반박하며, “주소는 오히려 실질적인 것으로 시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정실에 따라 위아래로 손을 쓰게 되어 그 결과가 어그러질 뿐 아니라 그 근본도 얻을 수 없으니, 곧 허무해지고 만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 송기(宋祁, 998-1061)와 왕珪(王珪, 1019-1085)가 “대의만 묻고, 암송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상주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왕안석에 이르러 비로소 결행되었다.(「取土」)

(q6.4.2) 과거제는 주희(朱熹)의 의견을 본떠서 시행한다. 제1차 시험에서는 『역』·『시』·『서』를 한 과목으로 해서 자오년에 시험보고, 삼례(『주례』·『의례』·『예기』)와 『대대』를 함께 한 과목으로 해서 묘년에 시험보고, 삼전(『춘추좌씨전』·『공양전』·『곡양전』)을 한 과목으로 해서 유년에 시험본다. 뜻을 묻는 문제는 각기 두 문제, 모든 경은 다 사서의 뜻을 묻는 것을 한 문제씩 포함시킨다. 뜻을 쓰는 자는 먼저 주소와 후대 학자들의 설명을 조목별로 열거하고 그것을 갖추고 난 뒤에 ‘내가 생각하기에는’으로 결론을 맺는다. 여러 가지 설명을 열거하지 않거나 혹은 열거했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마침내 자기의 의견으로 들어간 자는 (뜻이) 통해도 불합격이다. 시험 관리관은 (원전의) 장구에 의존하지 않고 문장을 읊기고 배합하여 문제를 명하는 자가 있거나 상례와 복제를 기피하여 (이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죄를 준다. 제2차 시험에서는 주렴계·이정·장횡거·주희·육상산 등 여섯 학자에 대한 것을 한 과목, 『순자병법』·『오기』를 한 과목, 『순자』·동중서·양옹·『문중자』를 한 과목, 『관자』·『한비자』·『노자』·『장자』를 한 과목으로 하는데, 연도를 나누어 각기 한 문제를 시험한다. 제3차 시험에서는 『좌전』·『국어』·『삼사』(『사기』·『한서』·『후한서』)를 한 과목으로, 『삼국지』·『진서』·『남북사』를 한 과목으로, 『신구당서』·『오대사』를 한 과목으로, 『송사』·『명실록』을 한 과목으로 하는데, 연도를 나누어 사론에서 각각 두 문제를 시험한다. 답안을 작성하는 자는 또한 반드시 사실을 뽑아서 시비를 판별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상세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실을 끌어들여 본래 사실을 오히려 소략하게 한 것은 모두 불합격 처리한다. 제4차 시험에서는 시무책 세 문제를 시험한다.(「取土」)

(q6.4.3) 그러므로 시문이라는 것은 첨경·묵의의 아류다. 지금의 폐단은 당시 권덕여가 이미 다 말하였다. 만일 그대로 답습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서로를 본받아 날로 경박해지고, 인재는 결국 진작시킬 때가 없을 것이다. 만약 경의를 폐지하면 마침내 경전을 버리고 배우지 않는 학생도 있어서 선왕의 도는 더욱 더 우원해지고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묵의의 옛 법을 부흥시켜야 하며, 경의를 하는 자로 하여금 주소·대전과 한·송의 여러 학자들의 설을 완전히 베껴서 하나하나 조목을 앞에 열거한 뒤에 자기의 의견을 밀하게 하며, 또한 반드시 한 선생의 말을 묵수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전자에 의하면 공소한 것을 없애고 후자에 의하면 우매한 것을 물리쳐 또한 경박한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取土」)

(q6.4.4) 어떤 사람은 “암송하는 것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므로 당나라 시절에는 명경을 천하게 여겼는데, 어찌 다시 그 천한 것을 귀하다고 하겠는가?”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시문은 암송하지 않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가? 모두 하나같이 암송하는 것이다. 선유의 대의의 학문이 남의 말이나 옛날의 글자와 표현을 부질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것을 따르면 천하의 선비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천하의 선비가 공평하고 실질적인 데로 나아가게 되고 경학에 통하고 옛 것을 배우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다. 옛날의 시·부도 어찌 선비를 얻는 데 충분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연구하고 사색하면서 소리를 지나치게 다듬었기 때문에, 시문과 같이 공소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取土」)

(e6.4.5) 황종희는 먼저 역대의 과거제를 살펴본 다음에 적절한 시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당대에는 크게 진사과와 명경과라는 두 부류가 있었다. 각종 유가경전을 시험치는 명경과는 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첨경(貼經)과 묵의(墨義)로 구분된다. 첨경이란 시험관이 경전 중에서 임의로 한 단락을 선택하여 여러 글자 또는 여러 구절을 가리고 응시자로 하여금 빈 곳을 채우게 하는 방법이다. 매 10첩 중 여섯 개 이상 맞추면 합격이다. 묵의는 필답시험인데, 시험관이 경전에 의거해 문제를 출제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그 해당되는 경문에 대한 전대 사람의 주소(注疏) 혹은 상하의 문장을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첨경과 묵의의 방법은 단지 수험생들의 경전에 대한 암기력만 측정하는 것으로, 정신과 의리에 대한 이해는 상관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개인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종(玄宗) 개원 25년(737) 명경과에 시무책을 첨가하여, 시험관이 시험장에서 ‘시무책’에 대한 책문을 출제하여 수험생이 서면으로 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종 개원 연간에 명경과가 첨경·묵의·시무책으로 정형화되고, 급제자는 성적에 의해 갑·을·병·정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명경과를 통한 관리 선발이 가장 많았고 명경과가 입사의 중요한 방법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진사과였다. 진사과에도 첨경·책문·잡문의 세 과목이 있었다. 첨경은 명경과와 같고, 일반적으로 10문제에서 4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였으므로 난이도가 명경과보다 낮았다. 책문은 독서인들로 하여금 오래된 책 더미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에 해결방법(시무책)을 제안하게 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시행이 오래되자 제목이 낡은 틀에 얹매여 개진되는 바가 없었고 진정으로 첨예하고 복잡한 사회모순의 문제는 봉건사회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아직 정치경험이 적은 수험생들로서는 단지 제목에 맞춰 공허한 말만 늘어놓아 천편일률적인 논의만 있었다. 진사과에서 최고의 관건은 잡문 두 수의 시험이어서, 조광(趙匡)이 과거에서 채점의 핵심은 시부(詩賦)의 우열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대 사람들은 진사과를 일러 사과(詞科)라 하였으며, 후인들이 당대는 시부로 인재를 뽑았다고 하였다.

(e6.4.6) 송대 이후에는 여러 과목의 이름을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진사과만을 남겨두었다. 진사는 예부에서 수여한 자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관리로 임관되려면 별도로 이부(吏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인 전시(詮試)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공거 뒤에 황제가 직접 보는 전시(殿試)가 부가되었기 때문에, 이부에서 시행하는 전시는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나중에 왕안석이 시부·첨경·목의를 폐지하고 경의(經義)로써 관리를 선발하는 규칙 조례인 「대의식」(大義式)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미 경의를 중심으로 하자는 류면의 논의와 권덕여의 반박을 거쳐 송기와 왕규 등의 견의가 있었다. 황종희는 왕안석의 방안을 계승하면서 기본적으로 주희(朱熹)가 제시한 견해에 의거하여 과거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황종희가 말하는 과거제에 관한 주희의 의견은 「학교공거사의」(學校貢舉私議)에 제시된 것을 가리킨다. 황종희는 관리의 선발에서의 관대와 임용에서의 엄격함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네 차례의 과거 시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차는 유교 경전을 시험하는 것이며, 2차는 송대의 성리학과 제자백가의 서적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3차는 역사서를 시험치는 것이고, 4차는 시무책으로서 시무

(時務)에 관한 일종의 논술시험이다. 여기서 핵심은 목의의 부활과 경의의 시행인데, 선왕의 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경의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목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부(詩賦)의 시행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문(時文)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흥내를 낼 수 있는 폐단이 있는 반면에 시부는 연구와 사색을 통해 글을 다듬어내는 것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인재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대전’은 『오경대전』(五經大全)을 가리킨다. 『오경대전』은 명대에 반포한 관서로서, 호광(胡廣, 1370-1418) 등이 성조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하여 당시 과거의 기본교재로 삼았다.

## 6.5 과거제의 보완책

(q6.5.1) 박사제자원은 4년 이후 중추를 당하면 행성에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인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합격하면 모두 통과시킨다. 시험 관리는 유명한 선비를 초청하는데, 재야학자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상관 없으며, 제학이 주관하게 한다. 다음해의 회시는 경학·제자·사학 등의 과목을 시험보는데, 향위(鄉閭)에 따라 연도를 나누어 예부상서가 시험을 맡아서 주관한다. 과거 급제자는 재상의 판단에 맡기는데, 육부 각 부서에 배치하여 관리로 삼고 실무를 관찰시킨다. 그 (가운데)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옛날 시중의 직책을 본떠서 천자의 좌우에서 일하게 하며, 세 번의 시험으로 다시 관리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 이후 군현의 관리로 내보낸다. 또 그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각 부의 주사로 삼고, 낙제한 자는 물리쳐서 제자원으로 삼는데, 다시 해시를 통한 이후에 예위(禮闈)에 들어올 수 있다.(「取士」)

(q6.5.2) 천거의 법은 매년 각 군에서 사람을 천거하여 대조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여 재상이 국가의 의심나는 일을 (그에게) 묻고 그 대답하는 것을 보고서 조정의 신하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토론하게 한다. 마치 한나라의 현량문학이 염철을 문제로 제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설에 조리를 붙일 수 있는 자는 재능을 헤아려 관직을 주고, 혹은 임시로 일을 맡기어 그 드러난 효과를 본 이후 관직을 준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것을 그대로 흥내내어 남을 속인다면, 천거한 자는 죄를 주고 그

사람에게 과면을 통보한다. 만일 도덕적 성품이 오여필(吳與弼).진현장(陳獻章)과 같다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우대하며, 천거한 자는 높은 상을 준다.(「取土」)

(q6.5.3) 태학의 법은 주와 현의 학교에서는 매년 제자원에서 학문 성취가 있는 자를 그 재능과 덕예를 열거해서 올리는데 인원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람이 없으면 그만둔다. 태학은 그들을 받아서 시험을 치려 그 재능과 덕예가 올린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는 본래의 학생에게 과면을 통보한다. 무릇 선비의 자제로 태학에 재학하는 사람은 장기간 동안 누차 시험을 보고 세 등급으로 나눈다. 상등은 급제자와 같이 대우하고, 재상이 그를 분류해서 시중의 관직을 준다. 중등은 해시를 통하지 않고 마침내 예위(禮闈)에 들게 한다. 하등은 과면하여 귀향시킨다.(「取土」)

(q6.5.4) 임자의 법은 6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 15세가 되면 모두 주현의 학교에 입학하여 박사제자원에 보하고, 15년을 교육해도 성과가 없으면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 3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 15세가 되면 모두 태학에 입학시키는데, 15년을 교육해도 성과가 없으면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 오늘날에는 대부의 아들이 일반 서민의 아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는데, 제학이 청탁을 받았으면 이는 처음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바르게 한 것이 아니며,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훌륭한 문중의 자제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경의 아들일지라도 현명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관직을 주면 현명한 자를 정당한 도리에 의해 임관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현명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백성들 위에 있게 하는 것이니, 백성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取土」)

(q6.5.5) 군현좌의 법은 군현이 각기 육조를 설치하고 제학이 제자원의 우수한 자를 시험하여 그들을 분치시킨다. 예컨대 호조는 부세의 출납을 담당하고, 예조는 제사향음주상하길흉을 주관하고, 병조는 백성들이 감당하는 병사수성·치안을 맡고, 공조는 군읍의 건설사업을 주관하고, 형조는 재판업무를 맡고, 이조는 각 조의 인사이동과 봉급 문제를 책임진다. 세 번의 시험이 끝나면 태학에 추천하고, 재능이 현저히 우수한 자는 육부의 각 관청에 관리로 임명한다. 늄생(廩生)은 모두 폐지한다. (「取土」)

(q6.5.6) 벽소의 법은 재상·육부·방진 및 각 성의 순무가 모두 자기 스스로 관리를 초빙해서 직무를 주어 시험하는 것으로, 옛날의 섭관(攝官)과 같다. 그 능력이 현저하게 드러난 뒤에 위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임용 한다.(「取土」)

(q6.5.7) 절학(絕學)은 역산(曆算).악률(樂律).측망(測望, 천문관측).점후(占候).화기(火器).수리(水利)와 같은 부류다. 군현은 조정에 상신하고, 정부는 그 사람이 과연 발명한 것이 있는지 시험하여 [적합하면] 대조로 부리고, 적합하지 않으면 물려가게 한다.(「取土」)

(q6.5.8) 상서(上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에 큰 일이 있거나 간악한 일이 있을 때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재야에 있는 자가 말하는 것으로, 마치 당나라의 유분(劉蕡)과 송나라의 진량(陳亮) 같은 이가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간관의 직무를 주어야 한다. 사람을 부추겨서 그로 인해 조정을 혼란하게 하는 자는, 예컨대 동한의 뇌수가 당인을 고소·체포하게 한 것처럼,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책을 저술한 것을 올려서 열람하게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옮겨 그 책을 자세히 보고, 세상에 전할 것은 과거 급제자와 같은 신분으로 대우한다. 만일 그 책이 발명하는 것이 없고 옛날 책의 내용을 모아서 편찬하고 또 시비판단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가령 오늘날 조환광(趙宦光)의 『설문장전』(說文長箋)과 유진(劉振)의 『지대편』(識大編)과 같은 부류이면 부질이 비록 많아도 그 책을 물리쳐 돌려보낸다.(「取土」)

(e6.5.9) 황종희는 과거제만으로는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기존의 보완책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들어 비판하고, 박사제자원(博士弟子員)의 임용을 비롯하여 천거(薦舉).태학(太學).임자(任子).군읍좌(郡邑佐 혹은 郡縣佐).벽소(辟召).절학(絕學).상서(上書) 등 다양한 선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박사제자원은 한대(漢代)에 박사가 교육하는 학생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은 관리로 임용하였다. 황종희는 이 제도를 부활시켜 과거제의 한계를 보완하자고 주장한다. 천거는 각 지방에서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인데, 추천받은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들여 국사의 논의에 참여시켜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식으로 임용하고 추천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무능한 경우에는 과면시킬 뿐 아니라 추천한 사람도 처벌한다. 주(州)와 현(縣)의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하면 시험을 치러 태학에 진학시키고, 태학에서는 또 오랜 기간의 시험을 통해 성적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상

등은 관리로 임용하고 중등은 곧장 진사시험을 치르게 하며 하등은 귀향 조치 한다. 임자는 관료의 자제를 품계에 따라 우대하는 제도인데, 일반 서민과 다르게 대우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다음에 임용한다. 군현좌의 법은 일종의 인턴제 임용으로서 군현에서 제학으로부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실제 부서에서 근무하게 한 뒤에 아주 우수한 사람은 태학에 추천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관리로 임용하는 방법이다. 벽소의 법은 각 관청의 장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아 기용하는 방법과 임시로 사람을 기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식으로 임용하는 일종의 인턴제 임용이 결합된 방법이다. 각 관청의 장이 일정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황종희의 분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절학은 역법, 산술, 음악, 법률, 천문, 지리, 수리, 기후, 화기(火器)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을 추천받아 조정에서 실제로 시험하여 등용하는 제도이다. 상서는 재야의 건의와 저술에 대해 평가하여 적절하게 대우하거나 처벌하는 것이다.

## 7. 학교

(e7.1) 황종희가 『명이대방록』에서 제시한 국가경영의 청사진 중에서 학교제도는 그 동안 특별히 주목을 받아왔다. 학교는 황종희의 사회정치 사상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분권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군주를 비롯한 각급 관리의 정사를 감시하고 공론을 형성하여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황종희가 구상한 학교제도가 근대의 의회제도에 상응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황종희는 학교의 기능이 단지 선비의 양성에 있지 않으며, 옛날부터 공론을 형성하여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고래로 학교에서 조정의 의식을 행하고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노인을 부양하고 고아를 구휼하는 행사도 개최하고, 군대의 승전 보고와 출정식도 행하였으며, 중요한 제사도 학교에서 지내고 큰 옥사(獄事)가 있으면 관리와 백성을 학교에 불러 모아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한 마디로 국가를 다스리는 각종 중요한 행사와 의식을 다 학교에서 행한 것이다. 그래서 황종희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가 다 학교에서 나온 연후에야 학교의 의미가 비로소 갖춰지게 된다” (「學校」)라고 선언한다.

(e7.2) 공론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군주와 관리의 스승으로서 학교의 교관이 가르치고 정사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하여 국정을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학교는 황종희가 추구하는 분권의 이념이 잘 구현된 장치이다. 학교의 행정과 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교육을 행정에 예속되지 않도록 한 것 역시 분권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여론에 의거하여 학관이 퇴출될 수 있게 한 것은 근대의 국민소환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여론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에 제시된 국가경영의 청사진에는 국민주권의 이념에 기초한 국민자치의 이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유학의 전통적인 민본과 위민의 이념에 기초하여 그것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의회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생겨난 간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황종희가 구상한 학교에 대해 근대의 의회제 운운하는 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황종희의 학교가 지니는 의의를 왜곡하는 것이 크다.

## 7.1 학교의 임무

(q7.1.1) 학교는 선비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옛날의 성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그 의미가 단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가

다 학교에서 나온 연후에야 학교의 의미가 비로소 갖춰지게 된다. 조정 의식, 법령 공포, 노인 부양, 고아 구휼, 승전 보고뿐만 아니라, 대군이 출정하면 군사들을 모으고 큰 옥사가 있으면 관리와 백성을 불러모으고 큰 제사에 시조를 제향하는 것 등을 다 벽옹에서 행하였다. 대개 조정의 큰일에서부터 민간의 세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점차 물들어서 모두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의 관대한 기풍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學校」)

(q7.1.2) 천자가 옳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천자가 그르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니므로, 천자 또한 감히 자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 옳고 그름을 공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한 가지 임무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단지 선비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은 아니다. 삼대 이후에는 천하의 옳고 그름이 하나같이 조정에서 나왔다. 천자가 칭찬하면 모두 죽어서 옳다고 하고, 천자가 나무라면 무리지어 죽어서 그르다고 하였다.(「學校」)

(q7.1.3) 동한 시대에 태학의 학생 3만 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솔직하고 엄정한 논의를 설파하였고, 권력있는 자들을 꺼리지 않고 비판함으로써 공경대신들도 그들의 비판과 논의를 피하였다. 송대의 학생들은 궁궐문 앞에 엎드려 북을 치며 이강을 기용할 것을 청하였다. 삼대의 유풍에는 오직 이런 것들만이 서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당시 조정에 있는 자들이 옳고 그름으로써 시비를 가렸다면, 도적과 간사한 무리들이 매서운 서릿발과 눈보라와도 같은 정기에 무서워 떨었을 것이며, 군주는 편안하게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논자는 그것을 지목하여 쇠퇴한 시대의 일이라고 한다. (나라가) 망한 것은 당인을 체포하고 진동과 구양철을 귀양보냈기 때문이며 바로 학교를 파괴한 결과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도다!(「學校」)

(q7.1.4) 태학의 학장은 당대 최고의 학자를 추천하여 선택하는데, 그 비중은 재상과 같다. 혹 퇴임한 재상이 이것을 맡게 해도 좋다. 매월 초 하루 천자가 태학을 방문할 때에는 재상·육경·강의가 모두 수행한다. 학장은 남쪽을 향해 [앉아] 학문을 강의하며, 천자 또한 학생의 옆에 들어간다. 정치에 결함이 있으면 학장은 진언을 꺼리지 않는다.(「學校」)

(q7.1.5) 군현에서는 초하루와 보름에 지역의 진신(績紳, 관리)과 학생들이 모두 모인다. 학관이 학문을 강의하면 군현의 관리는 제자의 반열에서 서서 북쪽을 향해 재배한다. 선생과 제자가 각각 의심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논란한다. 관청의 일이나 회무처리 관계로 출석하지 않은 자는 처벌한다. 군현의 관리가 정사를 처리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작은 것은 바로잡고 큰 것은 북을 치고 백성들에게 폭로한다. 혹 벽지의 군현에서 유명한 학관을 얻기 어렵고, 군현의 관리의 학행이 뛰어나면, 초하루와 보름의 집회에서 군현의 관리가 남면하여 학문을 강의하여도 괜찮다. 만일 군현의 관리가 짚고 실질적인 학문이 없는데도 망령되어 스스로 나이든 선비들을 누르고 우위에 서려는 자가 있으면, 학자들이 궐기해서 물리친다.(「學校」)

(e7.1.6) 황종희는 학교의 기능이 단지 선비의 양성에 있지 않다고 한다. 고래로 학교에서 조정의 의식을 행하고 법령을 공포하였다. 노인을 부양하고 고아를 구휼하는 행사도 학교에서 행하였다. 군대의 승전 보고 뿐 아니라 대군의 출정식도 학교에서 하였다. 중요한 소송이 있으면 관리와 백성을 학교에 불러 모아서 진행하였고, 중요한 제사도 학교에서 지냈다. 한 마디로 국가를 다스리는 각종 행사와 의식을 다 학교에서 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고대부터 공론을 형성하여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황종희는 한대와 송대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학생들이 국정을 비판하는 것이 삼대의 유풍이며, 송대에 학생들의 그와 같은 역할을 싫어하여 학교를 파괴한 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라고까지 하였다. 나아가 학관은 군주를 비롯한 관리의 스승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태학의 학장은 매월 초하루 천자가 재상과 육경 등을 수행하고 방문할 때 스승으로서 강의할 뿐 아니라 국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리낌 없이 비판할 수 있다. 군현의 학관도 마찬가지로 군현의 관리의 스승으로서 강의를 하고 관리의 정사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 7.2 학교와 서원

(q7.2.1) 관공서의 문서, 1년의 회계, 재정과 관련된 사무, 군사와 재판에 관한 일은 모두 세속의 관리에게 맡겼다. 시대의 풍조와 일반적인

추세를 초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학교에는 당세의 완급을 담당할 만한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말하는 학교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다투고 부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하니, 또한 마침내 조정의 형세와 이익으로 그 본질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재능과 학술이 있는 선비가 왕왕 재야에서 배출되어 애시당초 학교와는 관련이 없으니, 결국 선비를 양성하는 한 가지 임무마저도 상실한 것이다.(「學校」)

(q7.2.2) 이에 학교가 변하여 서원이 되었다. [서원에서] 그르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조정에서는 반드시 옳다고 여겨 칭찬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조정에서는 반드시 그르다고 여겨 나무랐다. 위학의 금지와 서원의 훠손은 조정의 권한으로 서원과 다투어 이기려고 한 것이다. 출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사대부로 하여금 조정을 등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학교가 조정과 관련이 없다가, 나중에는 조정과 학교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선비를 양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선비를 해치는 데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학교라는 이름을 답습하여 설립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學校」)

(e7.2.3) 황종희는 서원의 등장을 학교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과거 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파악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 세속의 관리에게 맡겨지고, 고래로 학교가 공론을 형성하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군주를 비롯한 각급 관리의 정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황종희에 따르면, 학교가 과거 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임무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서원이 등장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조정과 학교가 대립하게 되자 조정의 권력으로서 서원을 누르려는 조치들, 가령 위학(僞學)의 금지와 서원의 훠손이 나타난다. 학교가 변질되어 나타난 서원이 도리어 학문과 선비를 해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당시의 학교(내지 서원)는 그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학교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선비를 양성하고 공론을 형성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국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능에 대한 황종희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를바 ‘위학의 금지’는 남송 영종(1195-1224) 때 한탁주가 정권을 장악하자

주희가 그의 잘못을 탄핵하였는데, 이에 한탁주는 주희의 학문을 위한(僞學)이라 규정하여 금지시키고 주희를 파면한 사건을 가리킨다. 서원의 훠손은 명나라의 희종(1621-1627)이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상소로 도성의 서원은 충신사(忠臣祠)로 바꾸고 나머지 서원을 철폐하라는 명을 내린 일을 말한다.

### 7.3 학관의 임용

(q7.3.1) 태학의 학장은 당대 최고의 학자를 추천하여 선택하는데, 그 비중은 재상과 같다. 혹 퇴임한 재상이 이것을 맡게 해도 좋다. 매월 초 하루 천자가 태학을 방문할 때에는 재상·육경·강의가 모두 수행한다. 학장은 남쪽을 향해 [앉아] 학문을 강의하며, 천자 또한 학생의 옆에 들어간다. 정치에 결함이 있으면 학장은 진언을 거리지 않는다.(「學校」)

(q7.3.2) 군현의 학관은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군현의 공론으로 고명한 선비에게 청하여 그것을 맡게 한다.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재상에서 물러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임무를 맡을 수 있고, 관직을 역임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 학관이 조금이라도 공정한 의론에 저촉되면 학생들이 모두 궐기하여 그를 교체를 요구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학관) 아래 오경 선생이 있고, 병법·역산(曆算).의술[醫].활쏘기에도 각기 선생을 두는데, 모두 학관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다.(「學校」)

(q7.3.3) 명망있는 선비를 택하여 학교 행정 감독관으로 삼는다. 그러나 학관은 감독관에 예속되지 않으며, 그 학문·품행·명성·연배에 따라서 선생과 친구 사이가 된다. 3년마다 학관은 뛰어난 학생을 감독관에게 보내 시험을 거쳐 박사제자로 임명한다. 박사제자를 감독관에게 보내 시험을 거쳐 예부에 보내고 다시 고시관을 파견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방을 붙여 발표하고 평소에 학문과 품행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학관은 감독관에게 자문해서 박사제자에 임명하여 받아들인다. 박사제자의 제명은 학관이 평상시 결정하고 감독관은 간여하지 않는다.(「學校」)

(e7.3.4) 황종희가 당대 최고의 학자뿐만 아니라 퇴임한 재상을 태학의 학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학교의 기능이 단지 선비의 양성에 있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정을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학장에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퇴역 재상을 기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태학의 학장은 한때 박사의 우두머리로서 박사좨주(博士祭酒)라 하였고, 서진 시대에 국자좨주(國子祭酒)로 바뀌었다가, 수당 이후에는 국자감좨주(國子監祭酒)라고 불렸다. 군현의 학관(學官)의 경우도 태학의 학장과 마찬가지로 관직을 역임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군현의 학관을 학생들의 공론에 의거하여 퇴출될 수 있다. 학관과는 별도로 학교 행정 감독관을 둔다. 송대에는 제거학사사(提舉學事司)를 두어 주현의 학사 행정을 관장하게 했고, 명대에는 제학(提學)을 두어 각 성을 돌며 학사 행정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청대에는 제독학정(提督學政)을 두어 모든 성에 있는 학교의 행정과 시험을 주관하게 하였다. 황종희의 구상에 의하면, 학관은 학교 행정 감독관에 예속되지 않아서 교육과 행정이 분리된다. 학교 행정 감독관은 학관이 추천한 학생들을 시험하고 학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학생의 제명도 학관이 담당하고 학교 행정 감독관은 간여하지 않는다. 이 역시 황종희가 추구하는 분권의 이념이 반영된 조치이며, 또한 학문 내지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유가 지식인의 고심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7.4 교육의 보편화

(q7.4.1) 아아! 하늘이 백성을 낳았을 때, 교화와 양육을 군주에게 맡겼다. (그런데) 수전(授田)의 법이 폐지되어 백성들이 논밭을 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있다. 학교의 법이 폐지되어 백성들이 어리석은데도 교화할 수 없으며, 도리어 권세와 이권으로 그들을 유혹한다. 이것 또한 어질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공허한 소리로 그(군주)를 추켜세우며 “군부, 군부” 라 한

다면,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일까!(「學校」)

(q7.4.2) 천자의 아들은 나이 15세가 되면 대신의 자제들과 함께 태학에서 공부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실정을 알게 하고 또 힘들고 수고로운 것에 점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궁중에 간해서 보고 듣는 것이 환관과 궁녀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망령되어 자기 스스로를 크게 존중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學校」)

(q7.4.3) 각 읍의 학생들은 다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며 공부하고,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많으면 역시 경학 선생을 둔다. 민간에 어린이 10명 이상이면 늙어서 벼슬하지 못하는 학생을 어린이를 계몽하는 선생으로 충당한다. 그러므로 군읍마다 선생이 없는 학생이 없고, 학문과 행동으로 바르게 성취한 학생으로 하여금 육조의 임무를 주관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을 나누어 맡게 하여 또한 기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學校」)

(q7.4.4) 역학을 배우는 자가 24절기를 산정할 수 있으면 박사제자로 임명한다. 그것에 정밀한 자는 일정한 정원 내에서 함께 예부로 보내 시험하고 흄천감에서 관직을 준다. 의술을 배우는 자는 제학에게 보내 시험하여 박사제자로 임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의술을 행하게 한다. 연말에 [치료받은 사람들의] 생사와 치료 효과를 헤아려 장부에 기록하고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처지는 사람은 물러나게 하고, 중간은 전처럼 의술을 행하게 하고, 가장 등급이 높은 자는 예부로 보내 시험한 후 태의원의 관직을 준다.(「學校」)

(e7.4.5) 황종희는 군주에게 교화[敎]와 양육[養]이라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한다. 후자는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 주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자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군주는 학교의 교육을 통해 교화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근거하여 황종희는 천자의 아들로부터 일반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는 천자의 아들로 하여금 대신의 자제들과 함께 교육받게 함으로써 궁궐에 갇혀 견문과 식견이 좁아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받은 학생은 관리로 임용

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여 취업을 보장해준다. 역학(曆學)과 의술 등을 배우는 학생들도 실력을 검증하여 해당 관청에 기용하거나 물러나게 한다. 이처럼 철저한 검증을 거쳐 관리를 임용하는 것은 또한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 엄격함이라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 7.5 풍속의 교화

(q7.5.1) 학교 이외의 도시나 농촌의 불교 사찰과 도교 도관, 그리고 암자나 사당 가운데 큰 것은 서원으로 고쳐 경학 선생이 주관하게 하고 작은 것은 소학으로 고쳐 어린이를 계몽하는 선생이 맡게 하고, 학생들을 나누어 소속시켜 수업을 받게 한다. 사찰의 재산은 학교에 예속시켜 가난한 학생들을 보조하게 한다. 불교와 도교의 무리는 학업과 품행이 뛰어난 자를 가려 학교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각기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한다.(「學校」)

(q7.5.2) 향촌의 현자와 유명한 관리의 사당을 세우는 데에는 그 권세나 지위, 그리고 자체의 힘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공적과 기풍, 그리고 절조는 국사에 따라서 살피고, 문장은 세상에 전하는 것을 해아리고, 이 학은 언행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그밖에 향촌의 작은 명예가 있고, 시문에 명성이 있고, 문장을 강의할 만한 경학지식이 있고, [남파] 더불어 이 룬 공이 있어서 이미 사당에 기록된 것은 모두 폐지한다.(「學校」)

(q7.5.3) 민간의 길흉은 『주자가례』에 의해서 행사한다. 서민이 반드시 암송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복 제도, 위패의 크기, 의관의 양식, 가옥 제도는 학관이 결정해서 시장의 상점과 직공에게 넘겨주고, 도시에서 떨어진 농촌에서는 몽사(蒙師)가 그 예를 보고서 습속을 바로잡는다.(「學校」)

(e7.5.4) 황종희는 자신의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 풍속의 교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우선 불교의 사찰과 도교의 도관, 그리고 기타 암자나 사당을 해체하여 서원(학교)으로 만들어 재산을 거기에 귀속시키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본래의 직업으로 복귀시키고 학

업과 품행이 뛰어난 자들은 학교로 보내어 교육받게 하자고 한다. 향촌의 현자나 관리의 사당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보존과 삭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민간의 의례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는데, 상세한 규정은 도시에서는 학관이 일러주고 농촌에서는 어린이 교육을 담당한 선비, 즉 몽사(蒙師)가 가르쳐준다. 예교(禮敎)와 맞물려 있는 민간의 풍속의 교화가 명청 교체기에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다. 명나라의 급속한 붕괴와 만주족의 정복을 거친 중국에서 예론 또는 예교는 만주인의 통치와 문화의 억압에서 맞서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였고, 한편으로는 종족이 신사들이 지역 질서의 혼란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치유책의 하나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명의 급속한 붕괴와 관련된 반성 속에서 정치권력의 과도한 중앙 집권화와 이에 따른 무기력한 지역 저항이 강력한 종족의 결여 때문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가령 고염무는 종족과 예교가 국가와 백성 모두가 관련되는 지역 통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했다.(李勛相, 前近代 韓國과 中國의 地方 統治와 吏胥集團의 宗族 問題, 『中國史研究』 제27집, 2003.12)

## 7.6 서적의 관리

(q7.6.1) 군읍의 서적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막론하고 널리 찾아 비싼 값이라 하더라도 구입한다. 모든 책마다 세 권을 필사하거나 인쇄하여 한 권은 궁중의 서고에 바치고, 한 권은 태학으로 보내고, 한 권은 본래의 학교에 보존한다. 그 시대 사람의 문집으로 고문이 스승을 본받지 못한 것이거나, 어록이 마음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거나, 주의(奏議)가 실용에 도움이 없거나, 서사가 역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간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의 시문·소설·사곡·편지 등 이미 간행된 것은 판본을 찾아 불태워버린다. 학자가 과거의 시문 및 사적인 시험을 만들어 시정의 사람들을 혼혹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 제자는 퇴학시키고 현임관은 면직시키고 관직에서 물려난 자는 관직에 임명될 때 받은 임명장을 빼앗는다.(「學校」)

(e7.6.2) 명청 교체기를 거쳐 청대 전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의 편찬사업이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문화주의적 통치관행에 근거하여 이전에도 『명사』(明史). 『속삼통』(續三通).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등의 간행이 있었지만,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편찬은 그것들과 구분되는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건륭제는 1772년 전국적으로 서적을 수집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듬해에 사고관(四庫館)을 설치하여 서적의 고증·교감·분류·제요 등의 작업을 시작하여 1797년에 완성하였다. 『사고전서』는 준목(存目) 6,700여종, 수서(收書) 3,500종, 금서 내지 파괴 3,100여종 등 그 규모 면에서 공전적인 것이었다. 『사고전서』의 간행이 문자옥과 다름없는 획기적인 문화탄압·사상통제의 수단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문화·국가의 통일자로서 덕치이념을 추구하는 상징적 조치였고 청조와 한족 사대부 사이에 화이사상을 둘러싼 종족적 긴장의 해소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었다. 한족 사대부, 특히 고증학자들 사이에서는 학자관료 주균(朱筠) 및 그가 후원하는 고증학자 그룹이 사고관의 설립과 편찬과정을 주도하면서 국가를 후원자로 삼아 재야학계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옹정대에 이르면 한족 관료와 신사층을 대상으로 화이 문제를 군신대의의 명교 문제로 전화시켜 황제의 법가적 상벌대권을 주자학의 형식적 교조화를 통해 관철시키려는 교묘한 이념 조작의 일환으로 『성유광훈』(聖諭廣訓).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 『붕당론』(朋黨論) 등을 간행하였다.

(e7.6.2) 황종희가 자신이 구상한 국가경영의 청사진에서 서적의 구입과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유학의 전통적인 문치주의와 학문 중심의 사고방식의 변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배태되어 나온 의식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는 보존할 만한 서적은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구입하여 궁궐과 태학과 해당 학교에 각기 보존하게 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서적 내지 글들은 간행을 허락하지 않고 이미 간행된 것들은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

목되는 것은 과거 시험을 위해 사적으로 시문을 가르치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과외 내지 학원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교육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황종희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8. 법률

(e8.1) 황종희는 「군주론」(原君)에서 후대 군주들이 국가(천하)를 사유물로 보는 관념, 즉 일종의 가산국가(家産國家)의 전제군주상을 비판하고 ‘공천하’ (公天下)의 이념을 제시한 바 있다. 명말청초에 명의 멸망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국가경영의 새로운 방안을 제도개혁론의 차원에서 모색하는 흐름이 있었고, 거기서 핵심개념은 ‘공천하’ 와 ‘사천하’ (私天下)라는 것이었다. 황종희가 법에 관하여 논하는 출발점은 바로 ‘공천하’ 와 ‘사천하’, 곧 ‘천하를 위한 법’ [天下之法]과 ‘군주 일가를 위한 법’ [一家之法]이다. 진정한 의미의 법은 군주 한 사람 혹은 군주 일가(一家)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황종희는 삼대 이전에는 법이 있었지만[有法] 삼대 이후에는 법이 없었다[無法]고 한다. 한편 삼대의 법은 ‘공천하’의 이념에 따라 군주가 천하를 사유하지 않고 귀천을 차별하지 않아서 법이 소략하여 마치 법이 없는 것과 같았으므로 이른바 ‘법 없는 법’ [無法之法]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대의 법은 군주 개인과 왕조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법이 아닌 법’ [非法之法]이다. 군주가 ‘사천하’의 관념에 의거하여 천하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므로 법이 더욱 정밀해진다. 삼대의 ‘법 없는 법’ [無法之法]이 소략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데 비해, 후대의 ‘법이 아닌 법’ [非法之法]은 정밀해질수록 더욱 혼란이 발생한다. 소위 ‘법이 아닌 법’은 군주가 사욕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황종희는 천하를 해롭게 하는 ‘법이 아닌 법’ 을 법으로 여겨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후대의 준

법관념을 비판한다.

(e8.2) 황종희는 ‘공천하’ (公天下)의 이념에 근거하여 후대의 법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 내지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전통적인 덕치 관념에서 일정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다스리는 법이 있는 연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有治法而後有治人]라고 하여, 국가사회의 운영에서 기본적인 틀 내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후대의 군주가 ‘천하 사유 관념’ [私天下]에 근거하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한 ‘법 아닌 법’ [非法之法]의 제약 아래에서는 개인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논하는 사람들은 흔히 제도와 의식이라는 두 측면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의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제도가 아무리 구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키려는 의식이 없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제도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의 기본틀로서 법제의 역할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의식은 상당 정도 제도에 의해 변화되고 유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와 의식이 본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입장이 전적으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e8.3) 황종희가 법제화 내지 법률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법치(法治)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명청 교체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 내지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시하지만, 그것이 인간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발성을 배제한 채 순전히 제도적인 틀에 의거하여 국가사회를 운영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自私自利] 욕구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임무를 교화와 양육으로 파악하는 데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황종희가 구상한 국가경영의 청사진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것은 유학의 전통적인 덕치 내지 인정(仁政)의 개념

에 가깝고, 따라서 법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e8.4)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황종희가 법 내지 법제를 중시하는 반면에, 전통적으로 국가사회의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법과 대비되어 논의되는 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유학의 정치이념에 의하면 국가의 경영은 덕과 예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표방하는 덕치의 이념이며, 그것은 『논어』에서 ‘도덕제례(道德齊禮)’라는 명제로 제시된다. “정령으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통제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 하겠지만 내면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통제하면 내면에 부끄러움이 있고 또한 바르게 된다.”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爲政」 3]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률과 형벌에 의거한 물리적 통제 방식을 비판하고 도덕적 인격에 의한 감화를 바탕으로 규범질서의 자발적인 준수를 지향하는 정치방식으로서, 지배층의 도덕성에 의지하는 정치, 곧 인정(仁政)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맹자는 공자의 덕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시켜 통제하는 통치방식을 패도(霸道)라 하고, 치자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복종, 곧 마음으로부터의 복종[心服]을 이끌어내는 왕도(王道)와 대비시켜 패도를 비판하였다.

(e8.5) 법가의 법치는 정령과 형벌을 국가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다. 전국시대에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韓非子)는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수단[‘二柄’]으로 상과 벌을 강조하였다. 이는 군주와 신하를 적대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군주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을 강구하려는 의식의 산물이다. 한비자는 빌톱과 이빨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군주의 상벌과 은덕을 호랑이의 빌톱과 이빨에 비유하고 있다. 한비자는 군주가 신하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도덕성이나 이념에 의한 교화 내지 감화가 아니라 이로움을 통한 유도와 위세에 의거한 위협이라고 보았다. 법가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는 군주를

중심에 두는 발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법치의 군주가 천하(국가)를 자신의 사유물로 보고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덕치는 ‘공천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덕치의 이념에 의하면, 군주가 비록 인민의 공복(公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인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民本] 인민을 위해서[爲民]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학의 전통적인 민본과 위민의 이념에 입각해 있는 황종희가 법제 내지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8.1 법률의 의의

(q8.1.1) 삼대 이전에는 법이 있었지만, 삼대 이후에는 법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제·삼왕은 천하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전답을 주어 경작하게 하였고, 웃이 없으면 안 됨을 알고 땅을 주어 뽕나무와 삼을 기르게 하였으며,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됨을 알고 학교를 세워 교육을 일으키고, 혼인의 예를 만들어 주어 음란을 막았으며, 병역을 부과하여 혼란을 방비하였다. 이 삼대 이전의 법은 본래 한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原法」)

(q8.1.2) 삼대의 법은 천하를 천하에 보관하는 것이었다. 산택의 이로움을 다 취하지 않았고, 상별의 권한이 주위 사람들에게 넘어갈까 염려하지 않았으며, 조정에 있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초야에 있다고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 후세에 그 법이 소략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천하 사람들이 윗자리를 바라지 않고 아랫자리를 싫어하지 않았다. 법이 소략할수록 더욱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법 없는 법[無法之法]이다.(「原法」)

(e8.1.3) 황종희가 법에 대해 논하는 출발점은 바로 ‘공천하’와 ‘사천하’, 곧 ‘천하를 위한 법’ [天下之法]과 ‘군주 일가를 위한 법’ [一家之法]이다. 황종희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법은 군주 한 사람 혹은 군주 일가(一家)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황종희는 삼대 이전에는 법이 있었지만[有法] 삼대

이후에는 법이 없었다[無法]고 한다. 삼대의 군주는 백성에게 전답을 주어 농사짓게 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예를 제정하여 음란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군대를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과 혼란을 방비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하였다. 그래서 삼대의 법은 군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삼대의 법은 ‘공천하’의 이념에 따라 군주가 천하를 사유하지 않고 귀천을 차별하지 않아서 법이 소략하여 마치 법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이른바 ‘법 없는 법’ [無法之法]이라고 한다. 황종희에 따르면, ‘공천하’의 이념에 기초한 삼대의 ‘법 없는 법’ [無法之法]은 소략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데 비해, 후대의 법은 ‘사천하’의 관념에 의거하여 군주가 천하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므로 더욱 정밀해지지만 그럴수록 더욱 혼란이 발생한다.

## 8.2 후대의 법률

(q8.2.1) 후대의 군주는 이미 천하를 얻고서 왕조의 명이 길지 않아 자손이 보존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혼란을 미연에 염려하여 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법이란 것이 한 집안의 법이지 천하의 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진나라가 봉건을 바꾸어 군현으로 만든 것은 군현이 사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고, 한나라가 서얼을 세운 것은 그것이 나에게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었으며, 송나라가 방진의 군대를 해체한 것은 방진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법에 어찌 추호라도 천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原法」)

(q8.2.2) 후세의 법은 천하를 광주리에 보관하려 하였다. 이익을 아래에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복은 반드시 위에서 다 거두려 하였다. 한 사람을 등용하면 사사로움을 도모할까 의심하여, 또 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 사사로움을 제어하려 하였다. 하나의 사업을 행하면 속이지 않을까 염려하여, 또 하나의 사업을 세워서 속임을 방지하려 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그 광주리가 있는 곳을 다 알고 있으니, 군주도 또한 무서워 벌벌 떨며 날마다 광주리만 걱정하므로, 그 법이 정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이 정밀해질수록 천하의 혼란이 바로 그 법 속에서 생기게 되니, 이것

이 이른바 법 아닌 법[非法之法]이다.(「原法」)

(q8.2.3) 혹자는 각 왕조에는 그 왕조의 법이 있으며 자손이 조상을 본 받는 것이 효라고 한다. 무릇 법 아닌 법[非法之法]은 선대의 왕이 사사로운 이욕을 이기지 못하여 만든 것인데, 후대의 왕이 더러 사사로운 이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파괴하는 것은 본래 천하를 해롭게 하기에 족한데, 처음 만든 것도 또한 애초에 천하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에 반드시 이것과도 가깝고 저것과도 가깝게 왔다갔다하면서 법을 지킨다는 명성을 넓히려 하는데, 이는 비속한 선비가 남의 주장을 표절한 것이다.(「原法」)

(e8.2.4) 삼대 이후의 법에 대한 황종희의 비판은 ‘공천하’(公天下)의 이념에 기초한 선대의 법에 대비되는 ‘사천하’(私天下)의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황종희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법은 군주 한 사람 혹은 군주 일가(一家)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후대의 법은 군주 개인과 왕조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법이라 할 수 없다. 즉 후대의 법은 ‘법 아닌 법’[非法之法]이다. 그래서 황종희는 삼대 이전에는 법이 있었지만[有法] 삼대 이후에는 법이 없었다[無法]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의 군현제 실시와 한의 서얼 건립 및 송의 방진 설치가 다 군주 개인과 왕조의 존속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지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천하를 군주 개인의 사유물로 보는 ‘사천하’의 관념에서 비롯된다. 황종희의 비유에 의하면, 삼대의 법은 “천하를 천하에 보관하는” 것이다. 천하를 광주리에 보관하려 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탈취해갈까 염려하여 법이 더욱 정밀해지지만, 법이 정밀해질수록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이는 삼대의 법이 소략하지만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일종의 정명론에 의거하여 후대의 법은 진정한 의미의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황종희가 그러한 ‘법 아닌 법’[非法之法]을 지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8.3 법제의 필요성

(q8.3.1) 혹자는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다스리는 법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다스리는 법이 있는 연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有治法而後有治人]라고 말하겠다. 법 아닌 법[非法之法]이 천하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이후에는,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의심하고 눈치 살피는 것을 이기지 못하며 시행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정해진 한계 안에서 구차한 데 안주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공적을 이루지 못한다. 만약 선왕의 법이 있다면 그 사이에 법을 넘어서는 의지가 없을 수 없다.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옳다면 행하지 못할 의지가 없을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이 옳지 못하다면 또한 각박하게 얹어매어 도리어 천하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 연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原法」)

(e8.3.2) 황종희는 전통적인 덕치의 이념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법을 내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주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 연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有治法而後有治人]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사회의 운영에서의 기본적인 틀 내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후대의 군주가 ‘천하 사유 관념’ [私天下]에 근거하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한 ‘법 아닌 법’ [非法之法]의 제약 아래에서는 개인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황종희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시하였지만, 그것이 인간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발성을 배제한 채 순전히 제도적인 틀에 의거하여 국가사회를 운영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사천하’의 관념에 입각한 후대의 ‘법 아닌 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가사회 경영의 기본적인 틀로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 황종희가 구상한 국가경영의 청사진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것은 유학의 전통적인 덕치(德治) 내지 인정(仁政)의 개념에 가깝고, 따라서 법치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 9. 토지 제도

(e9.1)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농본사회’인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토지제도가 국가경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명대 후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이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수공업과 상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근본[本]이라고 보는 ‘공상개본론’(工商皆本論)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황종희는 자신이 구상한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 여전히 토지제도에 관한 논의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혹자는 이것이 당시 자본주의의 발전이 중상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농업 중심이며 농업과 상업·수공업의 전국적 유기적 결합이 미숙한 한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명말청초의 사상가들은 신사지주를 근간으로 하는 부민경제를 중심으로 황제 전제에 대한 일정한 제약과 소농민에 대한 윤리적 자선을 제창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별성이 드러난다. 고염무(顧炎武)와 왕부지(王夫之)가 토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특히 왕부지는 부민대고(富民大賈)의 필요성 인정하는 바탕 위에 국가(황제)의 지나친 조세 수탈과 토지 집적을 비판한 데 비해, 황종희와 안이학파(顏李學派)는 토지의 사유를 부정하는 정전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안이학파가 균전(均田)을 중심으로 한전(限田)과 정전(井田)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왕원(王源)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자는 ‘경자 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표방한 데 비하여, 황종희는 부민(富民)의 사유권을 무시한 토지 분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둔전을 활용한 정전제의 실시를 모색하는 절충적인 노선을 취하였다. 상공업에 관한 입장에서도 황종희가 수공업과 상업이 모두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근본(本)이라는 ‘공상개본론’(工商皆本論)을 주장한 데 비하여, 고염무는 각종 이원(利源)의 개발을 강구하면서 민간 상업에 대한 통제·수탈에 반대하였고, 왕부지는 상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상인의 부도덕성은 혐오하는 입장이었으며, 당견(唐甄)은 민간 부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탈을 맹렬하게 비난하였고, 안이학파는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재화를 중시하고 민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옹호하면서 이용후생을 위해 농업 중심의 이원(利源)을 개발하자고 주장하였다.(조병한, 「청대의 사상 - 경제학과 고증학」, 『강좌중국사IV』, 지식산업사, 1989.)

(e9.2) 황종희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국유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황종희에 따르면, 국가의 상징으로서 군주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授田’) 스스로를 부양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황종희는 교화(敎)와 양육(養)을 군주의 두 가지 임무로 꼽고 있는데, 이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주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황종희는 조세 제도와 관련하여 부세가 확대되고 중복하여 부과된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삼대의 공(貢)·조(助)·철(徹)은 오직 농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위진 시대에 호(戶)·조(調)라 하여 호구에 대한 부세가 더해졌고, 당나라 때에는 조(租)·용(庸)·조(調) 제도를 실시하여 인신에 대한 부세가 추가되어, 조세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당에서 명에 걸쳐 시행된 양세법(兩稅法)에서도 토지에 부과된 세금과 개인에게 할당된 부역을 호구에 대한 부세에 포함시켜 조세를 확대하였고, 명대 후기에 시행된 일조편법은 종래의 양세법에 은차(銀差)와 역차(力差)를 포함시키고 거기에 다시 잡역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세를 확대하였다. 더욱이 명대 후기에 잣은 외침과 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징수한 각종 군비를 양세법에 포함시키면서 부세가 더욱 확대되고 중복하여 부과됨으로서 누적된 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편 황종희는 조세를 인민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세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형편에 맞추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e9.3) 토지 제도와 부세 제도 방면에서 황종희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핵심은 정전제의 부활이다. 황종희는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에 관한 소순(蘇洵)과 호한(胡翰) 및 방효유(方孝孺)의 논의를 검토하고 나서,

정전제가 위소(衛所)의 둔전(屯田)에 근거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현에서 토지의 3/10을 차지하는 관전(官田)의 존재를 들어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나머지 토지는 부민(富民)이 점유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황종희는 부민의 사유권을 무시한 토지 분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둔전을 활용한 정전제의 실시를 모색하는 절충적인 노선을 취한 셈이다. 한편 황종희는 반대자들이 둔전의 병사가 날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들어 둔전에 근거하여 정전제를 시행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재반박하였다. 그리고 토지의 등급을 상세히 나누고 휴경을 제도화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황종희는 고대의 선왕들은 토지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농민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방전법(方田法)에 의거하여 5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방전법을 원용하여 토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되, 세액이 아니라 실제의 토지 면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재정의 수요가 아니라 인민의 부담능력에 의거하여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황종희가 휴경을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 제도화 할 것을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당시 휴경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어서 경작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관청의 세금 독촉으로 인하여 땅을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황종희는 휴경을 제도화하여 해를 걸러서 낮은 등급의 토지를 경작한다면 비옥한 토지에서 거두는 수확을 바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휴경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면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 9.1 토지 국유제

(q9.1.1) 아아! 하늘이 백성을 낳았을 때, 교화와 양육을 군주에게 맡겼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전(授田)의 법이 폐지되어 백성들이 논밭을 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있다. 학교의 법이 폐지되어 백성들이 어리석은데도 교화할 수 없으며, 도리어 권세와 이권으로 그들을 유혹한다. 이것 또한 어질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공허한 소리로 그(군주)를 추켜세우며 “군부(君父), 군부”라 한다면,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일까!(「學校」)

(q9.1.2) 옛날의 성군은 바야흐로 토지를 주고 백성을 길렀고, 지금은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오히려 법으로 빼앗는 일이 먼저 보인다. 이른바 옳지 못한 것은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田制」)

(e9.1.3) 황종희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국유를 주장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국가의 상징으로서 군주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授田] 스스로를 부양하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황종희가 말하는 군주의 두 가지 임무인 교화[教]와 양육[養] 가운데 후자에 해당한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주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뒤의 인용문에 나오는 “옳지 못한 것은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맹자』에서 연유한다. 맹자는 “옳지 못한 일을 한 가지 행하고 무고한 사람을 하나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行一不義殺一不辜而得天下，皆不爲也。 「公孫丑上」 2]라고 하였다.

## 9.2 부세의 확대

(q9.2.1)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해란 무엇인가? [하은주] 삼대의 공(貢).조(助).철(徹)은 단지 농지에만 부과하였을 뿐이다. 위진 시대에는 호(戶).조(調)의 명칭이 있었다. 농토가 있는 자는 조부를 내고 호구가 있는 자는 베와 비단을 냈으니, 농토 이외에 다시 호구에 대한 세가 있었다. 당나라 초기에는 조(租).용(庸).조(調) 제도를 실시하였다. 농토가 있으면 조(租)가 있고, 호구가 있으면 조(調)가 있고, 봄이 있으면 용(庸)이 있었다. 조(租)는 곡식을 내고, 용(庸)은 명주(絹)를 내고, 조(調)는 비단·솜·베·마를 내고, 호구에 대한 세금 외에 다시 정(丁)에 대한 세금이 있었다.(「田制」)

(q9.2.2) 양염(楊炎, 727-781)이 양세법(兩稅法)으로 개정하여 사람들은 정중(丁中)의 구별 없이 빈부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 비록 조·용·조의 명칭이 섞여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용(庸)과 조(調)를 아울러 조(租)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송나라에 이르러 용(庸)과 조(調)를 조(租)에서 빼내지 않았는데, 다시 장정에 대한 세금(丁身)으로 돈과 쌀을 거두었다. 후대에 그것을 그대로 안존시켜 양세는 조(租)라 하고, 장정에 대한 세금은 용(庸)·조(調)라고 하였으니, 어찌 중복해서 거두는 부세임을 알겠는가? 용(庸)·조(調)의 명칭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그래서 양염의 (방책은) 한 때의 이로움은 적고, 후대에 미친 해는 크다.(「田制」)

(q9.2.3) 명대의 양세법에서는 장년의 남자가 감당하는 부역 이외에 역차(力差)가 있고 은차(銀差)가 있는데, 이것은 10년에 한 번 당번이 되는 것이다. 가정(1522~66) 말년에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시행하여, 부·주·현에서 10년간 하세·추량·준류·기운의 액수와 균요·이갑·토공·고모·가은의 예를 통해 하나로 일괄해서 총액을 정수하고, 1년에 내던 것을 10년간 나눠서 내게 하며, 당번을 해야 하는 해도 다른 해와 같게 하였다. 이는 은차·역차가 또한 양세법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갑의 당번이 된 자에게 잡역이 다시 번잡스럽게 부과되었다. 그 후 또 그것을 포함하면서 일조편법을 양세법이라 했다. 잡역은 당번을 맡은 해의 차역인데, 어찌 그것이 중복해서 부과하는 차역인지 알겠는가? 은차·역차의 명칭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렀겠는가? 그러므로 일조편법은 한 때의 이로움은 적고 후대에 미친 해는 크다.(「田制」)

(q9.2.4) 만력 연간의 구향(瞿餉)은 500만이고, 그 말년에 신향 900만을 더하고, 숭정 연간에 또 730만이 증가하였다. 예원로(倪元璽)가 호부상서가 되어 세 가지 향을 합해서 일원화하였는데, 이것은 신향과 연향이 또한 양세법에 편입된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양세법이 본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천하를 망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겠는가? 연향과 신향의 명칭을 고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은 그 명칭을 헤아리며 웃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또한 예원로가 배움이 없고 방책이 없었던 잘못이다. 아, 세액의 누적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田制」)

(e9.2.5) 황종희는 조세 제도와 관련하여 부세가 확대되고 중복하여 부과된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삼대의 공(貢)·조(助)·철(徹)은 오직 농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위진 시대에 호(戶)·조(調)라 하여 호구에 대한 부세가 더해졌고, 당나라 때에는 조(租)·용(庸)·조(調) 제도를 실시하여 인신에 대한 부세가 추가되어, 조세가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양세법(兩稅法)은 당에서 명에 걸쳐 시행된 세법인데, 하세(夏稅)와 추세(秋稅)라 하여 여름과 가을의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하였으므로 양세법이라 하였다. 양세법은 각 향촌의 현주호(現住戶)를 세역(稅役)의 부담자로 하여 각 호의 자산을 9등급으로 나누어 그것에 따라서 현금(銅錢)을 징수하였다. 황종희에 따르면 이는 용(庸)과 조(調)를 조(租)에 포함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토지에 부과된 세금과 개인에게 할당된 부역을 호구에 대한 부세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송나라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고, 거기에도 다시 장정에 대한 세금(丁身)으로 돈과 쌀을 거두었다. 결국 당대의 조·용·조 외에 장정에 대한 세금(丁身)을 추가시킨 셈이다. 명대 후기부터 청대 초기에 시행된 조세와 요역 제도인 일조편법(一條鞭法)은 조세와 요역의 복잡한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징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 명대 후기에 이르면 일조편법은 실제로는 종래의 양세법에 은차(銀差)와 역차(力差)가 포함되고 거기에 다시 잡역이 부과된 형태였다. 더욱이 명대 후기에 잦은 외침과 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군비를 징수하면서 그것을 양세법에 포함시켰다. 황종희는 이와 같이 부세가 확대되고 중복하여 부과됨으로서 누적된 폐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였다. 이것이 황종희가 국가경영의 청사진에서 토지 제도 및 그와 관련된 부세제도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e9.2.6) 삼대에 시행되었다고 하는 공(貢)은 수확량의 평균치에 근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고, 조(助)는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공전(公田)을 경작하는 일종의 부세이며, 철(徹)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조(租)·용(庸)·조(調)는 당나라 때 토지와 백성과 호구에 각기 부과

하는 전조(田租)·역용(力庸)·호조(戶調)를 말한다. 당나라 때에는 세금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였다. 624년에는 갓 태어나면 황(黃), 4세는 소(小), 16세는 중(中), 21세는 정(丁), 60세는 노(老)로 구분하였다. 정신(丁身)은 21-59세의 남자에게서 징수하는, 부역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구(丁口)는 21-59세의 남자가 감당하는 역을 가리킨다. 역차(役差)는 부역에 동원되어 일하는 것이고, 은차(銀差)는 부역 대신 은을 납부하는 것이다. 일조편법(一條鞭法)은 명대 중엽 이후 세제를 간편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모든 부역과 부세를 은(銀)으로 내게 한 제도이다. 하세(夏稅)는 여름에 내는 세금이고, 추량(秋糧)은 가을에 내는 세금이다. 존류(存留)는 징수한 미곡을 지방관청에 남겨두는 것이고, 기운(起運)은 중앙으로 수송하는 것이다. 이갑(里甲)·요역(均徭)·잡범(雜泛)은 명대의 3대 요역이다. 균요(均徭)는 호적(黃冊)을 만들어 백성을 3등급으로 나누어 연간의 제반 부담을 평균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이갑은 본래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였는데, 후에 요역으로 변했다. 110호를 1리로 하고 1리를 10갑으로 나누어, 이장(里長)과 갑수(甲首)에게 이갑의 사무를 맡겼다. 가은(加銀)은 조정에서 매년 은 1량을 징수하고, 주현에서 은 1-2분을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토공(土貢)은 지역의 특산물과 진기한 물건을 바치는 것이다. 고모(顧募)는 전문 기술 인력을 초빙해서 하는 부역이다. 잡역(雜役)은 잡범(雜泛)이라고도 하는데, 균요 외에 부정기적인 잡다한 부역을 가리킨다. 향(餉)은 군비(軍餉)로서, 구향(舊餉)은 청의 요동 침입에 대비하여 거둔 세금으로 요향(遼餉)이라고 하며, 연향(練餉)은 명말에 일반적인 징세 외에 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거둔 군비이다.

### 9.3 부세의 부적절

(q9.3.1)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슨 해가 있는가? 옛날에는 토지에 따라서 공물을 결정하였다. 비록 제후라 하여도 그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을 차마 강제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일반 백성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미곡을 부과하는 것은 그 토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베와 비단을 부과하는 것은 장정이 스스로 생산하게 때문이다. 동전으로 납세하는 것은 후대 백성들의 편의를 따른 것이다. 베 한 필이면 바로 동전 1,000 전이었는데, 관청에 낼 때에는 900전으로 하였다. 베가 600전이면 관천에 낼 때에는 500전으로 하였는데, 민간의 시세에 비하면 오히려 떨어진 가격이다. 동전을 부세로 내는 데에는 단지 베와 비단만 융통했을 뿐이다. 농토에 미곡을 부과하는 것은 한당 이전에는 고친 일이 없었다. 양염이 호구에 대한 부세를 농토의 부세에 병합시켰다. 여기서 베와 비단을 동전으로 바꾸어 낸 것이 미곡과 서로 혼란스럽게 되어 또한 마침내 동전은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다.(「田制」)

(q9.3.2) 송나라 융홍 2년 온주·대주·처주·회주에는 수로가 통하지 않아, 그 두 가지 세금(농토에 대한 미곡과 호구에 대한 베와 비단)으로서 물품과 비단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제도에 의거해서 은으로 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당시 은의 가치는 낮아져서 물품과 비단을 (은으로) 바꾸어 내게 한 것은 또한 백성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회령 10년(1077)의 세액을 살펴보면 양세에 부관된 은은 6만137량뿐이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낮은 때여서 상평창이 곧 곡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은으로 부과해도 심한 곤란에 빠지지는 않았다.(「田制」)

(q9.3.3) 명대에는 조량 이외에는 모두 은으로 바꾸어 세금을 냈다. 동전으로 바꾸어 내던 베와 비단을 은으로 바꾸어 낼 뿐만 아니라 역대에 계속해서 바꾸지 않았던 미곡도 은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곡만 상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은을 대신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 동전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육지는 일찍이 “바치는 것이 생업이 아니고, 생업이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안 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은으로 부과하는 것이라!(「田制」)

(q9.3.4) 천하의 은이 고갈되면, 흉년에는 농토의 소출은 세금을 바치기에 부족하고, 풍년에는 농토의 수출로 세금을 바치기에는 넉넉하지만 (이것을) 은으로 바꾸어 낸다면 (흉년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바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해마다 모두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은 백성들에게 풍년을 주었는데, 위에서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왕이 천하를 다스리면 그는 반드시 농토를 마땅한 것에 맡겨서 백곡을 생산한 자에게는 백곡을 내게 하고, 뽕과 삼을 심은

자에게는 배단과 베를 내게 하고, (그밖에) 잡다한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생산한 것을 내게 하여 백성들을 궁핍한 데 이르게 하지 않을 것 이로다! (「田制」)

(e9.3.5) 조세의 부과에 있어 황종희가 제시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조세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형편에 맞추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를 인민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한당 이전에는 농토에 대한 세금을 미곡으로 납부하였고, 호구에 베와 비단을 부과한 것은 인민이 그것을 생산하기 때문이었다. 송대에 이르러 인민의 편의를 위해 물품과 비단을 은으로 바꾸어 낼 수 있게 하였고, 명대에는 미곡까지도 은으로 바꾸어 내게 하고 동전으로 대신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이 고갈되면 흉년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 풍년에도 세금을 내기에 급급하게 된다. 은이 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곡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종희는 모든 부세는 인민의 생산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 9.4 토지세의 부과 기준

(q9.4.1) 내가 생각하기에 왕도정치를 하는 자가 일어나면 반드시 부세의 결정을 중요하게 할 것이다. 천하의 부세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하(下下)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그것이 옛날의 제도에 부합할 것이다. 혹자는 “1/30의 세금은 나라의 비용으로 부족하다”라고 할 것이다. 옛날에 천리 안에서 천자가 먹고 제후에게 거둬들이는 공물은 1/10이 되지 않았다. 지금 군현의 부세는 군현이 쓰는 것은 1/10도 안 되며, 뱃길로 서울에 보내는 것이 9/10이다. 옛날에는 1/10을 거둬도 일찍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9/10를 거둬들이고도 도리어 근심하는가! (「田制」)

(q9.4.2) [오늘날] 1/10의 세금은 그 명칭만 옛날의 법이지, 옛날의 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심하다. 군인들의 권력이 흥하던 세상에 1/10의 세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백성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토지의 상황에 맡

기지 않고, [국가에서 필요한] 비용에 따라 일시적인 비용을 가지고 천하의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며, 후대 군주들이 이것을 답습하였다. 후대의 군주들이 이미 쇠퇴하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천하의 부세를 제정하고 이후의 군주가 또 그것을 답습하였다.(「田制」)

(q9.4.3) 지금 세금을 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적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백성에게 토지를 줄 경우 1/10을 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1/20을 표준으로 한다. 호구마다 출병과 양병을 부과한다면 나라의 비용이 자연히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또 어찌 과도한 세금을 일삼는가!(「田制」)

(e9.4.4) 황종희에 따르면 부세의 결정은 가장 낮은 등급(下下)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세금의 징수가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황종희는 백성에게 토지를 주는 경우에는 1/10을 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1/20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황종희는 옛날에 거두어들인 공물 가운데 천자와 제후가 소비하는 것은 전체의 1/10이 되지 않았고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군현에서 거둬들인 부세의 9/10를 중앙으로 보낸다고 비판한다.

## 9.5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

(q9.5.1) 후대의 선비로서 정전제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소순(蘇洵, 1009-1066)이 가장 상세하고, 정전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호한(胡翰, 1037-1087)과 방효유(方孝孺, 1357-1402)이 가장 절실하다. 소순은 천·노·회·도·혁·도·구·진·수·경의 제도는 수백년 동안 힘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진실로 백성에게 토지를 주고, 도로가 통하고 수리시설이 되어 있으면 또한 어찌 반드시 제도와 경계의 말단적인 문제에 구애되겠는가! 소순이 근심한 것은 모두 정전제를 주장한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한 문제가 아니다. 호한과 방효유는 단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 말했지,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또한 상세하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위소의 둔전에 견주어 보아 정전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세속의 선비들은 둔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하다고 하고, 정전에 대해서는 실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2※가 10임을 모르는 것이다.(「田制」)

(q9.5.2) 각각의 군대가 토지 50무를 경작하는 것은 옛날의 100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주나라 시절 한 농부에게 준 토지 100무가 아닐까? 50무에서 정량 12석을 징수해서 본군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여량 12석은 본위의 관군에게 봉급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징수한 것은 12석이다. 각각의 무에서 2두 4승을 (징수한 것은) 또한 주나라의 향과 수에서 쓴 부세 방법이다. 천하의 둔전은 모두 64만 4,243경인데, 만력(1573~1620) 6년(1578년) 실제 농토는 7,013,976경 28무였다. 둔전은 그 가운데 1/10을 차지하며, 토지를 주는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은 다만 9할뿐이었다. 하나를 통해서 아홉을 미루어 보면 역시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田制」)

(q9.5.3) 더욱이 토지에 관전과 민전이 있는데, 관전은 백성들이 얻어서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현에는 관전이 3/10을 차지한다. 실제 농토를 평균한다면 호구 수가 1,062만 1,436이며, 각각의 호구마다 토지 50무를 주고, 나머지 토지 1억 7,032만 5,828무는 부민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면 천하의 토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찌 한전·균전하며 분분히 떠들어서 혀되어 부민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둔전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서 정전제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田制」)

(q9.5.4) 반대자들은 “둔전이 이미 정전제와 같다면 둔전의 병사가 날로 변성하여야 하는데, 어찌 소모되고 있는가?”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것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둔전은 토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주어도 향토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또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하고 노약자들에게 경작을 맡긴다면, 노약자에게 맡긴 경작의 수확량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들은 둔전에서 (일하지) 않는 자가 떡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한 무엇 때문에 수고로운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이유다. 옛날에는 1/10의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무마다 2두 4승이다. 1무의 수입을 해아려보면 1석을 넘지 않는다. 이것은 2.5/10의 세가 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또한 징수하는 것을 무인이 주관하고 군현의 관리는 관여하지 않으니, 그 군(둔전병)을 착취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네 번째 이유다. 그러니 또한 소

모되는 것이 당연하다.(「田制」)

(e9.5.5) 황종희는 정전제의 시행 가능성에 관한 소순(蘇洵)과 호한(胡翰) 및 방효유(方孝孺)의 논의를 검토하고 나서, 정전제가 위소(衛所)의 둔전(屯田)에 근거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현에서 토지의 3/10을 차지하는 관전(官田)의 존재를 들어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나머지 토지는 부민(富民)이 점유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황종희는 반대자들이 둔전의 병사가 날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들어 둔전에 근거하여 정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데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재반박하고 있다. 즉 둔전의 병사가 날로 줄어 쇠퇴하는 이유는 둔병은 토착민이 아니어서 토지에 대한 애착이 적기 때문이고, 노약자에게 경작을 맡겨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둔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즉 성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애써 농사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으므로 수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무인이 부세의 징수를 주관하면서 무자비하게 착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9.6 토지 등급제와 휴경의 권장

(q9.6.1) 무엇을 가리켜 농토에 등급이 없어서 (나타나는) 해라고 하는가?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바꾸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는 집마다 100무, 한 번 휴경하는 토지는 집마다 200무, 두 번 휴경하는 토지는 집마다 300무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9등급으로 결정한 부세 이외에 선왕이 또 상세히 등급을 정한 것이다.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농토의 가격은 20배의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담당관리[有司]가 징수하는 것은 획일적인 기준이어서 불모지에서도 매년 부질없는 세금을 거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해마다 경작하여도 그곳의 소출이 경작하는 데 들어간 경비를 보상할 수 없다. 농민은 단지 척박한 땅이라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만일 옛날의 제도처럼 1년이나 2년을 (농사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면 비로소 옥토 아닌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관청의 세금 독촉에 여유

가 없어서 비록 휴경하고자 해도 어찌 휴경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찌 농토의 생산력이 날로 고갈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겠는가! 내가 보기 에 100무의 농토가 수십 무의 용도에 못 미치는 것은 휴경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해다.(「田制」)

(q9.6.2) 지금 천하의 토지를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은 방전법에 의하여 240보를 1무로 하고, 중간 정도의 것은 480보를 1무로 하고, 가장 낮은 것은 720보를 1무로 한다. 그리고 다시 360보와 600보를 1무로 짐작하여 (토지를) 5등분한다. 어린책의 번호는 1호가 1무의 표준이 되고 쓸모없는 군더더기로 단위 이하의 단수에는 붙이지 않는다. 만일 여러 무가 동일한 구역인 것은 여러 개의 번호로 해도 무방하고, 1무가 여러 가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번호로 해도 무방하다. 토지의 등급을 세액의 경중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측량한 결과 좁고 넓은 것에 의해 정한다면 고르지 않은 것이 그에 따라 고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성분이 중간과 하등의 것은 해를 걸러서 경작하게 하여 토지 성분이 좋은 것의 수확을 얻게 한다. 만일 여력이 있어서 모두 경작한다면 저것(中下 등급의 토지) 2,3무의 수입이 좋은 토지 1무의 수확에 못지않을 것이다.(「田制」)

(e9.6.3) 황종희는 토지의 등급을 상세히 나눌 것과 휴경을 제도화 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를 인용하여 고대의 선왕들은 토지의 일반적인 등급 외에 다시 더 세분화함으로써 농민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려 하였다고 한다. 황종희에 의하면 당시에는 방전법(方田法)에 의거하여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방전법은 북송 시기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의 약칭으로서, 동서남북 각 1,000보를 1방(方)이라 하고 토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왕안석이 시행하였다 대지주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황종희는 이 방전법을 원용하여 토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되, 토지의 등급을 세액이 아니라 실제 측량한 면적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국가 재정의 수요가 아니라 인민의 부담능력에 의거하여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황종희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어서 경작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관청의 세금 독촉으로 인하여 땅을 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휴경을 적극 권장한다. 그는 중간과 하등의 토지를 해를 걸러 경작한다면 상등의 토지에서 거두는 수확을 바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10. 화폐 제도

(e10.1) 황종희는 화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역대의 화폐제도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금은화폐의 폐단을 지적하고 동전과 지폐의 유통을 주장하는 데로 나아간다. 황종희에 따르면, 옛날에는 곡식과 비단(布帛)이 가치척도로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금과 은은 단지 보석으로서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삼대 이후 당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화폐의 기본적인 효용, 즉 곡식이나 비단 등 현물을 화폐로 사용할 때 운반에 힘이 들고 유통과정에서 마모나 소실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물과 함께 화폐를 사용하였다. 당대에 이르러서는 동전으로 부세를 받고 교역하게 되었고, 송대에는 금은과 비단(絲帛)을 화폐로 삼아 지방관청과 민간에 일정량을 보유하게 하고 금은으로의 교환을 중앙에서 보장함으로써 유통시켰다. 원대에는 금은을 본위화폐로 하고 지폐를 보조화폐로 삼아 금은을 유통시켰는데, 명대에 이르러서는 금은과 지폐를 함께 사용하게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금은이 궁중이나 부상대고(富商大賈)·고관오리(高官汚吏)에 집중·사장되거나 국외로 유출되어 유통력을 상실하면서 폐단만 가중시켰다.

(e10.2)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황종희는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동전으로 화폐를 통일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그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도둑질과 관리의 은익이 어려우며 백성들이 고향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 등등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동전을 유통시키는 제도의 일곱 가지 이점을 제시하고, 명대에 동전의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유통된 이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나서, 동전을 유통시키는 방

안을 제시한다.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동전을 유통시키는 제도의 이점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도둑질과 관리의 은익이 어려우며 백성들이 고향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명대에 동전이 제한적으로만 유통된 이유는 동전이 조악하여 위조가 용이하고, 연호에 따라 문양이 달라 통일되지 않았으며, 금은화폐를 함께 사용하여 화폐가 통일되지 않았고, 구리[銅]의 사용 금지가 엄격하지 않았던 데다 포상과 부세에서 동전을 위에서 아래로는 사용하고 아래에서 위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전을 유통시키기 위해 황종희가 제시한 방안은 강력한 국가관리제도 아래 구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중앙과 지방에 전답관을 두어 무게와 양식을 통일하여 정교하게 주조하고,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부세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황종희는 동전의 유통은 더불어 지폐의 원활한 유통도 불러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 10.1 화폐의 필요성

(ql0.1.1) 삼대 아래로 사용한 것은 곡식(粟)과 비단(帛)인데 동전(錢)으로 가치를 쟁으므로, 동전과 속백(粟帛)은 서로 혜아람의 척도가 되었다. 한나라 장제 때 곡식과 비단의 가치가 귀하게 되자, 장림(張林)이 말하기를 “이것은 동전이 많기 때문이니, 마땅히 천하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포백으로 조세를 내게 하고, 상인들도 모두 그것을 쓰게 하고 동전의 통용을 봉쇄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면 물건 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魏)나라 명제 때에는 동전을 폐지하고 곡식을 썼다. 환현(桓玄)이 진(晋)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동전을 폐지하였다. 그 때 공림지(孔琳之)가 말하기를 “선왕은 쓸모없는 화폐를 만들어 쓸모있는 재화를 유통시켰는데, 이것은 동전이 귀폐(龜貝)와 같은 화폐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곡식과 비단은 본래 먹고 입는 데 충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나누어 화폐로 삼으면 상인들의 손에 훠손되고 잘릴 뿐 아니라 쓸 때에 소모되고 버려져서 이 폐해는 예전부터 현저하였다”라고 하였다.(「財計」 1)

(ql0.1.2) 전폐(錢幣)가 이익이 되는 까닭은 일시적 이로움은 없어도 그 후 영구한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3, 4전의 비용으로 10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적은 양의 종이로 금은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이로움이다. 국경 안에서 항시 많은 재화가 끊임없이 유전 하는 것이 영구한 이로움이다. 뒤에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항상 이것(일시적 이로움이 없음)만 돌아보고 저것(영구한 이로움이 있음)을 잊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전폐에 관한] 논의를 방해하고 파괴하였다.(「財計」 2)

(e10.1.3) 인류의 교역의 최초 형태는 물물교환이며, 상품화폐는 물물교환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물교환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물물교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물물교환 당사자의 욕구의 이중부합(double coincidence of wants)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고기를 가지고 생선을 교환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B는 생선을 가지고 고기를 교환하기를 원할 때 물물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교환 대상 물품을 원하는 단위로 분할할 수 있는가도 문제다. 즉, 물물교환의 두번째 문제는 재화의 불가분성(indivisibilities)이다. 물물교환 체제로는 상업세계의 계산(business calculation)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물물교환의 세 번째 문제다. 상품화폐는 물물교환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통해 시장과정에서 기원하는 것이다.(전용덕, 2002) 황종희는 물물교환에서 곡식과 비단을 화폐로 사용하면 그것들이 손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화폐의 사용을 통한 재화의 무궁한 유통이라는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화폐, 즉 동전(錢)과 지폐(幣)가 일시적인 이로움과 영구적인 이로움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일시적인 이로움은 화폐가 휴대와 보관에 편의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을 가리키며, 영구적인 이로움은 바로 재화의 무궁한 유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0.2 금은화폐의 폐단

(q10.2.1) 명나라 초기에 또한 금과 은을 이용한 교역을 금지하고, 관청에서 금과 은을 지폐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백성을 그물에

걸어 이익을 거두는 것이니,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조세와 교역은 은만을 사용케 하여 천하에 큰 해가 되게 하였다. 대개 은과 지폐는 표리가 되어, 은의 힘이 모자라면 지폐가 힘을 편다. 그러므로 원나라의 세량은 지폐 사용을 결정하고 은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날 지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고 동전만이 겨우 작은 교역에서만 사용되고 조세의 납부에는 사용되지 않아 모든 조세 업무가 하나로 통일되어 은의 유통력이 고갈되었다. 원나라는 또한 제거사를 설치하고 도금호를 두어 금은 장을 개설하여 각 지역의 백성들에게 정제하고 조련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므로, 금과 은이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직 많았다.(「財計」)

(q10.2.2) 이제 광산이 폐쇄되었지만 간혹 채광을 하게 되면 또한 궁노들이 주인 노릇하며 궁중에 넣어 민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면서 은의 유통력이 고갈된 것이다. 200여년 동안 천하의 금과 은이 북경(燕京)으로 운송되었는데, 마치 물이 골짜기로 흘러가는 것과 같았다. 평화로울 때는 오히려 상인과 관리가 그것의 10분의 2,3 정도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이 많아진 아래로 북경에 보낸 것들이 모두 변경 밖으로 새어나가 부상(富商)-대고(大賈)-달관(達官)-활리(猾吏)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옮기고, 또한 그 자금의 힘으로 천하의 금과 은을 모두 거두어갔다. 그 이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은의 유통력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부세는 옛날 그대로이고 교역도 옛날 그대로이다. 혀동지등 은을 구하고자 하여도 장차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러므로 논밭의 가격은 다른 때의  $1/10$ 도 안되는데, 어찌 그 토양이 척박해서 그렇겠는가? 아니다. 부세를 바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또한 다른 때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어찌 물자가 풍부해서겠는가? 아니다. 교역하는 데 의지하는 것(즉 銀)이 없기 때문이다.(「財計」)

(q10.2.3) 오늘날 탕화의 열기 속에서 움직이는 백성들은 시절이 평화롭고 풍년이 들어도 무익하다. 수시리설이 좋은 곳에서 농사를 권해도 무익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금은화폐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은화폐 제도를 폐지하면 일곱 가지 이점이 있다. 곡식과 비단(粟帛) 같은 종류는 일반 백성들의 힘으로 경작하여 쉽게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첫째다. 동전을 주조하여 풍족한 물자와 부족한 물자를 교역하게 하면 주조하는 사람은 쉴 틈이 없고 화폐는 고갈되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둘째다. 금은을 저장하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셋째다. 가볍게 지니고 다니기에 불편하여 백성

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넷째다. 관리가 사사로이 소매 밑에 감추기 어려운 것이 그 다섯째다. 도적이 금궤를 열고 훔쳐 도망가도 짐이 무거워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여섯째다. 동전과 지폐가 통용되는 것이 그 일곱째다. 그러나 반드시 엄격한 금령을 내려 광산에서 금은을 훔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금은을 유통시키는 자는 동전을 함부로 주조하였다는 죄를 물은 이후에야 [동전의 유통이] 가능할 것이다.(「財計」)

(e10.2.4) 황종희는 “후대의 성왕이 천하가 편안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금은으로 세금 내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財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은과 지폐가 상호 표리를 이루는 관계로서 은의 힘이 모자라면 지폐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종희는 원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은의 정제와 조련을 허용하고 지폐를 사용하여 은의 유통력이 고갈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명대에 이르러서도 200여년 동안 천하의 금과 은이 북경으로 운송되어 은의 유통력이 고갈되었다. 그러나 부세와 요역에는 변화가 없어서 은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폐단이 드러났다고 한다. 황종희는 금은화폐를 폐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백성의 경작에 의해 곡식과 비단이 풍부해지고, 동전[錢]의 지속적 주조를 통해 화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며, 운반의 불편 때문에 인민들이 고향에 정착하게 되고, 동전은 무거워서 운반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의 은익과 도둑질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동전과 지폐가 활발하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에 의해 금과 은의 채굴 및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0.3 동전의 유통

(q10.3.1) 명나라에서 동전화폐[錢法]를 시행하려 했어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첫째, 동을 아깝게 생각하고 수공하는 것에 인색하여 동전의 질량이 매우 조악하고 사사롭게 주조한 동전들이 성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절이(折二)-절삼(折三)-당오(當五)-당십(當十) 등의 제도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동의 사용에 대한 금지가 엄격하지 않아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연호가 각기 다른 문양이었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폐해는 과거에도 같았다. 다섯째, 금과 은을 사용하여 화폐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상을 주고 부세를 내리는 데 위에서 아래로 시행하고 아래에서 위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전을 쓰는 데 따른 해악이 네 가지였는데, 오늘날에는 동전을 쓰는 데 따른 해악이 여섯 가지다.(「財計」)

(q10.3.2) 그러므로 오늘날의 동전[錢]은 소소한 교역에만 사용하는 데 불과하고 공사의 이익에는 모두 의지하지 않아서 동전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실로 금은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화폐의 가치기준을 모두 동전으로 돌려야 한다. 중앙과 각 성에 전담하는 관리를 두어 주조하게 하고 동 광산은 관이 채굴하며 민간의 기명과 사찰 및 도관의 불상과 상징물은 모두 소멸하여 전답하는 곳에 입고시킨다. 1,000 전은 여섯 근 넉 량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동전은 1전의 중량으로 정밀하게 제작하고 양식을 통일하며 또한 반드시 연호를 새길 필요가 없다. 토지에 대한 부세로 속배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소금과 술에 대한 세금은 일체 동전으로 내게 한다. 이와 같이 하면서 시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財計」)

(e10.3.3) 황종희는 명나라에서 동전을 유통시키려 하였지만 실현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명나라에서 동전이 유통되지 못한 이유로 황종희는 여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동전이 조약하여 위조가 용이하고, 제도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구리[銅]의 사용금지가 엄격하지 않았고, 연호에 따라 문양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금은을 화폐로 사용하여 화폐가 통일되지 못했고, 포상과 부세에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고 아래에서 위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전이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황종희의 해결방안은 금은화폐를 폐지하고 동전의 주조를 전담하는 관리를 설치하여 화폐를 정밀하게 제조하고 토지세를 곡식과 비단[粟帛]으로 내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황종희는 동전의 유통을 통해 지

폐의 원활한 유통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0.4 지폐의 유통

(q10.4.1) 명나라가 지폐제도[鈔法]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숭정 연간 동성(桐城) 제생 장신(蔣臣)이 말하기를 “지폐제도가 시행되어 매년 지폐 3천만 관을 만들었는데, 1관이 곧 1금이라 매년 금 3천만 량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호공시랑 왕오영(王鰲永)이 그 설을 지지하여 말하기를 “첫 해에 3천만 관을 만들면 5천만 금을 얻을 수 있어서 수입이 많아져 앞으로 금은 토지 가격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에서는 특별히 내보초국(內寶鈔局)을 설치하여 주야로 만드는 것을 감독하고 상인을 모집하여 발매하였는데, 궁정적으로 응하는 자가 없었다. 대학사 장덕경(蔣德璟)이 말하기를 “금 1량을 종이 한 장으로 바꾸고자 하면, 어리석은 바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위에서는 고황제가 지폐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을 들어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장덕경이 말하기를 “고황제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였던 것 같으나 상을 주거나 녹봉을 주는 것뿐이었고, 실제로 군사비 지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財計」)

(q10.4.2) 생각건대 지폐는 당나라의 비전(飛錢)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치 지금의 민간에서 쓰는 회표(會票)와 같다. 송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관에서 제도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송나라가 시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매번 하나의 경계, 곧 유통기한을 두고 제조하여 본전 36만 민(緝)을 갖추고, 또 소금과 술 등으로 그것을 보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대개 민간이 지폐를 갖고자 하면 동전을 관고에 넣어야 하고, 동전을 갖고자 하면 지폐를 관고에 넣어야 하며, 소금과 술을 얻고자 하면 여러 업무에 넣어야 했다. 그러므로 지폐가 손에 있는 것은 현전(見錢)과 다름이 없었다. 그것에 반드시 유통기한을 둔 것은 관의 본전이 제조된 지폐와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고, 유통기한이 없으면 제조하는 것이 증가하여 한계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매번 유통기한마다 약간의 지폐를 제조하고 유통기한 말기에 약간의 지폐를 회수하여 위조한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없으면 회수하고 제조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나라의 칭제(稱提) 지폐지도가 이와 같았

다. 원나라가 시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길을 따라서 관고(官庫)를 설치하고 금과 은을 교환하고 지폐제도를 공평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이다.(「財計」)

(q10.4.3) 명대의 보초고(寶鈔庫)는 오래된 지폐를 회수하는 데 불과하며, 칭제(稱提)의 제도를 갖추는 것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어찌 시행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겠는가? 의종 때 이익을 말하는 신하가 화폐제도의 시행에 관한 시말의 상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저 한 척의 종이가 금은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서, 단지 그것을 제조하는 제도만 강구하고 시행하는 제도는 강구하지 않았다. 관에 본전이 없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그러므로 그 때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마치 날아가는 탄환을 보고 구운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財計」)

(q10.4.4) 참으로 전민(錢緡)을 쌓아놓고 5년을 경계로 오래된 지폐를 거두어 불사르고, 관민이 함께 사용하여 관청에서는 그것으로 상세를 물리고 시장에서는 염인(鹽引)으로 교역한다면, 또한 어찌 시행되지 않을 걱정을 하겠는가! 참으로 금은을 폐지하면 곡백·전민은 멀리 옮기는 것이 불편하지만, 한 척 정도의 지폐는 자루에 넣어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변통 할 수 있고, 관리와 상인에게서 또한 시행되지 않을 수 없다. 장덕경은 지폐와 동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신비한 힘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하여 군사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저것이 어찌 송원 시대에 시행된 것을 깊이 생각한 것이겠는가?(「財計」)

(e10.4.5) 중국에서 지폐는 당나라의 비전(飛錢)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명청 시대 상인들이 발행한 일종의 어음인 회표(會票)와 같은 것이었다. 지폐제도는 송나라에 이르러 소위 칭제(稱提)라는 국가적인 제도로 정착하여 시행되었다. 황종희는 그것이 유통기한을 두고 제조하여 본전을 갖추고 일정 기한마다 지폐를 회수하여 위조를 방지하면서 소금과 술 등으로 보조하게 하여, 지폐가 순에 있는 것이 현전(見錢)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한편 송나라를 이어 원나라가 지폐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을 따라서 관고(官庫)를 설치하고 금과 은을 교환하고 지폐제도를 공평하게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명나라에서는 지폐제도의 시행이 실패하였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관에 본전을 보관하지 않았고 또한 송대의 칭제

와 달리 명대의 보초고(寶鈔庫)는 오래된 지폐를 회수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황종희는 지폐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본전으로 돈궤미[錢緡]를 관에 보관하고 지폐를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폐기하며 상세의 납세 등을 지폐로 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황종희는 지폐가 가벼워 휴대에 편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동전과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11. 경제 개선의 요건과 공상개본론

(e11.1) 명청 교체기에는 국가 운영의 제도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심과 풍속을 국가 안정의 근본으로 삼아 그것을 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교(禮敎)와 맞물려 있는 민간의 풍속의 교화가 명청 교체기에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된 이유는 명나라의 급속한 붕괴와 만주족의 정복을 거친 중국에서 예론 또는 예교가 만주인의 정치적 문화적 역압에 맞서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였기 때문이다.(李勛相, 2003) 예컨대 고염무는 천하의 치란이 풍속에 달려있다고 여겨 사유(四維 : 禮義廉恥)와 절의의 실천을 중시하고 동한 아래의 청의(淸議)와 향론(鄉論)을 찬미하면서 그것에 의거한 풍속의 혁신을 주장하였고, 안이학파는 풍속의 쇠퇴를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이론적 지식이나 정치개혁의 모색보다 천하의 인심과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 교육을 강조하였다. 절동사학(浙東史學)의 선구자로서 황종희가 철학사뿐만 아니라 명사(明史)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고 저술을 펴내면서 역사학에 힘쓴 것도 단순한 경제지식을 넘어 역사 기록을 통해 천하의 도덕적 질서와 인심·풍속을 정화하려는 실천적 의지의 표출이라고 한다. (조병한, 1989) 실제로 황종희는 민간의 습속 개선과 미신의 탈피 및 사치한 생활의 방지 등을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백성의 생활을 풍요

롭게 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민간의 습속은 주로 혼례와 장례에서의 불필요한 낭비를 말하고, 미신은 승려의 불사와 무당의 푸닥거리를 가리키며, 사치한 생활이란 광대와 술집과 화려한 옷가게에 재화를 들이는 것을 지칭한다. 황종희에 따르면, 이것들은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막대한 재화를 소모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학교 교육을 강화하여 혼례와 장례 등의 대사를 모두 예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하고 무당과 중을 축출하는 것이며, 말단적인 방법은 광대와 술집을 금지하고 인민의 생활에 절실하지 않은 사치품의 유통을 막는 것이다.

(e11.2) 황종희는 전통적인 농본사상을 넘어서서 수공업과 상업도 산업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공상개본론’(工商皆本論)을 제창하였다. 오랫동안 농경사회로 유지되어 온 중국 전통시대에는 농업이 근본(本)이고 상업과 수공업(工商)은 지엽 말단적인 것(末)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 잉여 생산물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상업적인 교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씨춘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인과 상인에 대비되는 농민의 보수성과 순종성에 대한 높은 평가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하여 농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공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상업적인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황종희가 수공업과 상업도 다 산업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난 명대 후반 아래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명이대방록』의 첫머리에서 제시한 바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체라는 관념, 즉 “태어나면서 사람은 각기 사적이고 각기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有生之初，人各自私也，人各自利也]라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의 긍정을 통해 이익의 추구를 긍정하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근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혹자는 황종희의 ‘공상

개본론’에서 근대적 사유의 짙을 발견하기도 한다.

## 11.1 경제 개선의 요건

(q11.1.1)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그 부세를 가볍게 해도 민간의 습속이 제거되지 않고 미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치한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백성은 여전히 부유해질 수 없다. 무엇을 습속이라고 하는가? 길흉의 예가 이미 없어졌으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라고 한다. 혼례에서의 장롱·의장·연회가 그것이며, 상사(喪事)에서의 함염(含殮)·제사·불사·연회·추령(芻靈)이 그것이다. 부자는 그것으로 자만하고, 가난한 자는 그것을 힘들어한다. 무엇을 미신이라고 하는가? 불교의 중이요 무속의 무당이다. 중의 집, 중의 음식, 중의 일을 돌보는 역사(役事)가 있어서 무릇 중의 생활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중은 마침내 백성의 생업을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 무당은 하나이나, 종이돈[楮錢]과 향촌에 돈을 들여서 무당을 위하고, 음식을 만들어 무당을 위하고, 노래하고 퍼리를 불고 춤추는 데 보태서 무당을 위한다. 무릇 번잡한 푸닥거리[齋蘸祈賽]에 사용되는 것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무당이 백성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무엇을 사치라고 하는가? 그 심한 것은 광대요 술집이요 화려한 웃가게이다. 광대의 비용은 하루 저녁에 일반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고, 술집의 비용은 한 끼에 1년의 식비에 벼금가고, 웃가게의 비용은 한 별에 10명의 장정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스리는 근본은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길흉을 하나같이 예에 따라 하게 하고, 무당과 중을 쫓아내고, 내가 말하는 학교의 교육이 밝혀진 이후에 가능하다. 그것을 다스리는 말단은 광대를 금하고 술집을 금하고 포백 이외에는 모두 금하는 것이다.(「財計」)

(e11.1.2) 황종희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백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조건으로 민간의 습속 개선과 미신의 탈피 및 사치한 생활의 방지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의 습속은 주로 혼례와 장례에서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리킨다. 미신은 불교 승려의 불사와 무당의 푸닥거리를 가리키며, 그로 인해 막대한 재화가 소모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

고 사치한 생활이란 광대와 술집과 화려한 옷에 재화를 소모하는 것을 가리킨다. 황종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학교 교육을 확대 강화시켜 혼례와 장례 등의 대사를 모두 예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하고 무당과 중을 축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단적인 방법은 광대와 술집을 금지하고 인민의 생활에 절실하지 않은 사치품의 유통을 막는 것이다. 추령(芻靈)은 장사지낼 때 짚으로 사람과 말의 모형(草人·草馬)을 만들어 함께 매장하는 것이다. 함(含)은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과 쌀 및 패물(珠玉米貝)을 물리는 것이고, 염(殮)은 입관하는 것이다. 재(齋)는 제사 전에 재계하는 것, 잠(斂)은 제사 지내는 것, 기(祈)는 천지신령에게 기도하는 것, 새(賽)는 의장(儀仗)·고악(鼓樂)·잡희(雜戲) 등을 사용하여 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 11.2 공상개본론

(q11.2.1) 오늘날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시장에서는 열 가운데 아홉은 중을 위하여 물건을 팔고 무당을 위하여 물건을 팔고 광대를 위하여 물건을 팔고 신기하고 음란한 것을 위하여 물건을 팔고 있는 자들이어서, 모두 백성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절실하지 않은 것들이다. 하나같이 이것을 근절하면 또한 적어도 폐해로부터 구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옛날 성왕의 근본을 송상하고 말단을 억제하는[崇本抑末] 도리이다. 그런데 속된 학자들은 잘 살피지 못하고 수공업과 상업[工商]을 말단이라 여기며 망령되어 논하면서 그것을 억압한다. 생각건대 공인은 진실로 성왕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며, 상인 또한 그 길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니, 모두 근본인 것이다.(「財計」)

(e11.2.2) 두 번째 인용문에서 황종희는 전통적인 농본사상을 넘어서는 중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수공업과 상업도 산업의 근본이라는 주장, 이른바 ‘공상개본론’(工商皆本論)이 그것이다. 중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산업의 근본으로 보아왔다. 『여씨춘추』에서는 농민의 보수성과 순종성을 칭송하면

서 그에 대비되는 상인과 공인의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농민은 토지에 긴박되어 있어서 쉽게 사는 곳을 옮길 수도 없거니와 또한 잘 옮기려 하지 않으며, 농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영위되는 것이므로 농민은 질서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상인은 쉽게 옮겨 다니고, 공인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말청초에는 도시경제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적 공장제수공업이 출현하였고, 이를 역사학계에서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부른다. 황종희가 수공업과 상업도 다 산업의 근본이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명이대방록』의 첫머리에서 제시한 바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적인 욕구체라는 사고, 즉 “태어나면서 사람은 각기 사적이고 각기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有生之初，人各自私也，人各自利也]라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12. 군사 제도

(e12.1) 황종희는 국가경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명이대방록』에서 역대 왕조의 흥망, 특히 명 왕조의 멸망과 관련지어 군사제도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청나라 군대가 중원에 진출하여 남하하자 고향에서 가산을 기울여 수백명을 규합하여 ‘세충영’ (世忠營)이라는 반청 무장단체를 건립하여 저항하고 또한 명이 망한 후 청에 저항하며 건립한 남명의 좌부도어사로서 활동하기도 한 황종희로서는, 군사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황종희에 따르면, 명대의 군사제도는 위소(衛所)에서 소모(召募)를 거쳐 둔병(屯兵)으로 변하였는데, 각기 일정한 폐단을 갖고 있었다. 위소의 폐단은 병농(兵農)의 분리와 군병(軍兵)의 분리로 백성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고, 소모의 폐단은 병사들의 전투의지가 약하여 실제 전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며, 둔병의 폐단은 기강이 해이되어 명령이 서지 않고 적과 거래하고 나아가 배반하는 것이다. 황종희는 군사제도의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명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도 명청 교체기 명조의 멸망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운영방식을 모색하는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황종희는 바로 그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e12.2) 한편 황종희는 위소가 둔병과 표리를 이루어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추고 비용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장점이 있어 본래 좋은 제도이지만,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후에 쇠퇴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경작 인구의 감소와 둔량의 부족으로 부세가 증대하여 막대한 양의 양식을 운송해야 했던 것이다. 둘째, 윤번제 근무자가 자기 지역과 중앙에서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셋째, 위소제 하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변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병사를 징발해야 하였는데, 징발된 병사는 이전에 있던 지역의 급여와 끊겨간 지역의 급여를 이중으로 수혜하고 또한 이전의 지역에 필요한 병사를 보충할 경우 그 병사에 대한 급여를 지출해야 하므로, 결국 한 병사에게 세 명 분의 급여를 지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황종희는 병사의 차출과 부양에 있어 위소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병사의 차출과 부양에 있어 황종희는 인구 수에 의거한 차출[取兵於口]과 호구에 기초한 부양[養兵於戶]라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 원칙에 따르면 지역 자체 내에서 군대의 차출과 부양을 감당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는 병농(兵民)의 분리로 인하여 심화되었던 명대 군대의 폐해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그가 국가 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 표방한 분권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의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12.3) 사대부 중심의 군대 운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황종희는 장

군과 병사의 차이를 지적하고 문무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장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훌륭한 병사는 마치 무기나 갑옷과 같은 부류처럼 단지 장군이 잘 활용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종래에 병사를 발탁하면서 완력(혹은 무력)이나 계략[陰謀]을 중시하는 입장에 비판하면서, 전투력이 뛰어난 무인 내지 병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건장하고 용감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을 장군으로 기용하려는 것은 마치 뛰어난 무기와 견고한 갑옷이 사람의 힘을 벌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저 완력과 전투능력에 의지하는 병사에 의존하는 군대는 정작 국난의 위기에 처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황종희는 군대의 핵심이 장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장군은 바로 사인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로 나아간다. 군자는 지시하고 소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군자와 소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유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군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군에 국가사회(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천하’)의 안위 내지 치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는(바로 사인의 ‘우환의식’을 가리킨다) 사대부가 기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12.4) 군대가 유교적 이념과 도덕성으로 무장한 사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역’이라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역이라는 문제는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명을 배반하고 청에 협조하여 청군의 입관을 도와 명을 멸망시킨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명청교체기에 중대한 시대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황종희는 반역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뢰성 내지 일관성이란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반역의 방지는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반역할 수 없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는 반역할 수 없는 사람이란 두목이 말하는 ‘덕성과 능력이 있고 다문박식한 선비’ [聖賢才能多聞博識之士]라고 하여, 사회계층상으로는 신

사충이고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사인(土人)을 의미하는 유교적 지식인이 국가사회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황종희에 따르면, 유교적 지식인이 도덕성과 이념으로 무장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반면, 힘과 계략에 기반한 무인은 상황에 따라서는 적국에 쉽게 굴복하고 협조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황종희는 역대에 문무를 염격하게 구별하고 문관과 무관을 차별하는 전통을 비판하면서, 사인 내지 사대부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군사제도에 관한 황종희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명나라의 멸망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을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한 명말 청초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12.1 명대의 군사 제도

(q12.1.1) 명대의 병제는 세 번 변하였다. 위소(衛所)의 병제가 변하여 소모(召募)가 되고, 숭정홍광 연간에 이르러 또 변하여 대장둔병(大將屯兵)이 되었다. 위소의 폐단은 관군 313만 8,300명이 모두 백성에게 식량을 의존한 것이다. 서북지방의 국경 병사 30만 명 외에 외침을 막고 난을 평정하기 위해 부득불 따로 병사를 두어 양성해야 했다. 병사를 농업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한 일인데, 더욱이 또한 군을 병에서 분리시켰으니, 이는 한 천하의 백성이 두 천하의 병사를 기르는 것이다. 소모의 폐단은 예컨대 동쪽에서 전란이 일어났을 때, 안가·행량·마필·갑장의 비용이 수백만 금에 달하고, 병사 10여만 명이 있어도 3만 명의 선발된 이들을 당하지 못하여 천하가 이미 소동이 난 것과 같은 것이다. 대장 둔병의 폐단은 무리를 이끌고 자위하는 데 적과 더불어 거래를 하고, 약탈하고 살인하여도 문책하지 못하며, 군주가 명령하여 불러도 이행하지 않으며, 내가 양성한 군사를 이끌고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명나라가 멸망한 까닭이 이 세 가지에 있지 않은가?(「兵制」 1)

(q12.1.2)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위소의 병제가 소모제로 변한 것은 부득이해서 그렇게 된 것이며, 소모제가 대장 둔병제로 변한 것은 추세가 그랬던 것이며, 제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원래 위소는 그것이 제도로서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진의 병사가 하나의 진의 지역

을 방어하는 데 충분하고, 하나의 군대의 경작지가 하나의 군대의 비용을  
넉넉히 충당하여, 위소와 둔전이 서로 겉과 속이 되는 것이다. 그 후 군  
대가 줄고 경작지에 사람이 없어 둔전에서 생산된 양식이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 객병은 늘었는데 앓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많아 둔량이 부족  
했던 것이다. 이에 일반 백성들이 생산한 양식의 공출을 늘리고, 또 염  
량, 즉 염세를 늘리고, 또 각 지방에서 중앙으로 운송하는 양식을 늘리면  
서, 위소의 제도가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다. 북경을 도읍으로 정한 이후  
매년 배로 실어나른 곡식이 4백만 석이다. 12명의 총령이 위 140기, 군대  
12만 9800명을 통솔하며 1년씩 교대로 당번이 되어 날랐다. 월량이 있고,  
행량이 있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양식을 겸하여 가진 것이다. 이는 매  
년 25만 3600명이 경작하지 않고 식량만 축내는 군대이다. 이것이 위소제  
가 운송 문제로 없어졌다는 것이다. 중도·대녕·산동하남 부근의 위소는 윤  
번제로 돌아가며 중앙에 올라가 조련하였다. 봄에 근무하는 경우는 3월에  
가서 8월에 돌아왔고, 가을에는 9월부터 2월까지 근무하고 돌아왔다. (이  
들에게는) 월량이 있고 행량이 있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식량을 겸하였  
다. 매년 경작하지 않고 식량을 먹는 군인이 20여 만 명이다. 이것이 또 위  
소제가 중앙에 올라와서 조련하는 것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한 지  
역에 일이 있으면 각 지역의 군대를 징발하였는데, 징발에 응한 자는 이  
지역의 새로운 급여를 받았고, 그 가구는 또 각 지역에서 이전에 받던 급  
여를 (계속) 받았다. 구병이 돌아오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보충하지 않으  
면 안 된다. 한 명을 보충하면 또 한 명에 대한 새로운 급여를 더해야 한  
다. 이는 한 명의 병사에게 세 명분의 급여를 더해 주는 것이다. 위소제는  
여기에 이르러 무너지고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모두 말세의 폐단으  
로 애초에 그 제도가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兵制」)

(e12.1.3) 황종희는 세 번에 걸친 명대 군사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그  
폐단을 지적하면서 논하고 있다. 명대에는 위소(衛所)에서 소모(召募)를  
거쳐 둔병(屯兵)으로 군사제도가 변하였는데, 각각 나름의 장점이 있는  
동시에 또한 폐단도 있었다고 한다. 위소제는 중앙과 지방의 각 요새에  
설치한 세습의 군대이고, 소모는 모병제이며, 둔병은 국경을 수비하는  
군대인데 일부는 국경을 수비하고 일부는 황무지 개간에 종사하였다. 세  
습군대로서 위소제의 폐단은 병농(兵農)의 분리와 군병(軍兵)의 분리로

백성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고, 모병제인 소모제의 폐단은 병사들의 전투 의지가 약하여 실제 전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며, 둔병제의 폐단은 기강이 해이되어 명령이 서지 않고 적과 거래하고 나아가 배반하는 것이다. 황종희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군사제도의 면에서 볼 때 명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소모에 관하여 논하면서 거론한 안가(安家)는 전쟁에 나간 병사의 가족에 대한 급여이고, 월량(月糧)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행량(行糧)은 전쟁터에 나간 병사에게 지급하는 식량이며, 갑장(甲仗)은 병사에게 지급하는 무기와 장비를 가리킨다.

(e12.1.4) 군사제도의 변천이 시대적 추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고 각각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황종희는 위소가 둔병과 표리를 이루어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추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어 본래 좋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중에 위소제는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쇠퇴하였다고 한다. 첫째, 경작 인구의 감소와 둔량의 부족으로 부세가 증대하여 막대한 양의 양식을 운송해야 했던 것이다. 둘째, 윤번제 근무자가 자기 지역과 중앙에서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셋째, 위소제 하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군대가 필요한 변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병사를 징발해야 하였는데, 징발된 병사는 이전에 있던 지역의 급여와 옮겨간 지역의 급여를 이중으로 수혜하고 또한 이전의 지역에 필요한 병사를 보충할 경우 그 병사에 대한 급여를 지출해야 하므로, 결국 한 병사에게 세 명 분의 급여를 지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황종희는 이와 같이 위소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소제와 둔병제가 결합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12.2 병사의 차출 방안

(q12.2.1) 내가 생각하기에 천하의 병사는 마땅히 인구에서 취해야 한다. 천하의 병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호에서 취해야 한다. 인구에서 취할 경우 훈련할 때에는 50명 중 2명을 내고, 징발할 때는 50명

중 1명을 낸다. 호에서 취할 경우 징발된 병사는 10호에서 한 명을 부양하고, 훈련하는 병사는 부양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만일 만력 6년(1578)의 호구 수로 말하자면 인구 6,069만 2,856명이니, 병사 121만 3,857명을 얻을 수 있다. 호구가 1,062만 1,436가구이니, 병사 106만 2,143명을 부양 할 수 있다. 50명의 인구 중 한 명을 낸다면 그 일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10가구에서 한 사람을 부양한다면, 그 비용은 곤란한 것이 아니다. 천하에 병사가 120여 만 명이 차도, 또한 적은 것이 아니다. 군주가 있는 지역에서는 20만 명이 교대로 방어 임무를 맡아도, 또한 천리를 넘지 않는다. 가령 도읍을 금릉에 둘 것 같으면 도성을 방어하는 자는 단지 금릉에 소속된 군읍에서 다 충당되어 다른 성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금릉의 인구가 1,050만 2,651명이니 뛰어난 병사 21만 500명을 얻을 수 있다. 10만 명으로 각각의 군읍을 지키게 하고, 10만 명으로 도성을 지키게 한다. 다음 해에는 군읍을 지키던 사람들이 도성에 들어와 지키고, 도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군읍을 지키러 돌아간다. 또 다음해에는 징발한 (병사를) 훈련하는 병사들과 함께 근무하게 한다. 징발되었던 사람은 급여를 중지하고 귀가시켜 훈련만 받게 한다. 50명 중 한 명을 내고, 또 4년이 지나야 비로소 한 번 복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 해아린다면 20세에 군에 입대하였다가 50세에 군대를 나와 시종 30년간 단지 일곱 차례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천리 밖을 나가지 않으니, 그 병사가 맡은 것도 지나치게 힘든 것이 아니다. 국가에 양병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 나라는 부유해진다. 군대에 늙거나 어린 사병이 없으면 군대는 강하다. 군주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군대와 백성이 크게 분리되어서 당송 아래로 이보다 좋은 저런 제도가 있었으나 군대의 폐해를 당한 것은 명대와 같은 때가 없었다.(「兵制」)

(e12.2.2) 황종희는 병사의 차출과 부양의 원칙으로 차출은 인구 수에 의거하고 부양은 호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면 지역 자체 내에서 군대의 차출과 부양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부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개개인의 복무 차원에서 보면 30년 동안 7차례 순환 근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세습제도에서처럼 노약자가 군대에 복무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병농(兵民)의 분리로 인하여 극심하게 드러났던 명대

군대의 폐해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황종희가 군사 제도에 있어서 병사의 차출과 부양을 지역 자체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그가 국가 경영의 새로운 청사진에서 표방하는 분권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2.3 장군과 병사의 차이

(q12.3.1) 숙손통(叔孫通)이 오로지 장군의 목을 베고서 기를 빼앗은 자만을 말하고 유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때 한나라 왕은 이미 한신(韓信)을 장군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저 숙손통이 진언하는 자는 머리를 가지고 와서 머리와 다투고 힘을 가지고 힘과 싸우는 병사일 따름이다. 어찌 장군을 말하겠는가? 그러면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술에 뛰어난 자는 귀하지 않은가?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이 뛰어난 것은 사람에게는 마치 정교하고 치밀하며 견고하고 예리한 것이 무기와 갑옷에 있는 것과 같다. 활은 반드시 옷칠한 것이 없어야 하고, 대장장이는 반드시 원호(援胡)에 대칭의 균형을 잡고자 하며, 갑옷은 반드시 아래위가 모두 견고하여야 하며, 사람은 반드시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에 뛰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그 도리가 하나이다. 무기와 갑옷의 정교함과 치밀함, 견고함과 예리함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의 건강함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에 뛰어남을 이용하는 것은 장군이다. 지금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에 뛰어난 사람을 장군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정교하고 치밀하고 견고하고 정밀한 무기와 갑옷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도 싸울 수 있을 것이다.(「兵制」)

(q12.3.2) 학자들이 오랫동안 장군이 되지 않은 이래 병사를 기용하는 시각은 두 가지다. 첫째, 힘을 존중하는 발상으로서, 건강한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음흉한 모사로써 남을 위험한 데 빠뜨리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창을 들고 방패로 막고 자루가 긴 창을 세우는 것은 사졸의 일이요, 장수의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힘으로 소문이 났어도 열 사람이 덤비면 그를 이긴다. 전쟁이 일어난 아래 도시나 농촌 어디서나 힘이 남보다 조금 뛰어난 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를 기사(奇士)로 대우하며 마침내 일개 병졸로 기용하지 않는다.(「兵制」)

(e12.3.3) 군사 제도의 문제에서 황종희는 문민 통제와 사대부 중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장군과 병사의 차이를 지적하고 문무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장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숙손통을 진언을 예로 들어 병사란 단지 “머리를 가지고 와서 머리와 다투고 힘을 가지고 힘과 싸우는” 존재일 따름이라고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훌륭한 병사는 마치 무기나 갑옷과 같은 부류처럼 장군이 잘 활용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거하여 황종희는 종래에 완력(혹은 무력)의 발휘나 계략[陰謀]이라는 기준에 따라 병사를 기용하는 입장을 비판하였다. 이는 전투력이 뛰어난 무인 내지 병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군대는 유교적 이념과 도덕성으로 무장한 사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 12.4 장군의 중요성

(q12.4.1) 무신에게 중요한 것은 장군이다. 탕왕이 결을 정벌할 때 이 윤이 장군이 되었고, 무왕이 상나라에 입성할 때 태공이 장군이 되었고, 진나라가 육군을 설치할 때 그 장군이 된 자는 모두 육경에서 선발되었다. 명나라가 비록 그 제도를 상실하여 총병(總兵)에 모두 무인을 기용하였으나, 반드시 독순 혹은 경략의 제어를 받게 하였다. 독무·경략은 장군이고, 총병은 편비이다. 총병에게 장군의 명목은 있으나, 장군의 실질은 없다. 이것 또한 불가한데, 하물며 그에게 [장군의] 실질을 주는 것이 라!(「兵制」)

(q12.4.2) 그러면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술에 뛰어난 자는 귀하지 않은가?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이 뛰어난 것은 사람에게는 마치 정교하고 치밀하며 견고하고 예리한 것이 무기와 갑옷에 있는 것과 같다. 활은 반드시 옻칠한 것이 없어야 하고, 대장장이는 반드시 원호(援胡)에 대칭의 균형을 잡고자 하며, 갑옷은 반드시 아래위가 모두 견고하여야 하며, 사람은 반드시 건장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에 뛰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그 도리가 하나이다. 무기와 갑옷의 정

교함과 치밀함, 견고함과 예리함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의 건장함과 죽음을 가볍게 여김과 무술에 뛰어남을 이용하는 것은 장군이다. 지금 건강하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무술에 뛰어난 사람을 장군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정교하고 치밀하고 견고하고 정밀한 무기와 갑옷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도 싸울 수 있을 것이다.(「兵制」)

(e12.4.3) 병사란 마치 무기나 갑옷처럼 장군이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황종희는 장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마디로 무신의 핵심은 장군이라는 것이다. 그는 역사상 장군으로 활약했던 이윤이나 강태공 등이 일개 무신이 아니라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건강하고 용감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을 장군으로 기용하려는 것은 마치 뛰어난 무기와 견고한 갑옷이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 12.5 문무의 통일과 장군의 임용

(q12.5.1) 국가가 평안할 때 무인으로 장군에 이른 자는 문신을 방문하여 간섭을 받아야 했으니 계급의 차이가 심하였다. 또한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하고 왼손은 칼을 잡고 오른손은 활과 화살을 쥐고 모자를 쓰고 군화를 신고 빠른 걸음으로 조정에 들어가 예를 갖추었으며 그 문 앞에서는 스스로 주구(走狗)라 칭하고 물러서서 노예들과 나란히 하였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 천자에게 진언하는 자가 “오늘날 무신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공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종이 장군을 임명하고 문신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2,3년이 못되어 무신들이 민중을 끼고 적과 내통하고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자성이 북경에 침입했을 때 삼보에서 청·제에 이르는 모든 진이 즐비하게 군영을 설치하고 천자가 그들을 제후로 봉하여 환심을 사려 하였으나, 마침내는 화살 하나라도 원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아, 의종이 무신을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이와 같도다!(「兵制」)

(q12.5.2)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사직을 보전하는 것을 군자의 일이다. 지시를 받아서 힘쓰는 것은 소인의 일이다. 국가사직의 일이 어디에 장군

의 일보다 큰 것이 있는가? 소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근심하게 한다고 어찌 군자보다 귀하다고 하겠는가? 지금 천하의 대업을 소인에게 맡긴다면 무신을 중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신을 경시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의종과 함께 죽음을 따른 사람은 모두 문신이다. 그 때 하나의 군대를 주어 적과 마주하다 죽게 되어도 10명 중 한둘은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이 파괴되는 날 자살하기에 이르렀을까? 그런 까닭에 군현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모두 문신과 유생이다. 그 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하였다면 승부 또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어찌 시정의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여 잔혹하게 죽게 하였는가?(「兵制」)

(e12.5.3) 공자가 문화 통치를 표방한 아래 문무의 차별은 중국사에서 오랜 전통이 되었다. 황종희는 그 전통에 의거하여 명대에 무신을 차별하는 관례를 비판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의 존중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의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저 완력과 전투 능력에 의지하는 병사에 의존하는 군대는 정작 국난의 위기에 처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된 인식이다. 또한 군자는 지시하고 소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군자와 소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유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국가의 유지에 필수적인 군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군에 국가사회(전통적인 표현으로는 ‘천하’)의 안위 내지 치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는(바로 사인의 ‘우환의식을 가리킨다) 사대부가 기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병사와 장군의 차이에 대한 인식 및 장군의 중요성, 그리고 군대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교적 이념과 도덕성으로 무장한 사인(土人)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12.6 반역의 방지

(q12.6.1) 천하에 반역할 수 없는 사람은 있어도, 반역할 수 없는 법은 없었다. 두목(杜牧)이 말한 덕성과 능력이 있고 다문박식한 선비는 반역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돼지나 개 같은 무리는 예의를 모르고 노략질을 좋아하며 거동이 가볍다. 분위기가 이완되면 나의 조절과 통제를 받고 장부

에 기재된 재물에 신경을 잘 기울인다. 분위기가 긴장되면 병사를 이끌고 스스로 엄중하여져서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저절로 아래위가 정해진다.(「兵制」)

(ql2.6.2) 만력(萬曆, 1563-1620) 아래 장수가 실패를 가리고 공적을 꾸미면서 군주를 속이는 것이 어디엔들 이르지 않았겠는가? 역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하겠다. 이것은 단지 군주에게만 그렇게 하였고 적들에게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패망한 까닭은 힘과 계략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무를 합하여 하나로 하고 학자들은 병서와 전쟁의 책략이 자신의 분수 밖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익혀야 하며, 지나치게 고상한 논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신은 군주와 친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것이 무를 사용하는 근본임을 알고, 난폭함을 능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반역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兵制」)

(ql2.6.3) 당송 아래 문무가 나뉘어 두 갈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직관은 안에서는 추밀원, 밖에서는 곤수(閻帥)-주군(州軍)이 여전히 문관과 무관을 섞어 기용하였다. 오직 명나라만이 확고히 구분되어 서로 출입이 없었다. 문신의 독무는 비록 군사에 관여하지만 조절하고 통제만 하였지 병사와는 떨어져 종속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군(야전군을 가리킨다)에 종사하는 자는 군의 회계업무를 볼 수 없고, 회계업무를 맡은 자는 군에 종사 할 수 없었다.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는 병사를 조련할 수 없었고, 병사를 조련하는 사람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었다. 바야흐로 개의 이빨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형세상 반역이 불가능하였다.(「兵制」)

(e12.6.4) 황종희는 명나라가 청에 멸망할 당시에 자신의 스승인 유종주(劉宗周, 1578-1645)와 같은 사람이 깊어죽음으로써 명조에 대한 충성을 천하에 드러낸 반면에, 오삼계를 비롯한 군인과 여타의 많은 사람들이 청에 굽복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던 탓으로, 반역이라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역의 문제는 결국 능력이 아니라 신뢰성 내지 일관성이라는 도덕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황종희는 반역의 방지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하면서 “다스리는 법제가 구비된 이후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有治法而後有治人]이라고 선언한 황종희의 입장과 얼핏 모순되는 듯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학자로서 사대부 중심의 국가운영을 도모하는 황종희의 기본원칙에서 귀결된 인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반역할 수 없는 사람이란 두목이 말하는 이른바 ‘덕성과 능력이 있고 다문박식한 선비’ [聖賢才能多聞博識之士]이라고 하여, 유교적 지식인(사회계층상으로는 신사층이고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士人이다) 중심의 사고를 드러낸다. 황종희에 의하면, 유교적 지식인이 도덕성과 이념으로 무장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반면, 힘과 계략에 기반한 무인은 상황에 따라서는 적국에 쉽게 굴복하고 협조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황종희는 역대에 문무를 염격하게 구별하고 문관과 무관을 차별하는 전통을 비판하면서, 사인 내지 사대부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 13. 수도

(e13.1) 황종희가 수도(首都)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역시 명나라의 멸망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경영 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하는 명청 교체기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북경 수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경이 수도로서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황종희는 명의 멸망이 북경이 수도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며, 북경을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역대에 누차 수난을 겪었다고 주장하였다. 황종희에 따르면, 북경은 우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도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물산의 중심지인 강남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물자의 운송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폐단도 있다. 송대 이전에는 북방이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주로 북방에 도읍을 정하였지만, 송대 이후에는 강남이 풍요로워진 물산을 바탕으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 등장한다. 이러한 형세의 변화에 근거하여 황종희는 남경(당시에는 금릉)을 수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 북경은 대문이고 남경이 창고와 장롱이므로, 대문은 하인에게 지키게 하고 창고와 장롱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의거하여, 남경을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의 수도가 과거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대외관계와 대내적 물자 유통이라는 관점을 주요한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는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내지 과밀화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내지 지방 분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도에 관한 황종희의 논의에서는 자신의 사회정치사상에서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분권의 이념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다. 대신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의 문제와 물산의 중심지와 물자의 운송, 그리고 교화와 풍속의 순화가 활발한 문화적 중심지라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3.1 북경 수도의 문제점

(q13.1.1) 어떤 사람이 북경이 갑자기 망하였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망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겠지만, 수도의 건설을 잘못 생각한 데 있다고 하겠다. 국가의 명운이 중도에 위태로운 것은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는가! 안록산의 난으로 현종(712-41)은 촉 땅으로 피난하였고, 토번의 난이 있자 대종(762-79)은 섬주로 도피하였고, 주차의 난이 일어나자 덕종(780-805)은 봉천으로 도망하였다. 변경은 중원에서 사통팔달의 곳으로 만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형세로 보아 막기 어렵다. 이자성이 북경을 포위하자 의종(1628-44)도 남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북쪽에 고립되어 연락이 끊겨, 한 때 탈출할 수 없었고 탈출하여도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직을 등지고 자살하였다. 도읍이 북경이 아니라 해도, 어찌 삼종(현종·대종·덕종)의 일을 겪지 않았겠는가!(「建都」)

(q13.1.2) 혹자는 영락 시대부터 도읍을 북경에 설치하고 14대를 거쳤

는데 어찌 일대의 실수로 마침내 처음의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겠는가고 말한다. 옛날 사람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것으로 일삼고 천하를 잃는 것은 일삼지 않았다. 명나라가 도읍을 북경에 설치한 지 200년에 불과한데, 영종(1436-49)은 토목보에서 포로가 되었고, 무종(1506-21)은 양화에서 곤경을 당하였고, 경태(1450-56) 초에는 수도가 포위되었고, 가정(1522-66) 28년에도 포위되었고, 43년에는 변경 민족이 난입하였고, 숭정(1628-44) 연간에는 수도가 매년 계엄 상태였다. 윗사람이나 아래사람의 정신이 외적의 침입에 지치고 날마다 천하를 잃거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으니, 예약정교를 죽히 볼 것이 있었겠는가? 강남에 있는 백성의 운명은 화물운송으로 끊어지고, 대부(大府)의 금전은 하천에서 다 써버렸는데, 모두 도읍을 북경에 둔 해악 때문이다.(「建都」)

(e13.1.3) 황종희는 여기서 명 왕조의 멸망을 북경을 수도로 삼은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북경을 수도로 하였기 때문에 겪은 역대의 수난을 거론하면서 북경이 수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북경이 수도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명대에 들어 북경을 수도로 정하고서 14대를 거쳤기 때문에 명나라가 북경을 도읍으로 삼은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외적의 침입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위아래가 모두 잘 다스리려는 생각보다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당시 물산의 중심지가 강남인데 수도를 북경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강남의 물산을 북방의 북경으로 운송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한다. 명의 태조 주원장은 1368년 남경에 명조를 건립하고 원의 수도 북경을 정복한 뒤 북평부(北平府)로 고쳤다. 1399년 연왕(燕王) 주체(朱棣)가 정변을 일으켜 남경을 정복하고 재위를 강탈한 뒤, 1421년 북경으로 천도하고 남경을 유도(留都)라 하였다. 이후 남경을 남도(南都)라 하고, 상대적으로 북경은 북도(北都)라고 불렸다. 따라서 앞의 인용문 서두의 북경(北都)은 명 왕조를 상징한다.

## 13.2 남경 수도의 적절성

(ql3.2.1) 혹자는 왕자가 일어나면 장차 어디에 도읍을 정해야 하는가 묻는다. 나는 금릉(金陵, 지금의 남경)이라고 말하겠다. 혹자는 옛날에 뛰어난 지세를 말하는 이들은 다 관중(關中, 지금의 서안)을 최고로 여기고 금릉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이냐고 묻는다. 나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진한의 시대에는 관중이 풍속과 교화 방면의 좋은 기운이 모이고 농토가 개간되고 인물과 물자가 번성하였다. 오초(吳楚)의 지역은 오랑캐라는 칭호로부터 갓 벗어나 풍속과 교화 방면의 기운이 박약하기 때문에 금릉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지금의 관중 지방은 인물과 물자가 오회(吳會)에 미치지 못한 지 오래 되었다. 또한 유적들의 난을 겪으면서 굴뚝에 연기나는 집은 열에 두셋도 없다. 인구가 늘어나 물자를 축적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남지방의 곡식과 비단이 천하에 수송되어 천하에 오회가 있다는 것은 마치 부잣집에 창고와 장롱이 있는 것과 같다. 이제 돈 많은 부자의 아들이라면 창고와 장롱은 반드시 몸소 지키고 집은 대문은 하인에게 맡길 것이다. 금릉을 버리고 도읍을 삼지 않는 것은 마치 창고와 장롱을 하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으며, 옛날에 도읍을 북경에 둔 것은 몸소 집의 대문을 지키는 것과 같다. 천하를 다스리면서 그 지혜가 돈 많은 부자의 아들만 같이 못해서야 되겠는가?(「建都」)

(e13.2.2) 송대 이전에는 북방이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따라서 주로 북방에 도읍을 정하였다. 전국시대 초나라 위왕(威王)은 금릉을 도읍으로 삼았고, 진(秦) 나라는 함양(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동쪽), 그리고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은 각기 장안(지금의 서안)과 낙양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당나라는 장안을 도읍으로 하였다. 송대 이후 강남이 개발되면서 물산이 풍부해지고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황종회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북방과 남방의 형세 변화에 근거하여 남경을 도읍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황종회의 비유에 의하면, 남경이 창고와 장롱이라면 북경은 대문이다. 따라서 대문은 하인에게 지키게 하고 창고와 장롱은 본인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남경을 도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오초(吳楚)는 오대 이후 장강 중하류 및 남방 지역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오회(吳會)는 진(秦) 나라의 회계군(會稽郡)을 후한 때 오(吳)와 회(會)로 나눈 데서 연유하여 북방의 관중(關中) 지역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강남을 가리킨다. 대부(大府)는 일반적으로 상급관청을 가리킨다. 『주례』에 의하면 원래 공납물(貢賦)의 수납과 관리를 맡은 관리다. 한당 대에는 승상부(丞相府)와 절사부(節使府)를 모두 대부라 하였다.

## 14. 국경 수비

(e14.1) 봉건제와 군현제는 중국 사대부의 전통적 정치제도론에서 역사 단계를 가르는 척도로 기능하여 왔다. 봉건제가 삼대 성왕의 이상적인 제도를 상징한다면, 군현제는 전국 시대 아래 삼대의 제도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의 반영으로 간주되었다. 명청 교체기에는 명의 멸망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정치체제 면에서 그것은 전제군주제에 대한 제약과 수정이라는 과제로 나타났고, 거기서는 공천하(公天下)와 사천하(私天下)가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당시에는 군주제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현실론과 개혁론이 대립하였다. 전자가 명청의 전제군주 체제를 인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명청의 체제를 비판 내지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바로 공사(公私)의 개념에서 입장이 같렸다. 개혁론은 전제군주제의 수정 과정에서 봉건론을 지지하였는데, 정말 근대 개혁운동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지방자치론이나 의회론으로 연결되었다. 봉건과 군현의 문제에서는 인민의 이익(民利)과 왕조, 법치와 인치, 복고와 변법을 둘러싸고 공사를 준거로 하여 논의가 전개되었다. 고염무는 봉건과 군현의 결함이 각기 분권(分權)과 집권(集權)에 있으며, 현실의 군현제는 전제(專制)와 사천하(私天下)의 폐단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봉건에서 군현으로의 전환은 시세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서 봉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결 방법은 봉건제의 정신을 군현제에 담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회피제(지방관을 본향에 임용하지 않는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관의 조건부 세습(久任)과 예하 향관의 자체 선임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공천하의 관념에 의거한 군현제 개선론으로서, 전통적인 민본주의에 입각하면서도 복고와 시세라는 두 관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e14.2) 황종희는 삼대의 법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공천하(公天下)의 이념에 기반하여 복고적 봉건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적 상황[時勢]의 변화를 감안하여 봉건과 군현의 절충형을 제시하여, 완전한 봉건제의 부활을 추구한 안원의 이상주의적 복고론과 대비된다. 황종희에 의하면, 봉건제는 각 지역이 서로 대립하면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벌여 상호 병탄함으로써 중앙에서 천자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폐단이 있고, 군현제는 봉건제에서처럼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두어 방어하지 않으므로 국경의 방어가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황종희는 봉건제가 군현제와 마찬가지로 폐단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봉건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으로 방진의 회복을 제안하였다. 그는 먼저 당나라가 지역 호족의 발호에 의해 망했다는 관점의 다른 표현으로 당나라가 방진에 의해 망했다는 주장을 비판한 다음, 방진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종희에 따르면, 당나라는 방진에 기반한 반란을 겪은 후에 방진의 수는 늘리고 규모는 줄임으로써 오히려 강력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함으로써 망했다고 한다. 즉 방진이 강해서가 아니라 방진이 약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황종희는 방진의 운용에 있어 재정과 군대의 관리, 세금(토지세, 상세)의 징수, 정교의 시행, 관원의 임용에서의 자율성, 공물(1년 1회)과 조건(3년 1회) 및 세습의 허용을 포함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방진의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황종희가 제시한 방진의 운용 방안은 한 마디로 각 지역에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 14.1 군현제와 봉건제의 폐단

(q14.1.1) 대서 고금의 변화는 진(秦)에 이르러 한 번 다하고, 원(元)에 이르러 또 한 번 다하였다. 이 두 번의 극심한 변동을 겪은 이후에는, 옛 성왕이 측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경영하던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참으로 멀리 생각하고 깊이 살펴보아 하나하나 온전히 변혁하여 정전과 봉건과 학교와 군사의 옛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비록 소소하게 개혁한다고 해도 백성들의 괴로움은 끝내 그칠 때가 없을 것이다.(「原法」)

(q14.1.2) 봉건제의 폐단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병탄해서 천자가 정치와 교화를 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군현제의 폐단은 국경지역이 약해서 고난이 그칠 때가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단을 제거하고 두 제도를 병행하여 어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국경지역의 방진이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봉건제는 먼 과거의 일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르자면, 방진(方鎮)을 회복시켜야 한다.(「方鎮」)

(e14.1.3) 황종희는 원칙적으로는 삼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봉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현제와 마찬가지로 봉건제에도 폐단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부활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봉건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으로 방진의 회복을 제안하고 있다. 황종희에 의하면, 봉건제의 폐단은 각 지역이 서로 대립하면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벌여 상호 병탄함으로써 중앙에서 천자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군현제는 봉건제에서처럼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두어 방어하지 않으므로 국경의 방어가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한다. 이는 봉건과 군현의 결함이 각기 분권(分權)과 집권(集權)에 있다는 고염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4.2 방진의 활용

(q14.2.1) 당나라가 방진(方鎮)으로 천하를 잊은 후부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며 마침내 재앙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그

러나 그 본말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 당태종(627-49)이 절도사를 나누어 설치할 때에는 모두 국경에 있었고 몇 개에 불과했지만, 갑옷 입은 병사 10만 정도로도 외적을 막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안록산(安祿山, 703-757)과 주차(朱泚)가 모두 방진에 의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이 난을 제압한 것도 방진에 의지해서였다. 그 후 수십 개로 나누어 세력을 약하게 하고 병사를 단출하게 해서 방진의 병력이 서로 제압하기에 부족하여, 황소(黃巢, ?-884)와 주온(朱溫, 852-912)이 마침내 천하를 분할시키고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 망한 것은 방진이 약했기 때문이지, 방진이 강해서가 아니었다.(「方鎮」)

(q14.2.2) 마땅히 요동(遼東)-계주(薊州)-선부(宣府)-대동(大同) ·유림(榆林)-영하(寧夏)-감숙(甘肅)-고원(固原)-연수(延綏)에 모두 방진을 설치하고, 밖으로는 운남·귀주도 이 예에 따라 부근 주현을 나누어 속하게 해야 한다. 힘써 재정과 병마를 관리하여, 안으로는 충분히 자립하고 밖으로는 재난을 막기에 충분하게 한다. 토지세와 상세를 [방진이] 징수하는 대로 맡겨, 전쟁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충당한다. 모든 정치와 교화를 원활하게 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 말단 관원들도 스스로 초빙하는 대로 맡기며, 그런 뒤에 이름을 보고한다. 매년 한 차례 공물을 바치고, 3년에 한 번 조견하며, 마침내 그 시대에 병사와 백성을 화목하게 하고 국경을 평안하게 한 자는 세습을 허락한다.(「方鎮」)

(q14.2.3) 이 모든 것들은 다섯 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 오늘날 각 국경에 총독이 있고 순무가 있고 총병이 있고 본병이 있으며, 또 일이 있으면 다시 경략을 둔다. 일과 권력이 전일하지 않아서 능력있는 자는 견제를 받아 무너지고, 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전가를 쉽게 하고 아침저녁으로 버티고 군주에게 올리는 글로 가리고 포장한다. 아직 궤멸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단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따름이다. 통수를 전일하게 하면 잘못에 대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주밀해지고 전쟁에서 지키는 것이 저절로 견고해져서 각기 자손을 장구하게 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니, [이것이 그 이익의] 하나다.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항상 천하의 재화를 다 해도 한 지방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제 한 지방의 재화로 한 지방에 사용하도록 하니, 이것이 둘이다. 방진의 주병이 항상 객병만 못하므로, 늘 [병사를] 징발하다가 난을 초래하였다. 천계(1621-27) 연간의 사추와 승정(1628-44) 연간의 내위가 그것이다. 이제

한 지역의 병사로 한 지역을 감당하게 하니, 이것이 셋이다. 군대를 다스리고 군비를 조달하는 것을 모두 조정에서 하여, 항상 한 지역 때문에 사방이 동요되었다. 이제 각기 전담하는 지역이 있어서 병사와 식량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 지역이 불안하여도 다른 지역은 평안하게 되니, 이것이 넷이다. 밖에 강한 병사가 있으면 조정에서는 자연히 경계하게 된다. 산에 호랑이와 표범이 있으면 맹아주나 콩을 채취하지 않으니, 이것이 다섯이다.(「方鎮」)

(e14.2.4) 황종희는 봉건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절충적인 방안으로 방진(方鎮)의 부활을 제시하는데, 먼저 방진으로 인하여 당나라가 망했다는 주장을 비판한 후에 방진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밝히고 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당나라가 지역 호족의 발호에 의해 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편인데, 황종희는 이에 대해 오히려 지역의 힘이 약해져서 망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방진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방진이 약해서 당나라 망했다는 것이다. 방진은 본래 한 지역을 지키는 군대로서, 번진(藩鎮)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방진이 수가 적고 규모가 적지 않아서 외적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였지만, 방진에 의지한 반란을 겪은 이후 수를 늘리고 규모를 줄여서 오히려 적을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황종희가 제시하는 방진의 운용 방안은 재정과 군대의 관리, 세금(토지세, 상세)의 징수, 정교의 시행, 관원의 임용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물(1년 1회)과 조견(3년 1회) 및 세습의 허용을 포함하는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다. 황종희의 말을 빌면 “안으로는 충분히 자립하고 밖으로는 재난을 막기에 충분하게” 하는 것이다. 황종희는 이러한 방진의 이점으로 여섯 가지를 들었다. 즉 권력과 업무를 통일시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지역이 자체적 독립적으로 재화를 활용할 수 있고, 지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지역을 방어하며,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한 지역의 불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지역이 독립성을 가짐으로써 중앙을 견제하는 기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황종희가 제시한 방진은 한 마디로 각 지역에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

하는 지역분권적 이념을 구현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沈善洪 主編, 『明夷待訪錄』(『黃宗羲全集』 제1책),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6.
- 황종희, 김덕균 옮김, 『명이대방록』, 서울: 한길사, 2002.
- 季學原·桂興沅, 『明夷待訪錄 導讀』, 成都: 巴蜀書社, 1992.
- 張師偉, 『民本的極限—黃宗羲政治思想新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 小野和子, 『黃宗羲』(제2기 중국인물총서 9), 東京: 人物往來社, 1967.
- 鄭玄·賈公彥 注疏, 吳江原 譯註, 『儀禮 — 고대 사회의 이상과 질서』[1], 서울: 청계출판사, 2000.
- 민두기, 『중국 근대사 연구 - 신사충의 사상과 행동』, 서울: 일조각, 1973.
- 梁啓超, 李基東 外 譯, 『清代學術概論』, 서울: 驪江出版社, 1987.
-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北京: 東方出版社, 1986.
- 陳安仁, 『中國政治思想史大綱』, 上海: 商務印書館, 1932.
- 楊榮國, 『中國十七世紀思想史』, 南京: 東南出版社, 1945, 23면.
- 樣幼炯, 『中國政治思想史』, 臺北: 商務印書館, 1980.
- 何兆武·步近智·唐宇元·孫開太, 『中國思想發展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0.
-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岐市定), 조병한 편역, 『중국사』, 서울: 역민사, 1983.
- C. Hucker, 박지훈 외 옮김, 『중국문화사』, 서울: 한길사, 1985.

- 오금성, 『중국 근세 사회경제사 연구 - 명대 신사충의 형성과 그 역할』, 서울: 일조각, 1986.
- 侯外廬 外, 『宋明理學史』, 北京: 人民出版社, 1987.
-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社, 1989.
- 曹永祿, 『中國近世政治史研究 - 明代 科道官의 言官的 機能 一』,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朱伯崑, 『易學哲學史』(三), 臺北: 藍燈文化事業股分有限公司, 1991.
- 張秀平·王曉明 主編, 『影向中國的100本書』,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93.
- 龐 朴 主編, 『中國儒學』(1), 上海: 東方出判中心, 1997.
- 馮友蘭,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상·하), 서울: 까치, 1999.

## 2. 논문

- 조영록, 「명대 동림파의 연구 - 고반룡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9, 1965.
- 고병익, 「황종희의 신시대 대망론」, 동양사학회, 『동양사학 연구』 4, 1970.
- 김철수, 「황종희 정치사상 연구 서설 - 『명이대방록』을 중심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논문, 1975.
- 이경자, 「황종희 정치사상 연구 - 명이대방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사학과 석사논문, 1977.
- 남성훈, 「황종희 정치사상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전북사학』 4, 1980.
- 김종박, 「명대 동림당쟁과 그 사회배경」, 『동양사학연구』 16, 1981.
- 김종박, 「명대 일조편법의 성립과정」, 『사학지』 15, 1981.
- 윤정분, 「명대 군둔제 연구」, 『동방학지』 39, 1983.
- 남성훈, 「황종희와 고염무의 군주관, 백성관」, 『역사학 연구』 11, 1983.

- 남성훈, 「황종희와 고염무의 봉건론」, 『전북사학』 8, 1984.
- 윤정분, 「명대 군둔제와 위소제에 대하여」, 『동방학지』 43, 1984.
- 배경한, 「명청시대 상업자본과 자본주의 맹아론 - 부의 통의 소론에 대한 비평적 검토」, 『서울대 동양사학과 논집』, 1985.
- 최정연·이범학, 「명말 청초 세역제도 개혁과 신사의 존재 형태」, 『역사학 보』 114, 1987.
- 전순동, 「명초 사학의 설립과 그 추이 - 사학의 일시 정폐와 그 부활을 중심으로」, 『충북사학』 1, 1987.
- 안병주, 「황종희 명이대방록의 공리적 민본사상」, 『대동문화연구』 21, 1987.
- 권인호, 「명이대방록을 통해 본 유교정치사상 연구 - 서구 민주사상과 현실을 비교하며」, 『동양철학연구』 8, 1987.
- 오금성, 「명말 청초의 사회변화」, 『강좌중국사』 4,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최정연, 「명조의 통치체제와 정치」, 『강좌중국사』 4,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오금성, 「명청시대의 국가권력과 신사」, 『강좌중국사』 4,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조병한, 「청대의 사상 - 경제학과 고증학」, 『강좌중국사I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 姜重奇, 「黃宗羲의 氣哲學」, 서울대 철학과 석사논문, 1991.
- 조영록, 「황종희(黃宗羲)의 분권론 - '봉건'에서 '방진'에의 변용과 특색」, 명청사학회, 『명청사 연구』, 1997.
- 李勛相, 前近代 韓國과 中國의 地方 統治와 吏胥集團의 宗族 問題, 『中國史研究』 제27집, 2003.12.
- 嵇文甫, 「17世紀中國思想史概論」, 『嵇文甫文集』上,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5.
- 范正宇, 「清初非君思潮與近代民主運動」, 『社會科學輯刊』, 1993(4).

孫曉春，「明末清初民本思想初論」，《史學集刊》，1994(4).

전용덕，「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 자유기업원， BP No.32,  
2001.12.10.

##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 1a 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제 2 호 『밀린다 광하』 / 서정형  
제 3 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제 4 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제 5 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제 6 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제 7 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제 8 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제 9 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제 10 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제 11 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제 12 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제 13 호 프레게 『산구의 기초』 / 최 훈  
제 14 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 1a 호 『대학』 / 박성규  
제 2 호 맹자 『맹자』 / 이해경  
제 3 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제 4 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제 5 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제 6 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제 7 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 8 호 플라톤『국가』 / 김인곤
- 제 9 호 아리스토텔레스『니코나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 10 호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 박경숙
- 제 11 호 데카르트『성찰』 / 윤선구
- 제 12 호 로크『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 13 호 라이프니츠『단자론』 / 윤선구
- 제 14 호 몽테스키외『법의 정신』 / 진병운
- 제 15 호 흉『인설론』 / 장동익
- 제 16 호 칸트『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 제 17 호 헤겔『정신현상학』 / 강성화
- 제 18 호 마르크스『자본론』 / 손철성
- 제 19 호 제임스『실용주의』 / 정원규
- 제 20 호 니체『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 제 21 호 후설『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해
- 제 22 호 비트겐슈타인『철학적 탐구』 / 신상규
- 제 23 호 하이데거『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 제 24 호 쿤『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 제 25 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3호

---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발행일 2005년 4월 28일

인쇄일 2005년 4월 30일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



9 788991 280281  
ISBN 89-91280-28-5

94100